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uwon

한연주 Han, Yeon ju

연구진

- 연구책임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참여연구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방대혁 (수원시정연구원 비상근 위촉연구원)

공동연구

-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장애정책팀 이미정 연구위원
한신대 재활학과 남세현 조교수

연구 자문위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양해실 장학사
사회복지법인 브솔복지재단 활동보조센터 김덕현 센터장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용수 센터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 김순화 회장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민수 관장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강근수 관장

© 2016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 쇄 2016년 12월 25일

발 행 2016년 12월 31일

ISBN 979-11-87778-29-5(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한연주, 2016.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 요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 등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생애단계별 생활실태와 현황,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를 영·유아기(만 5세 이하), 학령기(만 6세~만 17세), 성인기(만 18세~만 49세), 노년기(만 50세 이후)로 구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각 생애단계별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2010년 2,594명(수원시 등록장애인의 6.7%)에서 2016년 6월 말 3,371명(수원시 등록장애인의 8.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부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 85.3%, 자폐장애 14.7%이며, 성별은 남성(64.9%), 장애등급은 3급(37.6%)이 가장 많으며, 생애단계별로는 성인기 1,976명(58.6%), 학령기 938명(27.8%), 노년기 380명(11.3%), 영·유아기 77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동별로는 권선구 995명(29.5%), 장안구 920명(27.3%), 영통구 787명(23.3%), 팔달구 669명(19.8%) 순이며, 영·유아기와 학령기는 영통구가 각각 35명(45.5%), 288명(30.7%), 성인기는 권선구(584명, 29.6%), 노년기는 장안구(126명, 33.2%)가 가장 많다. 영·유아기에 서비스 이용률은 76.6%, 학령기 80.1%, 성인기 26.0%, 노년기 4.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중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와 장애정도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차이가 있다. 영·유아기의 경우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상담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공적인 통로가 필요하였으며, 학령기의 경우 복지서비스나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생교육의 확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노년기의 경우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거주시설(생활)과 건강과 소득 지원 등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조사 및 양적조사, 질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기발견 체계구축과 장애진단을

위한 재정적 지원, 둘째, 발달장애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공식적인 통로의 구축, 셋째,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 및 가족의 지원체계의 확대와 주 돌봄자의 역량강화, 넷째, 생애 단계별 복지시설 및 인프라, 인력의 확대, 다섯째, 생애단계별 지원서비스 및 통합관리체계(교육-고용-의료-복지)의 구축, 여섯째, 인권적 관점의 접근과 인식개선의 거점기관 지정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애단계

| 차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3절 연구의 한계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발달장애의 개념 및 특성	5
1. 발달장애의 개념	5
2. 발달장애의 특성	8
제2절 발달장애와 생애단계	11
1. 장애와 생애단계	11
2.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	12
3.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특징 및 복지 욕구	16
제3장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	23
제1절 수원시 등록장애인 현황	23
1. 수원시 등록장애인 추이	23
2. 장애유형별 현황	25
3. 행정구역별 현황	26
4. 연령별 현황	29
제2절 발달장애인 현황	30
1. 경기도 발달장애인 현황	30
2.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	32
제3절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시설 및 이용자 현황	40
1. 생애단계별 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40
2. 영·유아(만0~5세 이하)	43

3. 학령기(만6~17세)	49
4. 성인기(만18~49세)	53
5. 생애단계 공통 시설	61
제4절 수원시 장애인복지정책 이용자 현황	75
제5절 소결	77
제4장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81
제1절 양적연구 개요	81
제2절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82
1. 조사 개요	82
2. 분석 결과	83
제3절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91
1. 조사 개요	91
2. 분석 결과	92
제4절 성인기 및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100
1. 조사 개요	100
2. 분석 결과	101
제5절 공통 질문	104
1. 돌봄 및 가족 부문	104
2. 건강 부문	112
3. 문화 및 여가 부문	113
4. 결혼 및 출산 부문	119
5. 인권 부문	119
6. 장래계획 부문	121
제6절 생애단계별 욕구에 대한 질적조사	123
1. 조사 목적과 내용	123
2. 조사 대상과 방법	123
3. 조사 결과	124
4. 결론	136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3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9
1. 생애단계별 요약	139
2. 부문별 요약	140
제2절 정책 제언	143
참고문헌	147

| 표 차 례 |

〈표 2-1〉 발달장애인의 법적 정의	7
〈표 2-2〉 지적장애인의 등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영역	9
〈표 2-3〉 자폐성장장애인의 등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영역	10
〈표 2-4〉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 관련 선행연구	13
〈표 2-5〉 장애인 관련 선행연구	15
〈표 2-6〉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연령구분	16
〈표 2-7〉 발달장애인법률의 생애단계별 지원 서비스	21
〈표 3-1〉 경기도 등록장애인 추이(2010~2015)	24
〈표 3-2〉 수원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2010~2016.6)	26
〈표 3-3〉 수원시 행정동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6)	27
〈표 3-3〉 수원시 행정동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6) (계속)	28
〈표 3-4〉 수원시 생애단계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6)	29
〈표 3-5〉 경기도 발달장애인 추이(2010~2015)	31
〈표 3-6〉 수원시 발달장애인 추이(2010~2016.6)	32
〈표 3-7〉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성별 및 장애등급 현황(2016.6)	33
〈표 3-8〉 수원시 발달장애인 중복장애 현황(2016.6)	33
〈표 3-9〉 수원시 발달장애인 연령대별 현황(2016.6)	34
〈표 3-10〉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현황(2016.6)	34
〈표 3-11〉 수원시 행정동별 발달장애인 현황(2016.6)	38
〈표 3-11〉 수원시 행정동별 발달장애인 현황(2016.6) (계속)	39
〈표 3-12〉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이용시설 현황	41
〈표 3-12〉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이용시설 현황 (계속)	42
〈표 3-13〉 경기도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현황(2016.6)	44
〈표 3-14〉 수원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현황	45
〈표 3-15〉 수원시 장애관련 어린이집 재원 현황(2016.6)	45
〈표 3-16〉 수원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장애유형(2016.6)	46

〈표 3-17〉 경기도 특수학급 유치원 현황(2015.12)	47
〈표 3-18〉 수원시 내 특수유치원 현황	48
〈표 3-19〉 수원시 유치원 내 발달장애 영·유아 현황(2016.6)	48
〈표 3-20〉 경기도 영·유아 거주시설 현황(2015.12)	49
〈표 3-21〉 경기도 특수학교·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현황(2016.4)	50
〈표 3-22〉 일반학교 내 발달장애인 현황(2016.6)	51
〈표 3-23〉 수원시 장애인 특수학교 현황(2016.4)	51
〈표 3-24〉 특수학교 내 발달장애인 현황(2016.6)	52
〈표 3-25〉 수원시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52
〈표 3-26〉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2015.12)	54
〈표 3-27〉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 및 현원(2016.6)	55
〈표 3-28〉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연령(2016.6)	56
〈표 3-29〉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2016.6)	57
〈표 3-30〉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달장애인 현황(2016.6)	58
〈표 3-3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종배치 기준	59
〈표 3-32〉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현황(2016.6)	60
〈표 3-33〉 경기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2015.12)	62
〈표 3-34〉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2016.6)	63
〈표 3-35〉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현황(2016.6)	64
〈표 3-36〉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2016.6)	65
〈표 3-37〉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 현황(2016.6)	66
〈표 3-38〉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 기준	67
〈표 3-39〉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현황(2016.6)	68
〈표 3-40〉 경기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2015.12)	69
〈표 3-41〉 수원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원 및 현원(2016.6)	70
〈표 3-42〉 수원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6.6)	71
〈표 3-43〉 수원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기간 현황(2016.6)	71
〈표 3-44〉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2016.6)	72

〈표 3-45〉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 이용 현황(2016.6)	73
〈표 3-4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종배치 기준	73
〈표 3-47〉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현황(2016.6)	74
〈표 3-48〉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현황	74
〈표 3-49〉 생애단계 관련 장애유형별 수원시 복지정책 대상자(2016.6)	75
〈표 3-50〉 생애단계 관련 수원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대상자(2016.6)	76
〈표 3-51〉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	78
〈표 4-1〉 설문조사 개요	81
〈표 4-2〉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설문문항 구성 및 내용	82
〈표 4-3〉 발달장애 영·유아의 특성	83
〈표 4-4〉 발달장애 영·유아 설문 응답자의 특성	84
〈표 4-5〉 최초 장애의심 시기_영·유아기	84
〈표 4-6〉 최초 장애진단 시기_영·유아기	85
〈표 4-7〉 장애의심 및 진단시기의 차이	85
〈표 4-8〉 장애진단 이후 주된 어려움	86
〈표 4-9〉 장애진단 이후 도움을 준 기관	86
〈표 4-10〉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87
〈표 4-11〉 재활(치료) 서비스의 1주일 이용 횟수 및 자부담 비용	87
〈표 4-12〉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기관	88
〈표 4-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여부 및 형태	88
〈표 4-14〉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알게 된 경로	89
〈표 4-15〉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면서 겪은 어려움	89
〈표 4-16〉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보내고 싶은 학교 유형	90
〈표 4-17〉 어린이집(혹은 유치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90
〈표 4-18〉 학령기 대상 설문문항 구성 및 내용	91
〈표 4-19〉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특성	92
〈표 4-20〉 학령기 발달장애인 응답자의 특성	93
〈표 4-21〉 최초 장애의심 시기_학령기	93

〈표 4-22〉	최초 장애진단 시기_화령기	94
〈표 4-23〉	장애진단 이후의 주된 어려움	94
〈표 4-24〉	장애진단 이후 도움을 준 기관	95
〈표 4-25〉	이용하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95
〈표 4-26〉	재활(치료) 서비스의 1주일 이용횟수 및 자부담 비용	96
〈표 4-27〉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기관	96
〈표 4-28〉	취학 여부 및 학교 형태	97
〈표 4-29〉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	97
〈표 4-30〉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주된 어려움	98
〈표 4-31〉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99
〈표 4-32〉	성인기 및 노년기 설문문항 구성 및 내용	100
〈표 4-33〉	성인기·노년기 발달장애인의 특성	101
〈표 4-34〉	성인기·노년기 대상 응답자 특성	102
〈표 4-35〉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102
〈표 4-36〉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03
〈표 4-37〉	평생프로그램 향후 이용의사	103
〈표 4-38〉	평생프로그램 향후 희망 프로그램	104
〈표 4-39〉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104
〈표 4-40〉	주 돌봄자	105
〈표 4-41〉	가족의 경제적 부담	105
〈표 4-42〉	가족의 신체적·심리사회적 부담	106
〈표 4-43〉	생애단계별 가족이 겪는 주된 어려움	107
〈표 4-44〉	생애단계별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1
〈표 4-45〉	신체적 건강상태	112
〈표 4-46〉	정기적 운동참여 여부 및 종목, 운동장소	112
〈표 4-47〉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113
〈표 4-48〉	현재 여가활동 및 향후 희망 여가활동	115
〈표 4-49〉	발달장애인 결혼에 대한 생각	119

〈표 4-50〉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119
〈표 4-51〉 인권차별 경험 유무	119
〈표 4-52〉 인권차별 부문	120
〈표 4-53〉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121
〈표 4-54〉 발달장애인의 노후준비 여부	121
〈표 4-55〉 노후대비 미래준비 사항	121
〈표 4-56〉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122
〈표 4-57〉 발달장애인의 향후 희망 거주형태	122
〈표 4-58〉 희망 거주시설 유형	122
〈표 4-59〉 포커스그룹 조사 대상자 현황	124

|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 흐름도	3
〈그림 3-1〉 경기도 등록장애인 추이(2010~2015)	23
〈그림 3-2〉 수원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 현황(2016.6)	25
〈그림 3-3〉 경기도 발달장애인 현황(2010~2015)	30
〈그림 3-4〉 수원시 발달장애인 추이(2010~2016.6)	32
〈그림 3-5〉 수원시 구별 발달장애인 분포도(2016.6)	35
〈그림 3-6〉 수원시 구별 생애단계 발달장애인 분포도(2016.6)	35
〈그림 3-7〉 수원시 행정동별 발달장애인 분포도(2016.6)	36
〈그림 3-8〉 수원시 행정동별 생애단계 발달장애인 분포도(2016.6)	37
〈그림 3-9〉 경기도 장애관련 어린이집 비율(2016.6)	43
〈그림 4-1〉 장애인단 이후의 주된 어려움_영·유아기	86
〈그림 4-2〉 장애인단 이후의 주된 어려움_학령기	94
〈그림 4-3〉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주변 어려움	98
〈그림 4-4〉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99
〈그림 4-5〉 가족이 겪는 어려움_영·유아기	108
〈그림 4-6〉 가족이 겪는 어려움_학령기	108
〈그림 4-7〉 가족이 겪는 어려움_성인기	109
〈그림 4-8〉 가족이 겪는 어려움_노년기	109
〈그림 4-9〉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110
〈그림 4-10〉 현재 여가활동_학령기	116
〈그림 4-11〉 현재 여가활동_성인기	116
〈그림 4-12〉 현재 여가활동_노년기	117
〈그림 4-13〉 향후 희망 여가활동_학령기	117
〈그림 4-14〉 향후 희망 여가활동_성인기	118
〈그림 4-15〉 향후 희망 여가활동_노년기	11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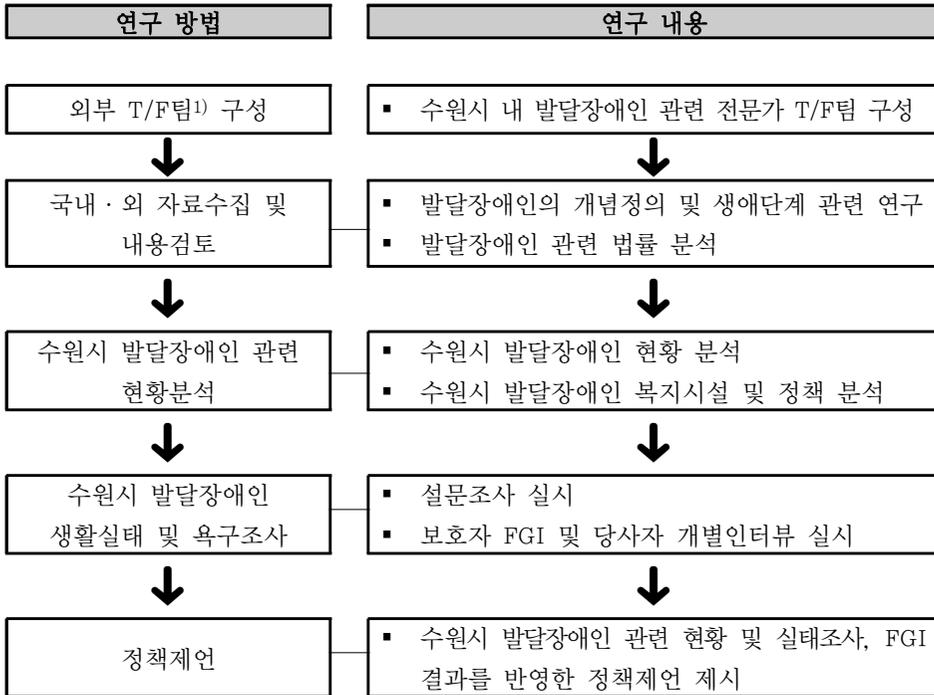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생애단계는 개인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걸친 변화로,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연령이나 개별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욕구와 필요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됨
 -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의미함
 -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경우 생애단계적 관점으로 접근되기 보다는 의료재활 및 특수교육,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접근됨
 -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영·유아 시기는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학령기는 의료재활 및 특수교육, 성인기는 직업재활 및 평생교육과 소득보장, 노년기는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돌봄 및 주거 확보 등 생애단계별로 다양한 욕구와 지원이 필요함이 나타나고 있음(변용찬 외, 2006; 김용득, 2000)
-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 특성에 따른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함
 -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접근은 발달장애인을 비 장애인과 동일하고 보편적인 생애 발달단계와 과업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사회적 욕구와 이에 따른 과업을 상이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함
 -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소외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주로 영·유아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임(최선실 외, 2011)
-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과 당사자가 차별받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생애단계별 생활실태와 현황,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균 돌봄기간은 34.4년, 평균 돌봄시간은 9시간 이상으로, 발달장애는 특성상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돌봄자 및 가족의 부양부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김진 외, 2011)
-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달장애인(2016년 6월 말 기준 3,371명)이 두 번째로 많은 지자체이며 발달장애인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욕구 및 특성에 관한 기초조사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를 영·유아기(만 5세 이하), 학령기(만 6세~만 17세), 성인기(만 18세~만 49세), 노년기(만 50세 이후)로 구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각 생애단계별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지원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흐름 체계로 수행됨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3절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양적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달장애인의 생활전반을 지지하며 돌봄의 책임자가 있는 주 돌봄자가 참여함
-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연구의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인터뷰 과정상 많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질적연구 분석에서 제외함

1) 외부 T/F팀은 설문문항의 내용적 타당도와 연구내용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담당함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발달장애의 개념 및 특성

1. 발달장애의 개념

1) 외국 정의

- 발달장애의 개념은 미국 공법 88-164, 「정신지체 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건축법」(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onstruction Act of 1963)에서 처음으로 소개됨(이원남, 2013)
 - 본 법에서는 발달장애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기타 여러 신경학적 장애로, 비교적 항구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정의함(국립특수교육원, 2009; 김진우 외, 2014 및 김삼섭 외, 2016 재인용; 최복천 외, 2014)
- 미국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초기적 정의는 발달장애를 특정장애의 범주로 표현하기 보다는 기능적 정의에 초점을 맞춰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함(최복천 외, 2014)
 - 미국법전 제42편 보건 및 복지, 제144장 발달장애원조와 권리장전(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에서는 발달장애를 ‘정신적 혹은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 신체적 손상으로 야기되고, 5세 이상 만 22세 이전에 나타나며, 영구히 지속성이 있고, 주요 일상생활영역, 즉 자기관리, 수용 · 표현언어, 학습, 이동, 자기 지도(self-direction), 독립생활능력, 경제적 자족 영역들 중 3가지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기능이 제한되며, 일생동안 혹은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 · 조정되는 특수교육, 학제 간 협력, 전반적 보살핌과 치료, 또는 관련 서비스들의 일련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특수한 요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함(김진우 외; 2014, 김정희 외, 2009)

2) 국내 정의

-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문이 개정되면서 장애범주가 확대되고 재개념화되면서 ‘발달장애’ 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됨
 - 개정 전 발달장애 개념은 자폐증으로 한정되었음
- 2007년 「장애인복지법」 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용어로 수정되면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함(안태희 외, 2002; 김정희 외, 2009)
- 발달장애인의 개념적 정의는 법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여 정의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으로 정의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에서는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으로 정의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에서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표 2-1〉 발달장애인의 법적 정의

구분	장애종류	내용
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 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적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적장애	장애인복지법과 동일
	자폐성장애	장애인복지법과 동일
	그 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료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3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합의된 견해보다는 ‘발달기에 정신적 및 신체적 손상 및 사회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Gardner & Chapman, 2013; 최복천 외, 2014 재인용 11p)

○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에서도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발달장애인법, 2016)”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 고용, 복지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및 제도적 지원의 수혜자로서 발달장애의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최복천 외, 2014)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는 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발달장애를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개념적 정의를 비교적 명확하게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함

2. 발달장애의 특성

-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지적장애의 정의 및 특성

- 1950년대까지 지적장애는 주로 정신박약(mental deficiency)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용어가 낙인적 명칭으로 인식되어 60년대 이후부터는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함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장애 개념보다 상세하게 지적장애에 대하여 정의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고 있음
- 2010년 미국지적장애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서 표현되는 적응행동의 양 영역에서 심각한 제한성을 가진 장애로 특징지며, 18세 이전에 시작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박주홍 외, 2012; 권요한 외, 2015), 18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치매(dementia)로 분류하고 있음(이소현, 2003; 김미옥, 2004; 김진우 외, 2014 재인용)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의 ICD-10에서는 ‘정신발달이 정지된 또는 불완전한 상태로서 특히 발달기에 나타나는 인지 및 언어, 운동, 사회성의 전반적 수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손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적 기능의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만 지적장애로 진단함(박주홍 외, 2012)
- 지적장애는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의 특성을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범주 내에서 일반적인 경향만을 파악할 수 있

음(권요한 외, 2015)

-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및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적장애의 등급에 따른 정의 및 진단·평가영역에 대한 내용임

〈표 2-2〉 지적장애인의 등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영역

구분		지적장애인
장애인복지법	1급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가 35이상 50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가 50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자료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2) 자폐성장애의 정의 및 특성

- 자폐성장애는 1943년 Kanner에 의해 처음으로 ‘초기 유아자폐증’ 으로 소개되었으며 본질적인 특성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발달이 질적으로 손상되어 있으며 행동이나 관심 및 활동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 임(이승희, 2009; 권요한 외, 2015)
-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서는 자폐성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자폐증은 구어 및 비구어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로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며,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자폐증의 특성은 반복적인 활동 및 상동적인 움직임, 환경적인 변화나 일과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 등이 있으며, 3세 이후에 자폐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도 앞에서 서술한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면 자폐증으로 진단할 수 있음(권요한 외, 2015)

-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서는 소아기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으로 전반적 발달장애의 하위분류에 포함되어 있는데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자폐증, 레트증후군, 기타 소아기 붕괴성 장애, 정신지연 및 상동운동과 연관된 과다활동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반적 발달장애 등 8개 하위분류가 여기에 속함(김진우 외, 2014)
- 최근에는 자폐장애(Autistic Disorder)와 비전형적 자폐장애(Atypical Autistic Disorder)를 포함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tic Spectrum Disorder, ASD)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함
-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세 가지 영역에서 손상을 보이면서 문제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문제의 정도는 개인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손상의 정도는 한 개인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권요한 외, 2015)
 - 자폐의 세 가지 핵심증상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관심과 활동영역에서의 결함과 관련하여 다양한 증상과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함
-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및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폐성장장애의 등급 및 진단·평가영역에 대한 내용임

〈표 2-3〉 자폐성장장애인의 등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영역

구분		자폐성장장애인
장애인복지법	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자료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제2절 발달장애와 생애단계

1. 장애와 생애단계

- 생애단계는 개인의 출생부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단계적 변화과정을 의미함
 - 단계적 변화과정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생애단계는 개인의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며, 이로 인해 생애단계는 입학, 취직, 결혼, 직업전환, 은퇴 등의 일정한 지표를 통해 표시될 수 있음(윤소영 외, 2009)
 - 생애단계를 구분하는 연령은 개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각 생애단계를 전후해서 발달적 전환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발달단계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한 단계에서 일어난 발달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줌
- 생애단계는 인간의 보편적 삶의 과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그동안 장애인은 생애단계 접근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원은 연령에 관계 없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조홍식 외, 2011)
 - 모든 장애인은 비슷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은 일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음(김용득, 2000; 이선우, 2009)
 - 그러나 장애인복지 이념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음(변용찬 외, 2006)
 - 장애연구에 있어서도 생애단계 접근을 반영함으로써 장애문제를 비장애인과 분리하여 다루기보다 삶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게 됨(박수경, 2006)
- 생애단계 접근을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편적인 생애 발달단계와 과업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손상과 장애가 갖는 발달적, 사회적 의미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볼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장애문제에 더욱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다양한 장애 이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줌(Solta & Martin, 2003; 박수경, 2006 재인용 3p)

-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장애 학생과 직업생활을 하는 성인 장애인, 노년기 장애인의 경우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각 단계별로 도출되는 욕구나 문제는 다양함
- 즉, 장애인의 발달과업은 생애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생애단계 발달과업에 대한 대처방안도 생애단계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정책의 수립, 서비스의 제공, 각종 지표의 제시 등은 생애단계에 따라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김용득, 2000)

2.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

1)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 연령구분

-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생애단계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음
 - 오혜경 외(2007)의 지적장애인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생애단계를 영유아기(0세~7세), 아동기(8세~13세), 청소년기(14세~20세), 성인기·청장년기(20세 이후), 중년기(40대~50대), 노년기로 구분함
 - 한국장애인개발원(2009)의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령전기(0~7세), 아동기(8~13세), 청소년기(14~18세), 성인기(19~64세), 노년기(65세 이후)로 구분함
 - 양희택 외(2012)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복지욕구 연구에서는 학령전기(0~6세), 학령기(7세~13세), 청소년기(14세~21세), 성인기(22세~60세), 노년기(61세 이상)로 구분하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는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생애단계의 연령은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음

〈표 2-4〉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생애단계 구분		관련근거	내용
	생애단계	연령		
오혜경 외(2007)	영유아기	0~7세	선행연구	지적장애인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기	8세~13세		
	청소년기	14세~20세		
	성인기	20세 이후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50대 이후			
한국장애인개발원(2009)	학령전기	0~7세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아동기	8세~13세		
	청소년기	14세~18세		
	성인기	19세~64세		
	노년기	65세 이후		
양희택 외(2012)	학령전기	0~6세	에릭슨 발달이론	경기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연구
	학령기	7세~13세		
	청소년기	14세~21세		
	성인기	22세~60세		
	노년기	61세 이상		
서울시복지재단(2014)	영유아기	0~6세	-	발달장애인가족 가이드북
	학령전기	7세~13세		
	후기 학령기	14세~19세		
	성인기	20세 이후		

2) 노년기 발달장애인 연령대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전 생애단계에 걸쳐 지속되며, 특히 비장애인 및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30세 이후에 신체기능의 퇴행 및 기초 신진대사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조기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김진 외, 2011: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연령대 구분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법적 연령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지만,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빠르게 조기노화(Premature Aging)를 경험한다는 실증연구들이 있음(황주희 외, 2015)
 -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40세 이상, 「노인법(The Olden American Act: OAA)」과 「직업훈련협력법(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에서는 55세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음(권재숙 외, 2012)
 - 영국에서 지적장애인은 50세부터 노인으로 정하고 있음(Thompson & Wright,

2001;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재인용 8p)

- 황주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발달기(2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20년 이상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장애인을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으로 정의함
- 장애인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장애인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는 지적장애인의 86%(만 1에서 4세 48.1%)가 만 1세에서 19세 사이에 발생하며, 자폐성장장애인의 87.4%는 만 1세~4세 사이에 발생하며 나머지 12.6%가 5세에서 19세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지적장애인의 77.0%는 만 1살 이후, 자폐성장장애인의 97.5%가 만 1살 이후에 장애가 발생함)
- 즉,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기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을 고령화된 장애인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국내 장애인노인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 노인의 연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 장애인노인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는 반면,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노령연금수급 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장애인노인을 구분한 연구(강창욱, 이준우, 2006; 이영미, 2013)가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5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노인을 구분한 연구(권재숙, 김성진, 2012; 박현숙, 양희택, 2013; 전미리, 안선영, 2011),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근거로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겪는 50세를 기준으로 장애인노인을 구분한 연구(이효성, 김근아, 김태연, 오정은, 2007; 김성원, 문진영, 2011; 박혜진, 2011), OECD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 설정한 50세를 기준으로 장애인노인을 구분한 연구(노승현, 2012), 그 외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노인의 연령대를 구분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 함
- 지적장애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구의 4.1%,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구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노인의 연령대를 구분한다면 발달장애인노인 인구를 과소 추정하거나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
 - 장애인 실태조사(2014)에서 발달장애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재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4.1%, 만 50세~64세가 14.9%로 나타났고, 재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 0%(만 0세~29세, 100%)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15년에서 20년 빠르게 조기노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만 50세 이후로 설정함

〈표 2-5〉 장애노인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대상	연령구분	관련 근거
강창욱, 이준우(2006)	청각장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청각장애인	60세 이상	국민연금법 60세
이효성, 김근아, 김태연, 오정은(2007)	고령장애인의 일(work)경험과 욕구에 관한 연구: 뇌병변 장애를 중심으로	뇌병변 장애인	50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 준고령자 50세 이상 - 55세 미만,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겪는 50세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정무성, 노승현(2007)	중·노령 지체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지체장애인	40세 이상	-
백은령, 노승현(2010)	노령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	60세 이상	-
김성원, 문진영(2011)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	50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 준고령자 50세 이상 - 55세 미만에 의거 50세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박혜전(2011)	고령장애인의 고용현황과 고용유지 예측요인 연구	장애인	50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 준고령자 50세 이상 - 55세 미만에 의거 50세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전미리, 안선영(2011)	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정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 55세
권재숙, 김승진(2012)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 장애인	55세 이상	노인복지법 65세 국민연금법 60세 고령자고용촉진법 55세
노승현(2012)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인	50세-75세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OECD, 2005; 재인용 김용탁, 2007 15p 재인용)에서 고령근로자의 기준을 50세 이상으로 설정
이준상(2012)	시각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각 장애인	55세 이상	-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 55세
이영미(2013)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인	60세 이상	국민연금법 60세

3)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 연령구분

-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 연령구분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를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함
 - 영·유아기는 출생부터 만 5세 이하로, 발달장애 진단 후 초등학교 교육을 받기 전까지를 의미함
 - 학령기는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를 의미함
 - 성인기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학령기 이후 취업, 결혼 등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시기임
 - 노년기는 만 50세 이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근로가능 연령을 고려하여 노년기로 구분함

〈표 2-6〉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연령구분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연령	만 0세~5세 이하	만 6세~17세 이하	만 18세~49세 이하	만 50세 이상

3.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특징 및 복지 욕구

- 발달장애는 장애유형 중에서 자기표현·자기결정 등의 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중증장애(1~3급)이면서 중복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로 인한 어려움은 생애단계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재활과 같은 보건·의료적 개입이 중요하고,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적절한 보육·교육·고용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윤민석, 2013)

1) 영·유아기(만0~5세)

- 발달장애는 대부분 출생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비전형적 발달과정을 처음 인식하게 되면, 이로 인해 부모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기 까지 어려움을 겪게 됨(백은령 외, 2010)

- 출생 전·후로 발생한 장애는 개인이 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갖기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조홍식 외, 2011) 이는 영·유아기 이후의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경험함(양희택 외, 2012)
- 발달장애 영유아는 비 장애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발달적인 측면이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애여부를 모른 채 가족 안에서 성장하기도 함
 - 3세 무렵이 되면 발달장애 유아와 비 장애유아 간에 인지적, 언어적 차이가 생겨, 발달장애 영·유아는 비장애 영·유아에 비해 언어 및 지적능력에 있어 정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
 - 따라서 발달장애 영·유아를 책임져 줄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발달장애 영·유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 재활관련 프로그램이 요구됨(오혜경 외, 2007; 김정희 외, 2009)
- 특히, 발달장애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하게 한다면 발달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차성희 외, 2010)

2) 학령기(만 6세~17세)

- 보편적으로 이 시기에 아동은 전 생애단계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며 성장하며, 학령기 아동의 세계는 처음 경험하게 되는 학교와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확장되며 새롭게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함
 - 발달장애 아동은 신체발달이 늦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주의반응 및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단기 기억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능력이 부족함. 따라서 학교 생활과 또래관계라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쉽게 부모에 의존하게 됨
 - 이러한 이유로 학교생활을 위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노력과 함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개별교육이 요구되며(오혜경 외, 2007; 조홍식 외, 2011), 학령기 장애아동이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균형 있게 통합시켜 주어 지지적 환경과 기술을 제공해야 함(Mass, 1984; 양희택 외, 2012 재인용 15p)

- 학령기 안에서도 유·초등교육을 마치고 중·고등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며 성(性)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 함(양희택 외, 2012)
 - Anderson, Clark & Spain(1982)은 장애청소년의 경우 동료관계의 형성, 이성관계의 탐색,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이에 대한 대처는 장애청소년의 전환기의 이슈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임(김용득, 2000)
-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개인적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오혜경 외, 2007), 새로운 동료나 조연자 관계를 개발하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과정이 필요함(양희택 외, 2012)
- 또한 발달장애 자녀가 학업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 부모는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발달장애 자녀가 학령기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오혜경 외, 2007; 김정희 외 2009)

3) 성인기(만 18세~49세)

- 성인기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기간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주요한 과업은 직업생활을 통해서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사회적 독립을 하는 것 임(오혜경 외, 2007)
 - 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은 성인으로서 사회적인 삶의 방법과 내용을 준비하여 지역사회와 통합적인 생활을 해나감을 의미하나, 발달장애인은 특수학교(급) 졸업 이후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집에 방치되거나 시설에 보호되는 경우가 많음
-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생활 영역에서의 기능수행, 친밀관계 형성과 유지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방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 유지, 교육기회 확대,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인 의존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며 자립생활이 어려워 짐(양희택 외, 2012)

- 성인기에는 가족의 보호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적인 능력을 최대화하고 가족 외의 사회적인 보호체계를 대비하는 계획이 요구됨(오혜경 외, 2007)

4) 노년기(만 50세 이후)

-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화의 위험이 중첩되는 이중위험을 경험하는 시기이며(Foreman, 1998; 양희택, 2012 재인용 35p), 장애인과 고령자는 모두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임
 -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지하던 가족들도 노쇠해짐에 따라서 가족 안에서의 지지체계가 성인기와 비교하여 더 느슨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도움 제공자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기로 봄
 - 고령 장애인은 이중 약자로서 젊은시절 경험했던 차별보다 더 심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까지도 더해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고위험 집단에 속한 대상 장애인으로 이해하여야 함
- 따라서 고령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오혜경 외, 2007),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주거 및 소득보장을 통해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5) 생애단계별 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심리사회적인 발달, 재활, 취업, 주거, 소득보장에 이르기까지 생애 단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욕구들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보장되어야 함
 - 특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통합되고 자신의 생애단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조홍식 외(2011)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장애 진단 및 정확하고 타당한 판정, 조기개입의 유효성을 고려한 적절한 재활치료에 대한 연계, 이들의 특수 교육 욕구를 반영한 보육서비스가 중요함(조홍식 외, 2011)

- 특히, 장애진단과 판정은 향후 각 생애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학령기에는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적절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연계가 필요함
 - 연계에서는 적절한 통합교육, 특수교육의 개발과 연결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기술을 협력적으로 배워나가거나 미래의 직업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양질의 전환교육 체계가 요구됨
 - 부모들이 빠른 장애인식 수용을 통한 조기개입의 기회가 정착되어야 하며, 영·유아기에 적절한 부모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 발달장애인의 성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 기회임
 -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업을 갖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이들과 가족을 위하여 양질의 주간보호서비스와 주거지원 서비스를 준비하여 연결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노년기 발달장애인에게는 조기노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중요함(조흥식 외, 2011)
 - 후견제도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년기에는 적절한 가족체계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차원에서 이들이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공통적으로는 적절한 소득보장과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당사자와 보호자의 소득활동 참여 제약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이 필요함
- 다음은 발달장애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생애 단계별로 정리한 것임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각 지자체로부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2-7〉 발달장애인법률의 생애단계별 지원 서비스

구분		영·유아기 (만0~5세)	학령기 (만 6~17세)	성인기 (만 18세~49세)	노년기 (만 50세 이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제19조)					
조기진단 및 개입(제23조)		6세 미만			
재활 및 발달지원(제24조)(행동발달증진센터)					
복지서비스 신청(제18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제21조)	18세 미만			
	지역사회재활서비스지원(제24조)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제26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				19세 이상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5조)					
평생교육 지원 (제26조)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제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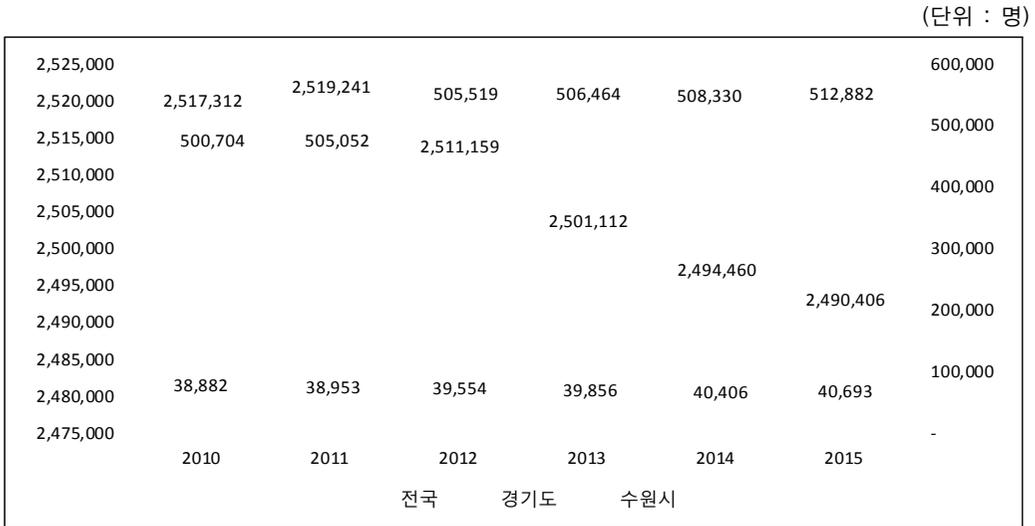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

제1절 수원시 등록장애인 현황

1. 수원시 등록장애인 추이

- 2015년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2,490,406명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임
-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010년 500,704명에서 2015년 512,882명으로 매년 증가함
- 2015년 기준, 수원시 등록장애인은 40,69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40,693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고양시(37,366명), 부천시(35,204명), 성남시(35,150명), 안산시(32,013명), 용인시(31,444명), 남양주시(28,4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2010년 38,882명, 2014년 40,406명, 2015년 40,693명으로 증가함



〈그림 3-1〉 경기도 등록장애인 추이(2010~2015)

〈표 3-1〉 경기도 등록장애인 추이(2010~2015)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경기도	500,704	505,052	505,519	506,464	508,330	512,882
수원시	38,882	38,953	39,554	39,856	40,406	40,693
가평군	5,096	5,102	5,176	5,184	5,167	5,211
고양시	35,670	35,741	35,677	36,132	36,584	37,366
과천시	2,244	2,234	2,225	2,154	2,166	2,152
광명시	14,224	14,570	14,416	14,213	14,005	13,889
광주시	11,861	12,349	12,604	12,844	13,191	13,599
구리시	8,430	8,306	8,207	8,050	7,938	7,873
군포시	11,250	11,203	11,054	10,980	10,996	10,957
김포시	11,299	11,940	12,712	13,211	13,791	14,093
남양주시	25,656	26,265	26,668	27,048	27,721	28,429
동두천시	5,528	5,606	5,669	5,643	5,716	5,820
부천시	35,961	35,918	35,761	35,604	35,345	35,204
성남시	36,812	36,550	36,168	35,921	35,479	35,150
시흥시	16,963	16,956	16,795	16,583	16,516	16,548
안산시	32,618	32,628	32,513	32,507	32,281	32,013
안성시	10,173	10,152	10,071	10,100	10,096	10,089
안양시	22,769	22,610	22,172	21,955	21,558	21,466
양주시	9,903	10,228	10,299	10,214	10,339	10,529
양평군	6,704	6,821	6,907	6,982	6,970	7,168
여주시	6,966	6,983	7,012	7,022	6,933	6,961
연천군	3,417	3,406	3,394	3,358	3,361	3,368
오산시	7,191	7,452	7,571	7,646	7,726	7,790
용인시	30,079	30,556	30,575	30,814	31,157	31,444
의왕시	5,847	5,958	5,986	6,073	5,998	5,950
의정부시	19,112	19,205	19,047	19,084	19,160	19,417
이천시	10,259	10,312	10,259	10,185	10,163	10,126
파주시	16,806	17,621	18,014	18,134	18,280	18,565
평택시	21,947	22,167	22,059	22,039	22,116	22,173
포천시	9,643	9,708	9,715	9,697	9,712	9,737
하남시	7,124	7,025	6,859	6,788	6,882	7,375
화성시	20,270	20,527	20,380	20,443	20,577	2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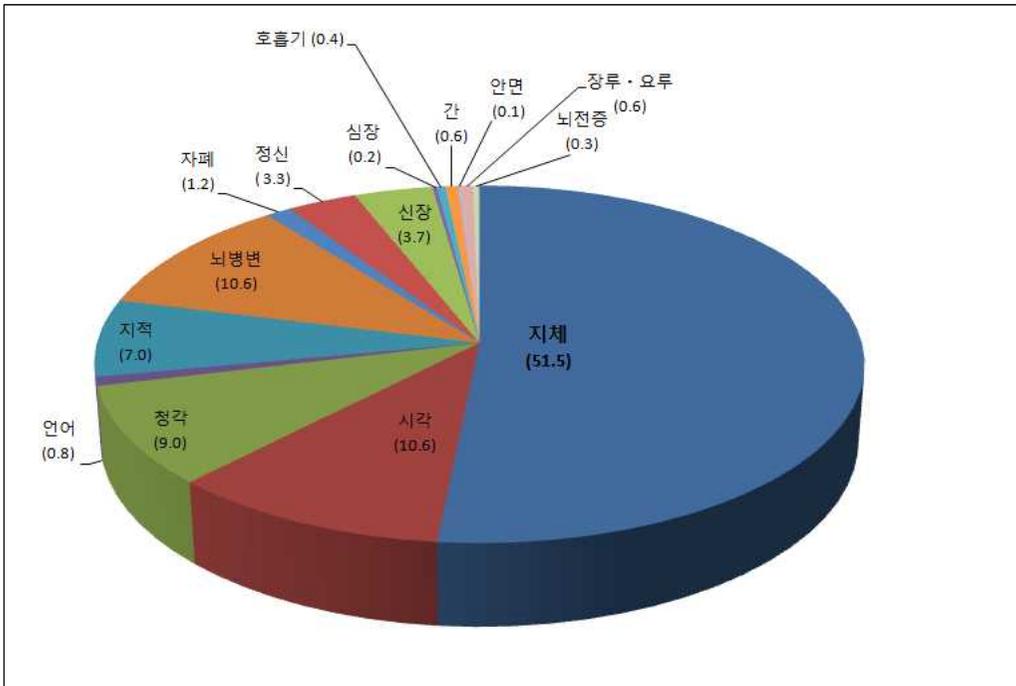
주 : 매년 연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0-2015). 장애인 등록 현황

2. 장애유형별 현황

-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등록장애인은 40,918명임
-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자)이 21,081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1.5%를 차지함
 - 수원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 21,081명(51.5%), 시각장애인 4,346명(10.6%), 뇌병변장애인 4,326명(10.6%), 청각장애인 3,698명(9.0%), 지적장애인 2,874명(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3-2〉 수원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 현황(2016.6)

- 2010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장애유형의 증감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장애)와 신장 장애, 언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 장애는 증가 추세인데 반해 호흡기 장애와 심장 장애는 감소 추세임

〈표 3-2〉 수원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2010~2016.6)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계	38,882	38,953	39,554	39,856	40,406	40,693	40,918
지체	20,884	20,948	21,150	21,168	21,224	21,100	21,081
시각	4,066	4,107	4,211	4,293	4,348	4,381	4,346
청각	3,564	3,489	3,531	3,534	3,571	3,571	3,698
언어	273	269	279	299	312	325	335
지적	2,283	2,376	2,478	2,606	2,696	2,829	2,874
뇌병변	4,381	4,349	4,378	4,237	4,298	4,342	4,326
자폐	311	334	364	407	447	481	497
정신	1,178	1,157	1,168	1,218	1,270	1,328	1,357
신장	1,024	1,077	1,169	1,261	1,371	1,441	1,512
심장	153	107	86	82	87	84	77
호흡기	207	181	178	164	163	158	158
간	161	164	176	193	210	222	232
안면	49	47	49	50	51	49	51
장루·요루	187	195	211	222	232	258	257
뇌전증	161	153	126	122	126	124	117

주 1 : 2010년~2015년 매년 연말 기준

2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1 : 2010~2015년 보건복지부(2010~2015), 장애인 등록현황

2 :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3. 행정구역별 현황

- 수원시 등록장애인 40,918명을 구별로 살펴본 결과, 권선구 13,193명(32.2%), 장안구 10,844명(26.5%), 팔달구 8,761명(21.4%), 영통구 8,120명(19.8%) 순으로 나타남
- 자폐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14개 장애유형)은 권선구가 가장 많음
 - 자폐장애는 영통구가 180명(36.2%)으로 가장 많음
- 42개 행정동별로 장애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행정구역별 격차가 큼
 - 등록장애인은 서둔동이 1,809명(4.4%)으로 가장 많음
 -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는 서둔동, 자폐장애는 광고1동, 심장 장애는 서둔동과 광고2동이 동일, 뇌병변, 신장장애는 인계동, 정신 장애, 호흡기 장애는 우만1동, 간 장애는 영통1동, 장루·요루 장애는 평동, 뇌전증 장애는 세류2동이 가장 많음

〈표 3-3〉 수원시 행정동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6)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40,918	21,081	4,346	3,698	335	2,874	497	4,326	1,357	1,512	77	158	232	51	257	117	
소계	10,844	5,570	1,152	978	75	801	119	1,211	328	392	19	45	57	10	67	20	
장안구	송죽동	746	367	96	69	6	47	4	88	22	32	1	3	5	1	4	1
	연무동	1,137	604	128	90	3	68	8	120	55	36	2	7	3	1	5	7
	영화동	1,058	563	113	82	7	59	6	143	38	35	-	4	4	-	4	-
	울천동	1,261	662	120	138	12	89	16	120	26	49	1	10	6	1	9	2
	정자1동	1,098	569	107	102	9	76	13	132	32	39	1	5	6	1	4	2
	정자2동	1,215	615	131	116	11	104	13	134	24	45	4	3	6	2	5	2
	정자3동	1,130	622	116	89	7	81	16	114	24	40	4	1	10	1	4	1
	조원1동	1,424	687	159	134	10	116	13	170	54	48	4	8	10	1	9	1
	조원2동	629	314	71	66	3	36	10	68	13	26	1	3	4	1	11	2
	파장동	1,146	567	111	92	7	125	20	122	40	42	1	1	3	1	12	2
소계	13,193	6,972	1,345	1,199	110	875	120	1,356	424	486	26	51	75	18	84	52	
편전구	곡선동	809	438	67	79	7	62	10	85	18	25	3	1	6	1	5	2
	구운동	1,037	537	97	92	11	73	8	113	27	56	1	4	7	2	8	1
	권선1동	934	493	103	95	7	59	6	84	39	25	1	1	7	1	9	4
	권선2동	1,111	573	115	93	6	84	20	121	26	52	1	8	8	1	3	-
	금곡동	1,253	663	103	125	15	63	17	150	46	41	3	3	10	2	7	5
	서둔동	1,809	942	198	161	12	160	10	170	59	59	5	10	7	3	8	5
	세류1동	463	244	54	37	1	23	8	52	17	18	1	3	1	1	2	1
	세류2동	1,276	678	136	123	12	68	7	131	49	43	3	4	4	3	6	9
	세류3동	1,091	587	119	88	15	65	8	105	42	33	2	4	3	2	10	8
	입북동	564	313	66	48	3	23	3	60	7	21	2	3	7	1	4	3
	평동	1,635	882	166	151	13	111	11	162	46	58	2	6	5	-	15	7
호매실동	1,211	622	121	107	8	84	12	123	48	55	2	4	10	1	7	7	

〈표 3-3〉 수원시 행정동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6) (계속)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소계	8,761	4,497	972	747	80	591	78	894	396	316	13	42	41	11	60	23	
구 락 동	고등동	503	248	71	44	4	31	5	48	28	13	-	2	4	-	1	4
	매교동	589	311	68	54	8	32	4	55	30	15	-	2	3	-	4	3
	매산동	482	250	51	48	2	28	2	50	21	19	1	1	4	1	4	-
	우만1동	1,483	744	154	106	14	130	8	138	104	52	1	12	4	4	4	8
	우만2동	529	277	42	44	9	39	9	60	12	24	1	1	3	1	6	1
	인계동	1,692	873	190	148	15	109	16	188	64	63	1	6	3	3	11	2
	지동	822	397	93	78	7	55	6	86	40	42	2	6	4	-	3	3
	행궁동	679	349	82	56	5	40	-	75	27	28	1	4	5	1	5	1
	화서1동	1,120	598	131	93	11	77	10	94	50	31	3	5	7	-	9	1
	화서2동	862	450	90	76	5	50	18	100	20	29	3	3	4	1	13	-
소계	8,120	4,042	877	774	70	607	180	865	209	318	19	20	59	12	46	22	
구 예 동	광고1동	833	420	75	77	6	57	39	89	11	43	1	2	9	-	2	2
	광고2동	867	414	96	85	8	63	17	112	28	32	5	-	3	1	2	1
	매탄1동	609	327	70	65	1	35	8	55	17	21	1	2	1	1	3	2
	매탄2동	547	284	68	36	5	44	9	53	18	20	-	-	3	-	5	2
	매탄3동	1,033	511	119	109	14	70	18	99	31	38	2	3	7	-	7	5
	매탄4동	758	383	79	78	8	61	6	68	25	35	1	-	7	1	4	2
	영통1동	845	416	98	71	7	63	25	85	16	33	3	5	11	3	7	2
	영통2동	801	387	79	92	6	68	19	88	10	32	3	4	4	2	7	-
	원천동	688	351	65	48	6	63	14	77	23	24	-	1	7	2	5	2
	태장동	1,139	549	128	113	9	83	25	139	30	40	3	3	7	2	4	4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4. 연령별 현황

- 수원시 등록장애인을 생애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만 50세 이상 노년기가 28,345명(69.3%)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기 10,996명(26.9%), 학령기 1,379명(3.4%), 영·유아기 198명(0.5%) 순으로 나타남
- 생애단계별 장애유형은 영·유아기는 뇌병변장애, 학령기는 지적장애, 성인기와 노년기는 지체장애가 가장 많음

〈표 3-4〉 수원시 생애단계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6)

(단위 : 명, %)

구분	계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세~17세)	성인기 (만 18세~49세)	노년기 (만 50세 이후)
계	40,918(100.0)	198(0.5)	1,379(3.4)	10,996(26.9)	28,345(69.3)
지체	21,081(51.5)	7(0.0)	77(0.2)	5,114(12.5)	15,883(38.8)
시각	4,346(10.6)	10(0.0)	47(0.1)	1,218(3.0)	3,071(7.5)
청각	3,698(9.0)	19(0.0)	101(0.2)	613(1.5)	2,965(7.2)
언어	335(0.8)	8(0.0)	27(0.1)	85(0.2)	215(0.5)
지적	2,874(7.0)	51(0.1)	688(1.7)	1,757(4.3)	378(0.9)
자폐	497(1.2)	26(0.1)	250(0.6)	219(0.5)	2(0.0)
뇌병변	4,326(10.6)	73(0.2)	166(0.4)	690(1.7)	3,397(8.3)
정신	1,357(3.3)	0(0.0)	0(0.0)	677(1.7)	680(1.7)
신장	1,512(3.7)	1(0.0)	3(0.0)	423(1.0)	1,085(2.7)
심장	77(0.2)	0(0.0)	4(0.0)	20(0.0)	53(0.1)
호흡기	158(0.4)	1(0.0)	0(0.0)	16(0.0)	141(0.3)
간	232(0.6)	1(0.0)	11(0.0)	48(0.1)	172(0.4)
안면	51(0.1)	0(0.0)	1(0.0)	27(0.1)	23(0.1)
장루·요루	257(0.6)	0(0.0)	1(0.0)	26(0.1)	230(0.6)
뇌전증	117(0.3)	1(0.0)	3(0.0)	63(0.2)	50(0.1)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비율은 장애유형별 생애단계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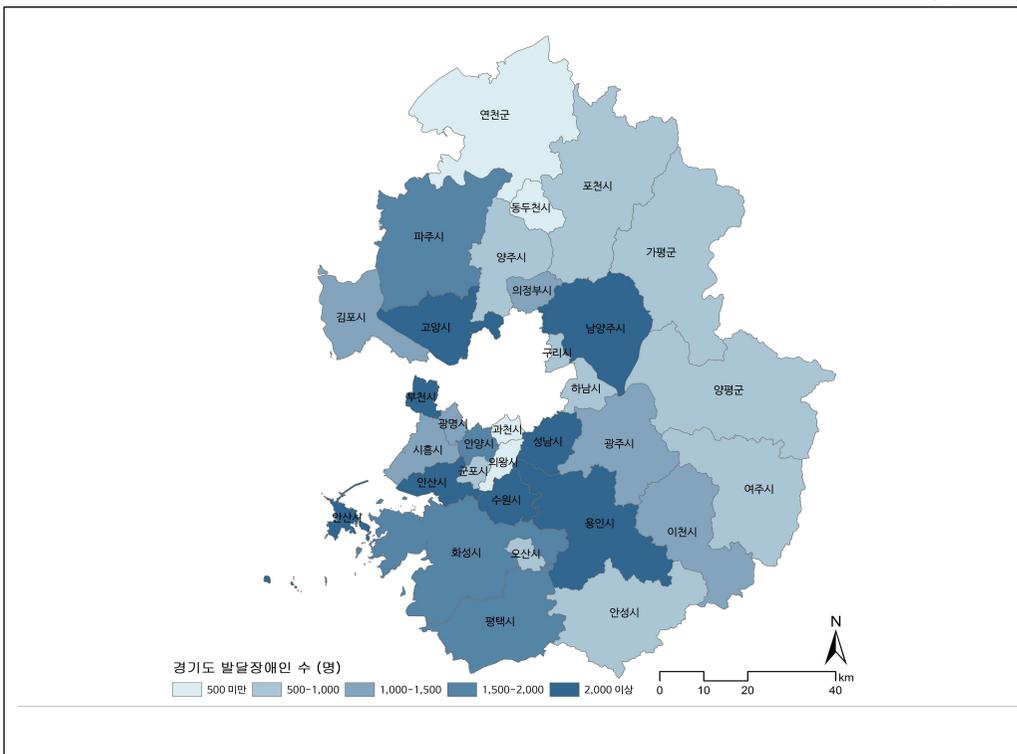
자료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 자료

제2절 발달장애인 현황

1. 경기도 발달장애인 현황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발달장애인은 176,137명에서 210,85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발달장애인도 34,976명에서 43,563명으로 증가함
-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전국 및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2010년 2,594명에서 2015년 3,310명으로 증가함
 - 2015년 기준,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전국 대비 1.6%, 경기도 대비 7.6% 수준임
-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은데 반해 발달장애인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음
 - 2015년 기준,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고양시(3,633명), 수원시(3,310명), 성남시(3,065명), 부천시(2,769명) 등의 순임

(단위 : 명)



〈그림 3-3〉 경기도 발달장애인 현황(2010~2015)

〈표 3-5〉 경기도 발달장애인 추이(2010~2015)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176,137	183,336	190,163	196,999	203,879	210,855
경기도	34,976	36,612	38,225	39,781	41,576	43,563
수원시	2,594	2,710	2,842	3,013	3,143	3,310
가평군	609	611	627	636	651	676
고양시	2,903	3,035	3,148	3,293	3,459	3,633
과천시	146	156	166	166	182	192
광명시	917	949	991	989	1,018	1,072
광주시	982	1,046	1,098	1,126	1,190	1,280
구리시	540	567	576	593	612	641
군포시	658	661	682	707	753	776
김포시	829	886	962	1,012	1,081	1,140
남양주시	1,686	1,775	1,868	1,992	2,136	2,237
동두천시	375	393	414	432	437	452
부천시	2,262	2,345	2,464	2,531	2,685	2,769
성남시	2,540	2,653	2,746	2,860	2,963	3,065
시흥시	1,014	1,058	1,124	1,170	1,211	1,252
안산시	2,155	2,252	2,319	2,446	2,523	2,590
안성시	794	838	877	926	951	991
안양시	1,439	1,485	1,504	1,530	1,533	1,604
양주시	669	732	762	816	857	897
양평군	712	739	759	775	807	834
여주시	633	652	677	716	715	755
연천군	233	242	263	275	291	295
오산시	561	608	650	681	713	742
용인시	1,988	2,083	2,183	2,292	2,475	2,641
의왕시	343	360	376	407	429	435
의정부시	1,197	1,246	1,281	1,304	1,357	1,438
이천시	991	1,035	1,097	1,108	1,150	1,191
파주시	1,211	1,296	1,442	1,496	1,537	1,623
평택시	1,420	1,498	1,548	1,584	1,664	1,759
포천시	730	749	781	825	872	901
하남시	447	461	465	483	497	555
화성시	1,398	1,491	1,533	1,597	1,684	1,817

주 : 매년 연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0-2015). 장애인 등록 현황

2.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

1) 수원시 발달장애인 추이(2010~2016.6)

-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2010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371명이며, 지적장애가 매년 압도적으로 많음
-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2010년 2,283명(88.0%)에서 2016년 2,874명(85.3%)으로 인구는 증가했지만 비중은 감소함
- 자폐성장애는 2010년 311명(12.0%)에서 2016년 497명(14.7%)로 인구와 비중이 모두 증가함

〈표 3-6〉 수원시 발달장애인 추이(2010~2016.6)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계	2,594(100.0)	2,710(100.0)	2,842(100.0)	3,013(100.0)	3,143(100.0)	3,310(100.0)	3,371(100.0)
지적	2,283(88.0)	2,376(87.7)	2,478(87.2)	2,606(86.5)	2,696(85.8)	2,829(85.5)	2,874(85.3)
자폐	311(12.0)	334 (12.3)	364(12.8)	407(13.5)	447(14.2)	481(14.5)	497(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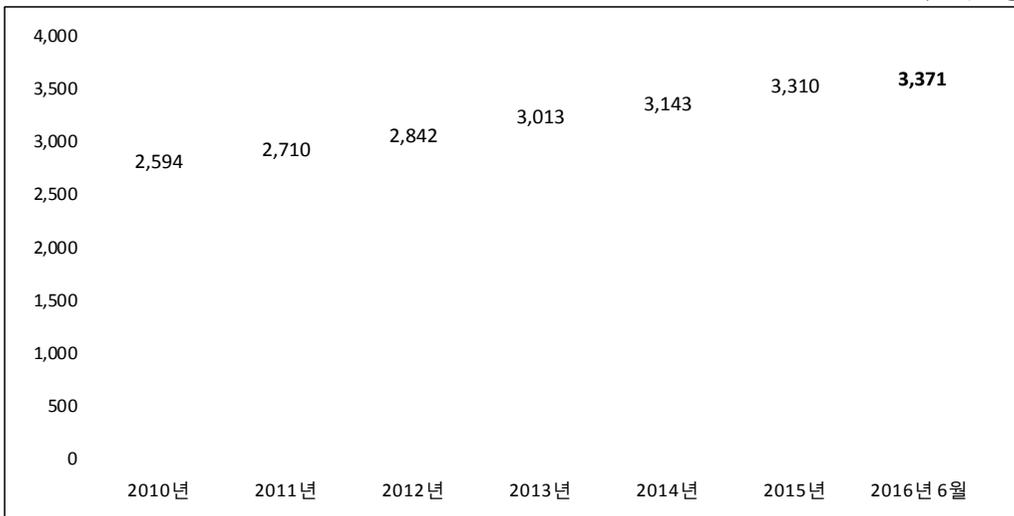
주 1 : 2010~2015년 매년 연말 기준

2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1 : 보건복지부(2010~2015), 장애인 등록 현황

2 :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단위 : 명)



〈그림 3-4〉 수원시 발달장애인 추이(2010~2016.6)

2) 발달장애인 성별 및 장애등급 현황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모두 남성이 많음
-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전체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는 3급이 많은데 반해 자폐장애는 2급이 많음

〈표 3-7〉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성별 및 장애등급 현황(2016.6)

(단위 : 명, %)

구분	성별			장애 등급			
	계	남	여	계	1급	2급	3급
계	3,371(100.0)	2,189(100.0)	1,182(100.0)	3,371(100.0)	910(100.0)	1,192(100.0)	1,269(100.0)
지적	2,874(85.3)	1,762(80.5)	1,112(94.1)	2,874(85.3)	698(76.7)	979(82.1)	1,197(94.3)
자폐	497(14.7)	427(19.5)	70(5.9)	497(14.7)	212(23.3)	213(17.9)	72(5.7)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3) 중복장애

- 발달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자는 315명(9.3%)이며, 장애유형은 뇌병변 장애(158명, 50.2%), 지체 장애(50명, 15.9%), 청각 장애(30명, 9.5%), 뇌전증 장애(27명,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8〉 수원시 발달장애인 중복장애 현황(2016.6)

(단위 : 명, %)

계	간	뇌병변	뇌전증	시각	심장	언어	장루,요루	정신	지체	청각
315 (100.0)	1 (0.3)	158 (50.2)	27 (8.6)	24 (7.6)	1 (0.3)	10 (3.2)	1 (0.3)	13 (4.1)	50 (15.9)	30 (9.5)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4)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

- 발달장애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가 947명(28.1%)으로 가장 많음
- 지적장애는 20대가 804명(28.0%)으로 가장 많으며 자폐성장애는 10대가 202명(40.6%)으로 가장 많음

〈표 3-9〉 수원시 발달장애인 연령대별 현황(2016.6)

(단위 : 명, %)

구분	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계	3,371(100.0)	2,874(100.0)	497(100.0)
0~9세	347(10.3)	228(7.9)	119(23.9)
10대	879(26.1)	677(23.6)	202(40.6)
20대	947(28.1)	804(28.0)	143(28.8)
30대	482(14.3)	453(15.8)	29(5.8)
40대	336(10.0)	334(11.6)	2(0.4)
50대	249(7.4)	248(8.6)	1(0.2)
60대	94(2.8)	93(3.2)	1(0.2)
70대	29(0.9)	29(1.0)	-
80대 이상	8(0.2)	8(0.3)	-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수원시 발달장애인을 생애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성인기 1,976명(58.6%), 학령기 938명(27.8%), 노년기 380명(11.3%), 영·유아기 77명(2.3%) 순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인도 성인기 1,757명(61.1%), 학령기 688명(23.9%), 노년기 378명(13.2%), 영·유아기 51명(1.8%) 순 임
 - 자폐성장아인은 학령기가 250명(50.3%)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기 219명(44.1%), 영·유아기 26명(5.2%), 노년기 2명(0.4%) 순으로 나타남

〈표 3-10〉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현황(2016.6)

(단위 : 명, %)

구분	계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세~17세)	성인기 (만 18세~49세)	노년기 (만 50세 이후)
계	3,371(100.0)	77(2.3)	938(27.8)	1,976(58.6)	380(11.3)
지적	2,874(100.0)	51(1.8)	688(23.9)	1,757(61.1)	378(13.2)
자폐	497(100.0)	26(5.2)	250(50.3)	219(44.1)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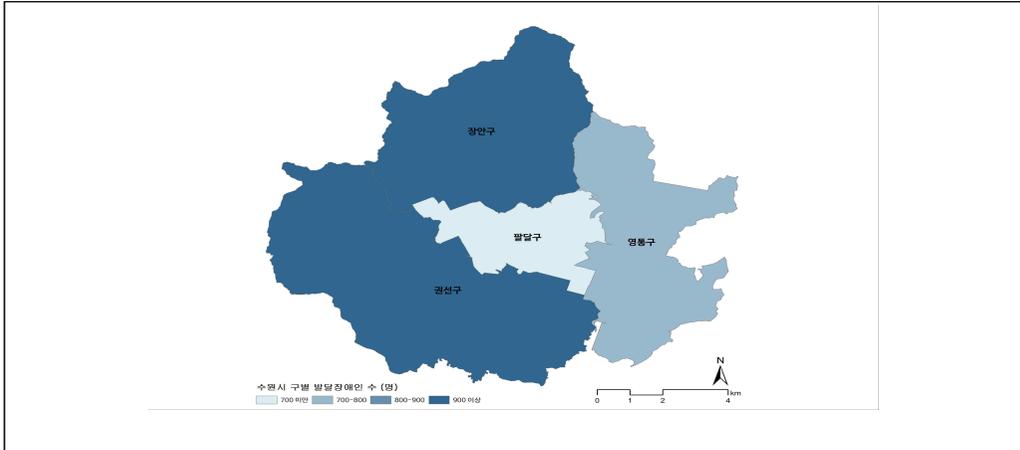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5) 행정구역별 발달장애인 현황

- 발달장애인 3,371명을 행정구별로 살펴본 결과, 권선구 995명(29.5%), 장안구 920명(27.3%), 영통구 787명(23.3%), 팔달구 669명(19.8%) 순 임(〈표 3-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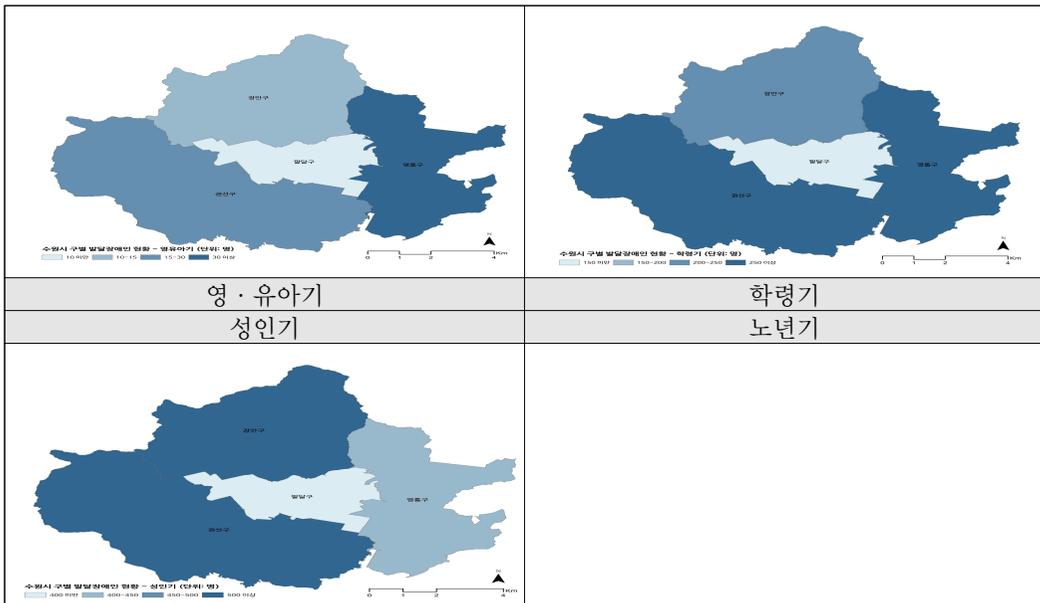
(단위 : 명)



〈그림 3-5〉 수원시 구별 발달장애인 분포도(2016.6)

- 영·유아기와 학령기는 영통구가 각각 35명(45.5%), 288명(30.7%), 성인기는 권선구(584명, 29.6%), 노년기는 장안구(126명, 33.2%)가 가장 많음(〈표 3-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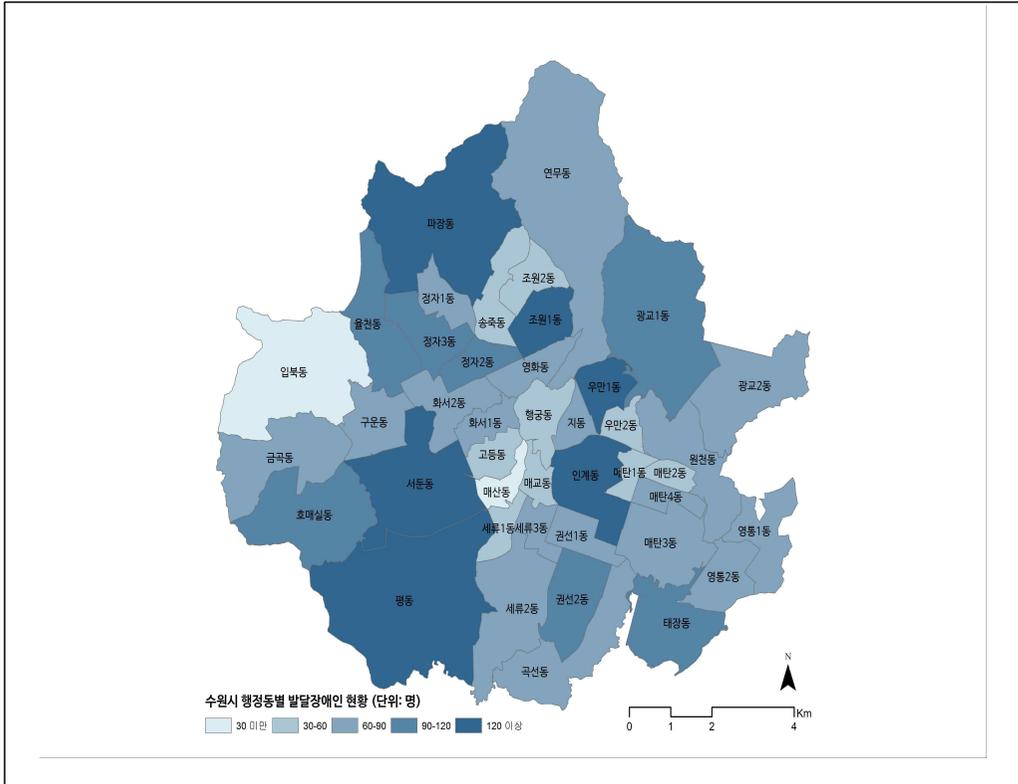
(단위 : 명)



〈그림 3-6〉 수원시 구별 생애단계 발달장애인 분포도(2016.6)

□ 발달장애인 3,371명의 거주지역을 42개 행정동별로 살펴본 결과, 서둔동(170명), 파장동(145명), 우만1동(138명), 조원1동(129명), 인계동(125명), 평동(1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11〉 참조)

(단위 : 명)



〈그림 3-7〉 수원시 행정동별 발달장애인 분포도(2016.6)

□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를 42개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영·유아기는 원천동 9명(11.7%), 학령기는 광고1동 47명(5.0%), 성인기는 파장동 117명(5.9%), 노년기는 우만1동 35명(9.2%)으로 가장 많음(<표 3-11> 참조)

(단위 : 명)



<그림 3-8> 수원시 행정동별 생애단계 발달장애인 분포도(2016.6)

〈표 3-11〉 수원시 행정동별 발달장애인 현황(2016.6)

(단위 : 명)

구분	계			영·유아기(만 0~5세)			학령기(만 6세~17세)			성인기(만 18세~49세)			노년기(만 50세 이후)			
	지적	자폐	계	지적	자폐	계	지적	자폐	계	지적	자폐	계	지적	자폐	계	
계	2,874	497	3,371	51	26	77	688	250	938	1,757	219	1,976	378	2	380	
소계	801	119	920	6	5	11	164	54	218	506	59	565	125	1	126	
장안구	송죽동	47	4	51	0	0	0	10	3	13	26	1	27	11	0	11
	연무동	68	8	76	0	0	0	8	2	10	45	6	51	15	0	15
	영화동	59	6	65	1	1	2	6	2	8	36	3	39	16	0	16
	율천동	89	16	105	1	1	2	19	7	26	60	8	68	9	0	9
	정자1동	76	13	89	3	1	4	19	5	24	44	7	51	10	0	10
	정자2동	104	13	117	1	0	1	25	8	33	61	4	65	17	1	18
	정자3동	81	16	97	0	1	1	21	9	30	51	6	57	9	0	9
	조원1동	116	13	129	0	0	0	28	6	34	73	7	80	15	0	15
	조원2동	36	10	46	0	0	0	10	7	17	24	3	27	2	0	2
파장동	125	20	145	0	1	1	18	5	23	86	14	100	21	0	21	
소계	875	120	995	19	2	21	215	69	284	536	48	584	105	1	106	
권선구	곡선동	62	10	72	3	0	3	14	6	20	33	4	37	12	0	12
	구운동	73	8	81	0	0	0	15	5	20	49	3	52	9	0	9
	권선1동	59	6	65	0	0	0	13	3	16	38	3	41	8	0	8
	권선2동	84	20	104	2	1	3	25	10	35	53	9	62	4	0	4
	금곡동	63	17	80	0	0	0	18	10	28	39	7	46	6	0	6
	서둔동	160	10	170	2	1	3	27	5	32	113	4	117	18	0	18
	세류1동	23	8	31	2	0	2	3	5	8	15	3	18	3	0	3
	세류2동	68	7	75	1	0	1	17	3	20	38	4	42	12	0	12
	세류3동	65	8	73	1	0	1	18	4	22	39	4	43	7	0	7
	입북동	23	3	26	2	0	2	7	2	9	12	1	13	2	0	2
	평동	111	11	122	6	0	6	26	6	32	64	4	68	15	1	16
호매실동	84	12	96	0	0	0	32	10	42	43	2	45	9	0	9	

〈표 3-11〉 수원시 행정동별 발달장애인 현황(2016.6) (계속)

(단위 : 명)

구분	계			영·유아기(만 0~5세)			학령기(만 6세~7세)			성인기(만 18세~49세)			노년기(만 50세 이후)			
	지적	자폐	계	지적	자폐	계	지적	자폐	계	지적	자폐	계	지적	자폐	계	
소계	591	78	669	6	4	10	110	38	148	374	36	410	101	0	101	
구 입 단	고등동	31	5	36	0	1	1	6	1	7	20	3	23	5	0	5
	매교동	32	4	36	0	0	0	2	2	4	24	2	26	6	0	6
	매산동	28	2	30	0	0	0	4	1	5	20	1	21	4	0	4
	우만1동	130	8	138	0	0	0	23	3	26	72	5	77	35	0	35
	우만2동	39	9	48	1	1	2	8	3	11	28	5	33	2	0	2
	인계동	109	16	125	2	1	3	14	9	23	76	6	82	17	0	17
	지동	55	6	61	2	0	2	6	3	9	35	3	38	12	0	12
	행궁동	40	0	40	0	0	0	4	0	4	26	0	26	10	0	10
	화서1동	77	10	87	1	0	1	20	6	26	48	4	52	8	0	8
	화서2동	50	18	68	0	1	1	23	10	33	25	7	32	2	0	2
소계	607	180	787	20	15	35	199	89	288	341	76	417	47	0	47	
구 애 요	광고1동	57	39	96	3	2	5	24	23	47	26	14	40	4	0	4
	광고2동	63	17	80	2	4	6	17	9	26	34	4	38	10	0	10
	매탄1동	35	8	43	0	0	0	9	2	11	24	6	30	2	0	2
	매탄2동	44	9	53	1	0	1	14	2	16	24	7	31	5	0	5
	매탄3동	70	18	88	2	1	3	20	10	30	46	7	53	2	0	2
	매탄4동	61	6	67	0	0	0	17	5	22	38	1	39	6	0	6
	영통1동	63	25	88	1	2	3	24	12	36	33	11	44	5	0	5
	영통2동	68	19	87	2	1	3	29	9	38	30	9	39	7	0	7
	원천동	63	14	77	6	3	9	27	9	36	28	2	30	2	0	2
	태장동	83	25	108	3	2	5	18	8	26	58	15	73	4	0	4

주 : 2016년 6월 말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제3절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시설 및 이용자 현황

1. 생애단계별 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시설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과 이용자를 분석한 후 그 중 발달장애인만 추출하여 재분석 함
-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시설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장애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재활실시 기관으로 특수교육기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재활실시 기관으로 특수교육기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표 3-12〉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이용시설 현황

관계 부처	관계법령	구분		생애단계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세 ~17세)	성인기 (만 18세~49세)	노년기 (만 50세 이후)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이용가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발달장애인법 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법 제31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단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만 6세 미만				

〈표 3-12〉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이용시설 현황 (계속)

관계부처	관계법령	구분	생애단계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세 ~17세)	성인기 (만 18세~49세)	노년기 (만 50세 이후)
교육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5조	장애영아	만 3세 미만 무상교육	-		
		유치원	의무교육(만 3세~만 17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대학 내)			대학에 진학한 장애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및 제34조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 및 장애인 계속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고용부	장애인고용법 제9조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법 제2조)			만 15세 이상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장애인고용법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인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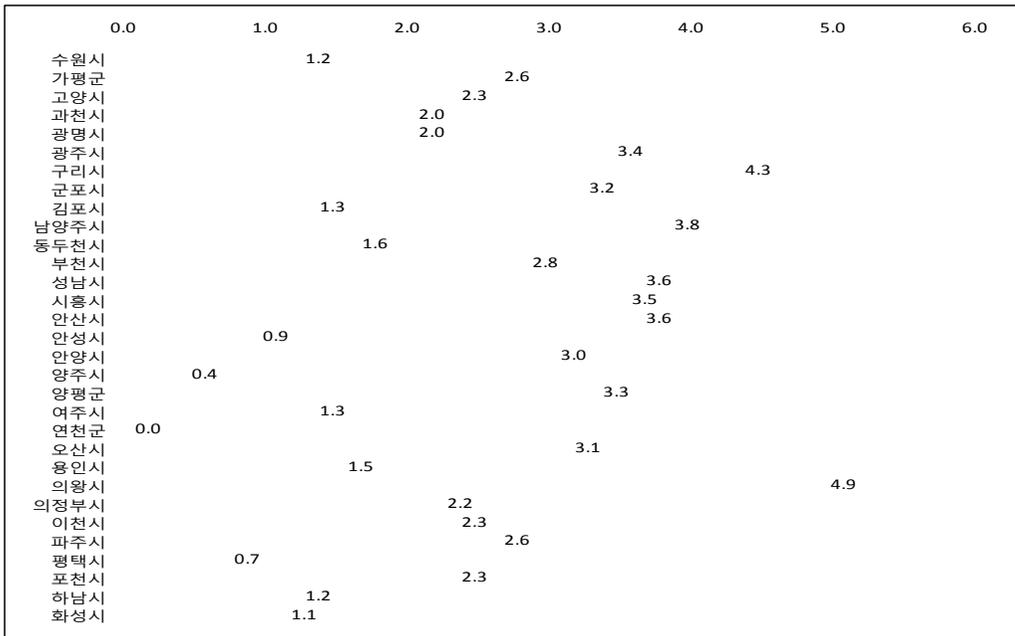
2. 영·유아(만0~5세 이하)

-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시설은 보육 및 교육시설, 거주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장애 영·유아의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1) 보육 시설

- 2016년 6월 기준, 경기도에는 19개소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269개소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함
- 장애 영·유아 보육 관련 어린이집(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남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26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안산시 24개소, 고양시 22개소, 부천시 17개소, 안양시 16개소, 수원시 1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어린이집 대비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비중은 의왕시가 4.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구리시(4.3%), 남양주시(3.8%), 성남시·안산시(3.6%) 등의 순임

(단위 : %)



〈그림 3-9〉 경기도 장애관련 어린이집 비율(2016.6)

〈표 3-13〉 경기도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현황(2016.6)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어린이집	장애관련 어린이집		
		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경기도	12,429	288(100.0)	19	269
수원시	1,217	15(1.2)	1	14
가평군	39	1(2.6)	0	1
고양시	939	22(2.3)	1	21
과천시	49	1(2.0)	0	1
광명시	349	7(2.0)	0	7
광주시	348	12(3.4)	1	11
구리시	163	7(4.3)	0	7
군포시	282	9(3.2)	0	9
김포시	397	5(1.3)	1	4
남양주시	693	26(3.8)	0	26
동두천시	123	2(1.6)	1	1
부천시	618	17(2.8)	1	16
성남시	732	26(3.6)	1	25
시흥시	423	15(3.5)	1	14
안산시	676	24(3.6)	3	21
안성시	230	2(0.9)	1	1
안양시	541	16(3.0)	2	14
양주시	271	1(0.4)	1	0
양평군	61	2(3.3)	0	2
여주시	77	1(1.3)	0	1
연천군	38	0(0.0)	0	0
오산시	256	8(3.1)	1	7
용인시	1,098	17(1.5)	1	16
의왕시	164	8(4.9)	0	8
의정부시	494	11(2.2)	0	11
이천시	173	4(2.3)	0	4
파주시	502	13(2.6)	1	12
평택시	428	3(0.7)	0	3
포천시	131	3(2.3)	1	2
하남시	173	2(1.2)	0	2
화성시	744	8(1.1)	0	8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장애관련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info/main.jsp>)

- 수원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어린이집 대비 1.2%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2.3%)보다 낮음
- 행정구별로는 15개소 중 팔달구 3개소, 권선구 5개소, 장안구 2개소, 영통구 5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15개소 중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3개소를 제외한 12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음

〈표 3-14〉 수원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유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시립서호어린이집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20	국공립
	시립광교2동어린이집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시립꽃뫼보듬이나눔어린이집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21-4	
	시립세곡어린이집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16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어린이집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74-21	
	시립영통어린이집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45	
	시립원천동어린이집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주민센터 1층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시립칠보어린이집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40번길 29, 8단지	
	시립호매실어린이집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431	
	시립호반어린이집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로 84 휴먼시아 20단지	
	시립호수어린이집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247	
	시립화서1동어린이집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22	
	(장안)방주어린이집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0번길 26	
	(권선)방주어린이집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6번길 56	
평안어린이집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69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

- 2016년 6월 말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수원시 거주 장애 영·유아는 총 63명 임
- 성별은 남아 43명(68.3%), 여아 20명(31.7%)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2배 이상 많음

〈표 3-15〉 수원시 장애관련 어린이집 자원 현황(2016.6)

(단위 : 명)

구분	교육과정			장애등급					성별		
	소계	장애아	누리과정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남	여
계	63	3	60	63	17	28	13	5	63	43	2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4	2	22	24	11	1	2	0	39	6	8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9	1	38	39	6	17	11	5	24	27	12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장애아관련 어린이집 자원 영유아 중 수원시 거주 영·유아만 추출한 수치이며, 유예로 인하여 일부 만5세 이상의 영·유아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 수원시청 보육아동과 및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발달장애 영·유아는 총 63명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24명(38.1%), 장애통합어린이집은 39명(61.9%)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자폐장애는 7명(29.2%), 지적장애 7명(29.2%) 이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자폐장애는 7명(17.9%), 지적장애 20명(51.3%)으로 나타남

〈표 3-16〉 수원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장애유형(2016.6)

(단위 : 명, %)

구분	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계	63(100.0)	24(100.0)	39(100.0)
뇌병변	12(19.0)	7(29.2)	5(12.8)
시각	3(4.8)	1(4.2)	2(5.1)
언어	2(3.2)	1(4.2)	1(2.6)
자폐	14(22.2)	7(29.2)	7(17.9)
지적	27(42.9)	7(29.2)	20(51.3)
지체	1(1.6)	-	1(2.6)
청각	4(6.3)	1(4.2)	3(7.7)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장애아관련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중 수원시 거주 영유아만 추출된 수치임

자료 : 수원시청 보육아동과 및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 교육 시설

-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특히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임
 - 특수교육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경기도에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총 152개소이며, 그 중 화성시가 1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양시 13개소, 수원시·남양주시·성남시가 동일하게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3-17〉 경기도 특수학급 유치원 현황(2015.12)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유치원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경기도	2,188(100.0)	152(100.0)
수원시	191(8.7)	11(6.6)
가평군	16(0.7)	2(1.3)
고양시	167(7.6)	13(8.6)
과천시	8(0.4)	1(0.7)
광명시	51(2.3)	4(2.6)
광주시	39(1.8)	3(2.0)
구리시	32(1.5)	2(1.3)
군포시	49(2.2)	0(0.0)
김포시	81(3.7)	4(2.6)
남양주시	107(4.9)	11(7.3)
동두천시	19(0.9)	1(0.7)
부천시	123(5.6)	9(6.0)
성남시	125(5.7)	11(7.3)
시흥시	61(2.8)	5(3.3)
안산시	99(4.5)	6(4.0)
안성시	52(2.4)	4(2.6)
안양시	86(3.9)	5(3.3)
양주시	47(2.1)	3(2.0)
양평군	26(1.2)	4(2.6)
여주시	35(1.6)	3(2.0)
연천군	14(0.6)	1(0.7)
오산시	49(2.2)	5(3.3)
용인시	169(7.7)	6(4.0)
의왕시	24(1.1)	0(0.0)
의정부시	64(2.9)	4(2.6)
이천시	52(2.4)	5(3.3)
파주시	99(4.5)	5(3.3)
평택시	104(4.8)	6(4.0)
포천시	41(1.9)	2(1.3)
하남시	27(1.2)	1(0.7)
화성시	131(6.0)	15(9.9)

자료 :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 수원시 내 유치원 중 특수학급은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7개소는 영통구에 집중되어 있음
- 설립유형별로는 11개소 특수유치원 중, 1개소를 제외한 10개소는 공립유치원 임

〈표 3-18〉 수원시 내 특수유치원 현황

구분	설립유형	소재지	
1	꿈누리유치원	공립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266번길 79
2	매산유치원	공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3	빛누리유치원	공립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8번길 52
4	세류유치원	공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78
5	수원매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304번길 47-17
6	신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66
7	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17번길 40
8	큰나래유치원	공립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42번길 22
9	파장유치원	공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81번길 32-9
10	한누리유치원	공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11	중앙기독교유치원	사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70

자료 : 기관별 홈페이지 확인

- 유치원을 다니는 발달장애 유아는 총 34명으로 특수학급 32명, 일반학급 2명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으로는 특수학급의 지적장애는 20명(62.5%), 자폐장애는 12명(37.5%)이며, 일반학급의 2명은 모두 지적장애 임
- 성별은 남아 26명(76.5%), 여아 8명(23.5%)으로 나타남

〈표 3-19〉 수원시 유치원 내 발달장애 영·유아 현황(2016.6)

(단위 : 명)

구분	학급유형	발달장애인			성별		
		계	지적	자폐	계	남	여
계		34	22	12	34	26	8
유치원	특수학급	32	20	12	32	26	6
	일반학급	2	2	0	2	0	2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유치원 유예로 인하여 만 5세 이상의 영·유아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 수원시 교육지원청 내부자료

3) 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은 전국에 총 10개소가 운영되며, 서울·부산·대구에 각 2개소, 인천시·경기도·전북·경남에서는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
-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 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표 3-20〉 경기도 영·유아 거주시설 현황(2015.12)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전북	경남
10	2	2	2	1	1	1	1

주 : 2015년 12월 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 경기도에는 1개소의 영유아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여주시에 위치하고 있음

3. 학령기(만6~17세)

- 학령기 장애아동과 관련된 복지시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이 교육시설에 집중되어 있음

1)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1) 시설현황

- 경기도는 34개소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2,391개소), 26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수원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에는 특수학교 3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특수학교는 경기도의 8.8%, 특수학급 7.6%, 특수교육지원센터 7.7%의 수준임

〈표 3-21〉 경기도 특수학교·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현황(2016.4)

(단위: 개소)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도	34	1,200	650	541	26
수원시	3	88	52	41	2
가평군	0	14	6	5	1
고양시	4	61	44	37	1
과천시	0	4	2	3	0
광명시	0	33	17	15	1
광주시	3	25	11	15	1
구리시	0	16	7	7	0
군포시	0	14	12	12	1
김포시	1	40	22	12	1
남양주시	1	55	32	23	1
동두천시	0	11	8	5	1
부천시	2	69	41	34	1
성남시	2	70	39	29	1
시흥시	0	56	29	28	1
안산시	2	81	52	37	1
안성시	1	40	17	13	1
안양시	1	44	21	21	1
양주시	0	24	10	9	0
양평군	1	26	11	9	1
여주시	0	29	17	16	1
연천군	0	13	6	3	1
오산시	1	20	9	12	1
용인시	1	78	42	35	1
의왕시	0	14	6	5	0
의정부시	2	39	22	16	1
이천시	1	34	15	13	1
파주시	2	47	21	20	1
평택시	2	57	24	20	1
포천시	0	28	20	17	1
하남시	1	15	7	6	0
화성시	3	55	28	23	0

주: 2016년 4월 1일 기준

자료 : 2016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내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초등학교 237명, 중학교 148명, 고등학교 216명으로 총 601명의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학교에 재학 중에 있음
-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468명(77.9%), 자폐는 128명(21.3%)임
- 성별은 601명 중 남성 402명(66.9%), 여성 199명(33.1%)으로 나타남

〈표 3-22〉 일반학교 내 발달장애인 현황(2016.6)

(단위 : 명, %)

구분	발달장애인 현황				성별			
	계	지적	자폐	기타	계	남성	여성	
계	601(100.0)	468(77.9)	128(21.3)	5(0.8)	601(100.0)	402(66.9)	199(33.1)	
초등학교	소계	237(100.0)	167(70.5)	70(29.5)	-	237(100.0)	159(67.1)	78(32.9)
	특수학급	227(100.0)	162(71.4)	65(28.6)	-	227(100.0)	151(66.5)	76(33.5)
	일반학급	10(100.0)	5(50.0)	5(50.0)	-	10(100.0)	8(80.0)	2(20.0)
중학교	소계	148(100.0)	125(84.5)	22(14.9)	1(0.7)	148(100.0)	105(70.9)	43(29.1)
	특수학급	136(100.0)	113(83.1)	22(16.2)	1(0.7)	136(100.0)	97(71.3)	39(28.7)
	일반학급	12(100.0)	12(100.0)	-	-	12(100.0)	8(66.7)	4(33.3)
고등학교	소계	216(100.0)	176(81.5)	36(16.7)	4(1.9)	216(100.0)	138(63.9)	78(36.1)
	특수학급	213(100.0)	173(81.2)	36(16.9)	4(1.9)	213(100.0)	137(64.3)	76(35.7)
	일반학급	3(100.0)	3(100.0)	-	-	3(100.0)	1(33.3)	2(66.7)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주 2 : 기타는 중복장애나 장애구분 미표기 포함

자료 : 수원시 교육지원청 내부자료

- 수원시 내 장애인 특수학교는 3개소로 영통구 1개소, 장안구 1개소, 권선구 1개소가 있음

〈표 3-23〉 수원시 장애인 특수학교 현황(2016.4)

(단위 : 개소)

학교명	설립유형	설립연도	장애유형	주소
아름학교	공립	2013년	시각/정신지체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32
수원서광학교	사립	1962년	청각/언어/정신지체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517
자혜학교	사립	1973년	정신지체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47

주 : 2016년 4월 1일 기준

자료 :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통계(201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학교 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82명(71.4%), 자폐장애 65명(25.5%), 기타 8명(3.1%)으로 총 255명이며, 성별은 남성 181명(71.0%), 여성 74명(29.0%) 임

〈표 3-24〉 특수학교 내 발달장애인 현황(2016.6)

(단위 : 명, %)

학교명	발달장애인 현황				성별		
	계	지적	자폐	기타	계	남성	여성
계	255(100.0)	182(71.4)	65(25.5)	8(3.1)	255(100.0)	181(71.0)	74(29.0)
아름학교	95(100.0)	73(76.8)	19(20.0)	3(3.2)	95(100.0)	68(71.6)	27(28.4)
수원서광학교	94(100.0)	62(66.0)	32(34.0)	-	94(100.0)	66(70.2)	28(29.8)
자혜학교	66(100.0)	47(71.2)	14(21.2)	5(7.6)	66(100.0)	47(71.2)	19(28.8)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주 2 : 기타는 중복장애나 장애구분 미표기 포함

자료 : 수원교육지원청 내부자료

□ 수원시 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표 3-25〉 수원시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센터명	설치된 기관	주소
경기도특수교육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안릉초등학교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33번길 21

주 : 2016년 4월 1일 기준

자료 :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통계(201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4. 성인기(만18~49세)

1) 직업재활시설

- 2015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에는 총 93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법적 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
- 경기도 내 근로사업장은 총 14개소이며 성남시와 이천시가 각 2개소로 가장 많음
 -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경기도 내 보호작업장은 총 79개소이며 고양시와 수원시가 9개소로 가장 많음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임
- 직업적응훈련시설은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 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은 2015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시설로 아직 경기도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표 3-26>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2015.12)

(단위 : 개소, 명)

구분	직업재활시설 수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자		종사자		근로자		종사자	
	계	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경기도	93	14	79	733	556	178	173	2588	2,216	592	527
수원시	10	1	9	150	126	18	20	294	233	57	54
가평군	0	0	0	-	-	-	-	-	-	-	-
고양시	10	1	9	40	40	11	11	293	261	61	59
과천시	0	0	0	-	-	-	-	-	-	-	-
광명시	2	0	2	-	-	-	-	94	88	25	20
광주시	4	0	4	-	-	-	-	135	85	36	23
구리시	3	1	2	30	30	12	11	63	63	10	10
군포시	3	0	3	-	-	-	-	72	69	21	18
김포시	4	0	4	-	-	-	-	102	83	30	28
남양주시	4	1	3	30	31	12	12	89	82	20	22
동두천시	1	0	1	-	-	-	-	32	32	7	4
부천시	3	1	2	60	46	14	12	75	66	17	15
성남시	7	2	5	95	79	25	25	160	131	35	29
시흥시	1	0	1	-	-	-	-	30	39	6	6
안산시	5	1	4	45	36	12	12	159	147	36	33
안성시	2	1	1	33	9	13	7	30	29	6	6
안양시	2	0	2	-	-	-	-	120	119	20	20
양주시	1	0	1	-	-	-	-	30	20	10	3
양평군	2	0	2	-	-	-	-	60	59	16	15
여주시	2	0	2	-	-	-	-	59	49	12	12
연천군	0	0	0	-	-	-	-	-	-	-	-
오산시	1	0	1	-	-	-	-	25	21	4	4
용인시	5	0	5	-	-	-	-	125	119	40	39
의왕시	1	0	1	-	-	-	-	30	0	4	0
의정부시	1	0	1	-	-	-	-	31	31	5	5
이천시	5	2	3	100	58	24	23	75	61	23	18
파주시	2	1	1	50	38	15	15	50	30	7	6
평택시	5	1	4	50	32	10	10	125	113	27	30
포천시	2	1	1	50	31	12	15	20	15	5	5
하남시	1	0	1	-	-	-	-	38	37	12	11
화성시	4	0	4	-	-	-	-	172	134	40	32

주 : 2015년 12월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에는 9개소의 장애인보호작업장, 1개소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운영되어 총 10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수원시의 근로사업장은 경기도의 7.1%, 보호작업장은 경기도의 11.4%를 차지함
- 행정구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은 영통구에 집중되어 있음
 - 장애인 보호작업장 9개소 중 영통구 4개소, 장안구 2개소, 권선구 2개소, 팔달구 1개소이며, 1개소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영통구에 위치하고 있음

〈표 3-27〉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 및 현원(2016.6)

(단위 : 명, %)

구분	세부 유형	시설수	시설명	소재지	개소연월	이용자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9	A시설	영통구	1996.12.01	30	24	80.0
			B시설	권선구	2001.04.17	70	44	62.9
			C시설	영통구	2001.10.18	30	29	96.7
			D시설	영통구	2003.03.28	30	23	76.7
			E시설	장안구	2003.11.17	41	19	46.3
			F시설	팔달구	2005.10.19	20	13	65.0
			G시설	영통구	2008.07.18	30	22	73.3
			H시설	장안구	2012.12.31	35	23	65.7
			I시설	권선구	2014.11.24	30	20	66.7
	장애인 근로사업장	1	J시설	영통구	1995.11.08	150	128	85.3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정원충족률=(현원÷정원)×100으로 산출함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2016년 6월 말 기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31.5세 임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평균 연령은 27.9세(SD=7.60)이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평균 연령은 37.5세(SD=7.7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연령이 낮음
- 평균 이용기간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62.2개월(SD=52.66)이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 107.0개월(SD=83.54)로 근로사업장의 경우가 이용기간이 더 김
- 성별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모두 남성이 많음

〈표 3-28〉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연령(2016.6)

(단위 : 명, 세, 개월)

구분	세부 유형	시설명	현원	연령				이용기간				성별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남	여
직업 재활 시설	계		345	17.0	59.0	31.5	8.93	0.1	259.3	78.9	69.19	232	113
		소계	217	17.0	58.0	27.9	7.60	0.1	185.6	62.2	52.66	150	67
		A시설	24	18.0	58.0	33.0	13.50	0.5	164.5	61.1	62.76	17	7
		B시설	44	21.0	55.0	28.0	5.99	5.9	185.6	100.1	50.24	30	14
		C시설	29	17.0	42.0	28.0	6.14	1.3	175.7	81.7	54.82	20	9
		D시설	23	19.0	57.0	32.7	9.18	3.1	158.3	84.1	53.98	16	7
		E시설	19	19.0	38.0	26.4	5.10	2.0	103.4	48.5	34.76	17	2
		F시설	13	21.0	31.0	26.0	4.30	15.2	125.8	57.9	35.86	8	5
		G시설	22	20.0	37.0	24.6	4.39	3.0	94.4	35.5	33.38	17	5
		H시설	23	19.0	33.0	25.4	4.80	1.0	42.6	29.4	16.89	11	12
		I시설	20	21.0	40.0	25.1	4.83	0.1	16.4	9.9	6.04	14	6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계	128	18.0	59.0	37.5	7.72	0.7	259.3	107.0	83.54	82	46
		J시설	128	18.0	59.0	37.5	7.72	0.7	259.3	107.0	83.54	82	46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이용자들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이용자 총 345명 중 지적장애가 181명(52.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93명(27.0%), 자폐장애 26명(7.5%), 청각장애 25명(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9〉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2016.6)

(단위 : 명)

구분	세부 유형	시설명	계	장애유형별										
				지적	자폐	정신	뇌병변	지체	언어	청각	시각	뇌전증	안면	기타
계			345	181	26	5	8	93	1	25	3	1	1	1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소계	217	172	26	5	1	8	0	4	0	0	0	1
		A시설	24	16	2	-	-	4	-	1	-	-	-	1
		B시설	44	36	5	1	-	1	-	1	-	-	-	-
		C시설	29	24	4	-	1	-	-	-	-	-	-	-
		D시설	23	19	-	3	-	1	-	-	-	-	-	-
		E시설	19	15	3	-	-	1	-	-	-	-	-	-
		F시설	13	11	1	1	-	-	-	-	-	-	-	-
		G시설	22	16	3	-	-	1	-	2	-	-	-	-
		H시설	23	20	3	-	-	-	-	-	-	-	-	-
	I시설	20	15	5	-	-	-	-	-	-	-	-	-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계	128	9	0	0	7	85	1	21	3	1	1	0
J시설		128	9	-	-	7	85	1	21	3	1	1	-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직업재활시설 중 발달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총 207명 중 지적장애 181명(87.4%), 자폐장애 26명(12.6%)로 지적장애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성별은 남성 143명(69.1%), 여성 64명(30.9%)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음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은 2급이 116명(57.0%)으로 가장 많은데 반해 장애인근로사업장은 3급(77.8%)이 가장 많음
-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 발달장애인의 평균연령은 27.1세(SD=6.44)이며, 장애인 근로사업장 이용 발달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33.0세(SD=8.26) 임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이용기간은 62.0개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114.4개월로 나타남

〈표 3-30〉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달장애인 현황(2016.6)

(단위 : 명, 세, 개월)

구분	세부 유형	시설명	계	장애 유형		성별		장애등급			연령			이용기간
				지적	자폐	남성	여성	1급	2급	3급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계		207	181	26	143	64	40	118	49	17.0	57.0	27.3(6.61)	64.3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소계	198	172	26	136	62	40	116	42	17.0	57.0	27.1(6.44)	62.0
		A시설	18	16	2	13	5	5	11	2	18.0	53.0	27.8(9.99)	49.2
		B시설	41	36	5	28	13	16	21	4	21.0	55.0	28.3(6.02)	104.6
		C시설	28	24	4	19	9	5	18	5	17.0	42.0	28.0(6.25)	80.4
		D시설	19	19	0	14	5	2	11	6	19.0	57.0	31.3(8.65)	89.5
		E시설	18	15	3	16	2	2	12	4	19.0	38.0	26.3(5.23)	46.7
		F시설	12	11	1	7	5	0	3	9	21.0	31.0	25.7(4.31)	57.5
		G시설	19	16	3	14	5	3	14	2	20.0	32.0	24.0(3.43)	39.0
		H시설	23	20	3	11	12	4	13	6	19.0	33.0	25.4(4.80)	29.4
		I시설	20	15	5	14	6	3	13	4	21.0	40.0	25.1(4.83)	9.9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계	9	9	0	7	2	0	2	7	18.0	42.0	33.0(8.26)	114.4
J시설		9	9	-	7	2	-	2	7	18.0	42.0	33.0(8.26)	114.4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용 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표 3-31>과 같이 종사자 배치 인원을 규정하고 있음

<표 3-3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종배치 기준

직종	배치기준	인원	기타	
1	시설장	시설당	1명	
2	사무국장	이용 장애인 30명 이상	1명	
3	직업훈련교사	장애인 10명당	1명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10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장애인 12명당	1명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12명 초과 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4	간호사	이용 장애인이 50명 이상	1명	다만, 이용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배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음
5	영양사	이용 장애인이 30명 이상	1명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6	사무원	시설당	1명	
7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근로장애인 10명당	1명	장애인 근로사업장 (10명 초과 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근로장애인 20명당	1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훈련장애인은 미포함, 20명 초과 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8	시설관리기사	장애인(근로장애인과 훈련 장애인)과 시설장을 합산하여 50명 이상인 경우	1명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경우
9	조리원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	1명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10	위생원	급식시설 및 기숙시설이 있는 경우 배치	1명	급식시설 및 기숙시설이 있는 경우 배치

자료 :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보건복지부)

- 수원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직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시설 배치 기준보다 부족한 상황임
- B시설의 경우 이용장애인이 44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영양사가 없음
 - D시설, F시설, H시설, I시설은 시설당 1명 씩 있어야 하는 사무원도 없음
 - 생산 및 판매기사도 근로사업장은 10명당 1명, 근로보호작업장은 20명당 1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시설의 경우 이용장애인이 44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판매기사가 1명 밖에 없음

〈표 3-32〉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현황(2016.6)

(단위 : 명)

구분	세부 유형	시설명	이용 장애인	종사자													
				현원	성별		시설장	사무 국장	직업 훈련 교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 및 판매 관리 기사	시설 관리 기사	조리원	위생원	기타
					남	여											
계			345	80	50	30	10	1	27	1	1	6	20	1	2	1	10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A시설	24	6	5	1	1	-	2	-	-	1	1	-	-	-	1
		B시설	44	8	5	3	1	-	4	-	-	1	1	-	-	-	1
		C시설	29	9	6	3	1	-	3	-	-	1	1	-	-	-	3
		D시설	23	7	5	2	1	-	4	-	-	-	1	-	1	-	-
		E시설	19	7	3	4	1	-	3	-	-	1	-	-	-	-	2
		F시설	13	4	3	1	1	-	2	-	-	-	1	-	-	-	-
		G시설	22	7	4	3	1	-	2	-	-	1	1	-	-	-	2
		H시설	23	5	1	4	1	-	3	-	-	-	1	-	-	-	-
		I시설	20	4	3	1	1	-	2	-	-	-	1	-	-	-	-
		장애인 근로사업장	J시설	128	23	15	8	1	1	2	1	1	1	12	1	1	1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5. 생애단계 공통 시설

1)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됨

 -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임
- 경기도 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지체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지적장애인 시설이 각각 8개소, 4개소, 2개소, 83개소로 총 97개소의 장애유형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이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50개소이며 이천시 7개소, 양평군 6개소, 화성시 4개소, 가평군·부천시·안산시·용인시·파주시 3개소, 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연천군 2개소, 고양시·광주시·군포시·김포시·성남시·양주시·오산시·의정부시·평택시·포천시에는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수원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동두천시, 안양시, 여주시, 의왕시, 하남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미설치 지역임
- 경기도 내 단기거주시설은 25개소로 고양시·안산시 3개소, 광주시·이천시·파주시 2개소, 수원시·광명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성남시·시흥시·안양시·연천군·의정부시·포천시·하남시는 각 1개소가 운영됨

 - 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공동생활가정은 총 137개소이며 안산시와 용인시가 각 14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성남시 13개소, 수원시·고양시는 각 11개소 등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임

〈표 3-33〉 경기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2015.12)

(단위 : 개소)

구분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단기거주 시설	공동생활 가정
		지체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 시설			
계	310	8	4	2	83	50	25	137
수원시	15	1	0	0	2	0	1	11
가평군	6	0	0	0	3	3	0	0
고양시	23	0	1	0	7	1	3	11
과천시	0	0	0	0	0	0	0	0
광명시	2	0	0	0	1	0	1	0
광주시	18	0	0	0	6	1	2	9
구리시	5	0	0	0	2	0	0	3
군포시	4	0	0	0	0	1	1	2
김포시	7	2	0	0	2	1	1	1
남양주시	12	0	0	0	7	2	1	2
동두천시	1	0	0	0	0	0	1	0
부천시	12	0	0	0	2	3	0	7
성남시	22	0	0	0	7	1	1	13
시흥시	10	0	0	0	1	2	1	6
안산시	23	0	0	0	3	3	3	14
안성시	14	0	0	1	2	2	0	9
안양시	5	0	0	0	1	0	1	3
양주시	8	2	0	0	4	1	0	1
양평군	14	0	0	0	5	6	0	3
여주시	5	1	0	0	1	0	0	2
연천군	4	0	0	0	0	2	1	1
오산시	2	0	0	0	1	1	0	0
용인시	25	0	1	0	7	3	0	14
의왕시	3	0	0	0	1	0	0	2
의정부시	7	1	0	0	1	1	1	3
이천시	11	0	0	0	1	7	2	1
파주시	13	0	0	0	5	3	2	3
평택시	7	0	0	0	2	1	0	4
포천시	17	1	2	1	6	1	1	5
하남시	5	0	0	0	3	0	1	1
화성시	10	0	0	0	0	4	0	6

주 : 2015년 12월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내 장애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3개소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지적장애 거주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1개소로 영통구에 위치하고 있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12개소 중 장안구 6개소, 권선구 4개소, 영통구 2개소 임

〈표 3-34〉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2016.6)

(단위 : 개소, 명, %)

구분	세부 유형	시설수	시설명	소재지	개소연월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	A시설	장안구	2003.11.06	52	52	100.0	
			B시설	장안구	2007.04.19	12	11	91.7	
			C시설	권선구	1991.09.30	38	38	10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2	1	D시설	영통구	2006.07.20	15	7	46.7
				E시설	권선구	2016.03.31	4	4	100.0
				F시설	영통구	2012.08.20	4	4	100.0
				G시설	장안구	2009.09.29	4	4	100.0
				H시설	장안구	2007.01.17	4	4	100.0
				I시설	장안구	2008.11.25	4	4	100.0
				J시설	장안구	2013.04.09	4	4	100.0
				K시설	영통구	2009.11.18	4	4	100.0
				L시설	장안구	2008.04.24	4	3	75.0
				M시설	권선구	2005.01.10	5	3	60.0
				N시설	권선구	2005.12.23	9	5	55.6
O시설	권선구	2001.05.17	4	3	75.0				
P시설	장안구	2009.09.30	4	3	75.0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평균 연령은 39.6세(SD=10.18)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3.0세(SD=12.5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9.7세(SD=6.40)로 나타남
- 이용기간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138.7개월(SD=89.33)로 월등히 높은 편임
- 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남자가 월등히 많으나 나머지 시설은 비슷하거나 한쪽 성별에 편중되어 있음

〈표 3-35〉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현황(2016.6)

(단위 : 명, 세, 개월)

구분	세부 유형	시설명	현원	연령				이용 기간			성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남	여
장애인 거주시설	계		153	11.0	68.0	36.8	11.76	2.0	301.3	113.2(91.70)	96	57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소계	101	20.0	64.0	39.6	10.18	5.9	301.3	138.7(89.33)	69	32
		A시설	52	20.0	55.0	35.1	8.18	6.1	153.2	96.2(51.32)	36	16
		B시설	11	34.0	64.0	53.2	11.03	5.9	148.8	76.2(51.62)	10	1
		C시설	38	22.0	61.0	42.0	8.09	17.2	301.3	214.8(87.00)	23	15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소계	7	11.0	28.0	19.7	6.40	3.4	44.9	10.5(15.19)	4	3
		D시설	7	11.0	28.0	19.7	6.40	3.4	44.9	10.5(15.19)	4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소계	45	15.0	68.0	33.0	12.53	2.0	254.5	72.0(77.31)	23	22
		E시설	4	18.0	52.0	34.8	14.36	2.0	2.0	2.0(0.00)	4	-
		F시설	4	20.0	33.0	26.8	7.23	6.8	38.5	23.8(13.60)	-	4
		G시설	4	32.0	57.0	44.8	10.34	23.3	23.3	23.3(0.00)	-	4
		H시설	4	31.0	47.0	36.3	7.27	6.1	112.6	85.9(53.26)	4	-
		I시설	4	19.0	47.0	32.5	11.90	2.0	93.3	47.4(52.41)	2	2
		J시설	4	30.0	44.0	35.8	5.91	23.3	23.3	23.3(0.00)	4	-
		K시설	4	22.0	32.0	25.5	4.51	4.5	40.0	20.0(14.88)	4	-
		L시설	3	20.0	29.0	25.3	4.73	26.4	99.6	75.2(42.28)	-	3
		M시설	3	57.0	68.0	62.3	5.51	44.7	254.5	182.8(119.64)	3	-
		N시설	5	15.0	26.0	22.2	4.21	176.5	230.3	209.7(22.22)	2	3
		O시설	3	34.0	36.0	35.0	1.00	100.5	162.3	130.7(30.92)	-	3
P시설	3	18.0	21.0	20.0	1.73	3.2	58.8	40.3(32.08)	-	3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이용자 101명 중 지적장애 82명(81.2%), 뇌병변 8명(7.9%), 자폐장애 6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4명, 자폐장애 2명, 뇌병변 1명으로 총 7명 임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41명, 자폐 1명, 정신장애 1명, 뇌병변 2명으로 총 45명 임

〈표 3-36〉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2016.6)

(단위 : 명)

구분	세부 유형	시설명	현원	장애유형								
				지적	자폐	정신	뇌병변	지체	언어	청각	시각	기타
계			153	127	9	2	11	2	0	0	0	2
장애인 거주시설	소계		101	82	6	1	8	2	0	0	0	2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A시설	52	46	6	-	-	-	-	-	-	-
		B시설	11	-	-	1	8	2	-	-	-	-
		C시설	38	36	-	-	-	-	-	-	-	2
	소계		7	4	2	0	1	0	0	0	0	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D시설	7	4	2	-	1	0	-	-	-	-
	소계		45	41	1	1	2	0	0	0	0	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E시설	4	4	-	-	-	-	-	-	-	-
		F시설	4	4	-	-	-	-	-	-	-	-
		G시설	4	4	-	-	-	-	-	-	-	-
		H시설	4	3	1	-	-	-	-	-	-	-
		I시설	4	4	-	-	-	-	-	-	-	-
		J시설	4	4	-	-	-	-	-	-	-	-
		K시설	4	4	-	-	-	-	-	-	-	-
		L시설	3	3	-	-	-	-	-	-	-	-
M시설		3	2	-	1	-	-	-	-	-	-	
N시설		5	3	-	-	2	-	-	-	-	-	
O시설		3	3	-	-	-	-	-	-	-	-	
P시설	3	3	-	-	-	-	-	-	-	-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 거주시설 중 발달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총 136명 중 지적장애 127명(93.4%), 자폐장애 9명(6.6%)으로 지적장애인이 월등히 많으며, 성별은 남성 83명(61.0%), 여성 53명(39.0%)로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은 1급이 56명(63.6%)으로 가장 많은데 반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은 3급이 19명(45.2%)으로 가장 많음
- 평균연령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7.8세(SD=8.7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2.8세(SD=11.3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0.5세(SD=6.6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기간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144.0개월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1.4개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1.5개월 순으로 나타남

〈표 3-37〉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 현황(2016.6)

(단위 : 명, 세, 개월)

구분	세부 유형	시설명	계	장애 유형		성별		장애등급			연령			이용 기간
				지적	자폐	남성	여성	1급	2급	3급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계			136	127	9	83	53	71	42	23	11.0	62.0	35.5(10.27)	112.7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소계	88	82	6	58	30	56	28	4	20.0	61.0	37.8(8.75)	144.0
		A시설	52	46	6	36	16	38	13	1	20.0	55.0	35.1(8.18)	96.2
		B시설	-	-	-	-	-	-	-	-	-	-	-	-
		C시설	36	36	-	22	14	18	15	3	22.0	61.0	41.7(8.13)	213.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소계	6	4	2	3	3	5	1	-	11.0	28.0	20.5(6.63)	11.5
		D시설	6	4	2	3	3	5	1	-	11.0	28.0	20.5(6.63)	1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소계	42	41	1	22	20	10	13	19	18.0	62.0	32.8(11.32)	61.4
		E시설	4	4	-	4	-	3	-	1	18.0	52.0	34.8(14.36)	2.0
		F시설	4	4	-	-	4	-	1	3	20.0	33.0	26.8(7.23)	23.8
		G시설	4	4	-	-	4	-	2	2	32.0	57.0	44.8(10.34)	23.3
		H시설	4	3	1	4	-	2	-	2	31.0	47.0	36.3(7.27)	85.9
		I시설	4	4	-	2	2	-	4	-	19.0	47.0	32.5(11.90)	47.4
		J시설	4	4	-	4	-	-	-	4	30.0	44.0	35.8(5.91)	23.3
		K시설	4	4	-	4	-	-	1	3	22.0	32.0	25.5(4.51)	20.0
		L시설	3	3	-	-	3	2	1	-	20.0	29.0	25.3(4.73)	75.2
		M시설	2	2	-	2	-	-	-	2	57.0	62.0	59.5(3.54)	146.9
N시설		3	3	-	2	1	2	1	-	23.0	26.0	24.3(1.53)	213.9	
O시설		3	3	-	-	3	1	1	1	34.0	36.0	35.0(1.00)	130.7	
P시설	3	3	-	-	3	-	2	1	18.0	21.0	20.0(1.73)	40.3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에서는 <표 3-38>과 같이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수원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촉탁의사가 있는 시설은 전무하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이 있는 시설이 전무함(<표 3-39> 참조)

<표 3-38>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직종배치 기준

직종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원장	시설당 1명	1명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사무국장	시설당 1명	-	-
사무원	시설당 1명	-	-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영양사	시설당 1명	-	-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	-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언어치료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상담평가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	-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	-
	지적,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	-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 이상 1명 추가	1명	-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	-	-
촉탁의사	시설당 1명	-	-

주 1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사무국장과 사무원, 사회재활교사는 정원이 30인 이상인 시설임

2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작업치료사 및 상담평가요원은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3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영양사는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시설임

4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간호사는 중증·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인 경우 1명 추가

5 : 위생원은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인 경우 1명 추가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2) 지역사회 재활시설

- 2015년 12월 말 기준, 수원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총 15개소로 수화통역센터 1개소, 이동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주간보호시설 9개소, 점자도서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의 6.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7%, 생활이동지원센터 3.2%, 수화통역센터 3.3%, 점자도서관 40.0%를 차지함

〈표 3-40〉 경기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2015.12)

(단위 : 개소, %)

구분	지역사회 재활시설						
	계	수화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점자도서관
계	204	30	31	31	103	4	5
수원시	15	1	1	2	9	0	2
가평군	3	1	1	1	0	0	0
고양시	12	1	1	1	7	2	0
과천시	5	1	1	1	2	0	0
광명시	5	1	1	1	1	1	0
광주시	4	1	1	0	2	0	0
구리시	5	1	1	1	2	0	0
군포시	7	1	1	1	4	0	0
김포시	8	1	1	1	5	0	0
남양주시	6	1	1	1	3	0	0
동두천시	4	1	1	1	1	0	0
부천시	13	1	1	1	9	0	1
성남시	12	1	1	2	7	0	1
시흥시	6	1	1	1	3	0	0
안산시	14	1	1	2	9	1	0
안성시	3	1	1	0	1	0	0
안양시	6	1	1	2	2	0	0
양주시	3	1	1	0	1	0	0
양평군	4	1	1	1	1	0	0
여주시	5	1	1	1	2	0	0
연천군	3	1	1	0	1	0	0
오산시	3	1	1	0	1	0	0
용인시	12	1	1	3	7	0	0
의왕시	5	1	1	1	2	0	0
의정부시	7	1	1	1	3	0	1
이천시	5	1	1	1	2	0	0
파주시	6	1	1	1	3	0	0
평택시	11	1	1	2	7	0	0
포천시	4	1	1	0	2	0	0
하남시	2	0	1	0	1	0	0
화성시	6	1	1	1	3	0	0

주 : 2015년 12월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는 236명이며, 9개 시설 평균 정원 충족률은 91.5%로 C시설과 K시설을 제외한 7개 시설에서 평균 90.0% 이상의 정원충족률을 보임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은 데이터 분석이 불안정하여 제외함

〈표 3-41〉 수원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원 및 현원(2016.6)

(단위 : 개소, 명, %)

구분	시설수	시설명	소재지	개소연월	이용자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계					258	236	
장애인복지관	2	A시설	영통구	2006.07.20	-	-	-
		B시설	권선구	2014.11.24	-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9	소계			258	236	91.5
		C시설	권선구	2006.10.23	13	10	76.9
		D시설	팔달구	2008.09.30	20	18	90.0
		E시설	팔달구	2015.12.09	10	9	90.0
		F시설	장안구	2005.07.01	15	15	100.0
		G시설	영통구	2013.09.01	70	70	100.0
		H시설	권선구	1999.08.30	30	29	96.7
		I시설	영통구	2006.07.20	30	28	93.3
		J시설	장안구	1999.12.22	30	27	90.0
		K시설	권선구	2014.11.24	40	30	75.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L시설	권선구	2006.06.30	-	-	-
수화통역센터	1	M시설	권선구	2004.04.01	-	-	-
점자도서관	2	N시설	팔달구	2002.03.04	-	-	-
		O시설	영통구	2006.07.20	-	-	-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은 이용자 데이터는 이용자 통계자료가 부족하며 데이터가 불안정하여 제외함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9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23.4세(SD=6.52)이며, 성별은 9개소 시설 모두 남성이 많음

〈표 3-42〉 수원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6.6)

(단위 : 명, 세)

세부 유형	시설명	현원	연령				성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성	여성
계		236	7.0	47.0	23.4	6.52	157	7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C시설	10	23.0	47.0	32.2	6.83	7	3
	D시설	18	19.0	44.0	24.0	7.32	12	6
	E시설	9	19.0	34.0	23.1	5.25	6	3
	F시설	15	24.0	34.0	29.9	2.94	9	6
	G시설	70	20.0	42.0	24.3	4.81	52	18
	H시설	29	7.0	26.0	18.1	4.76	13	16
	I시설	28	20.0	38.0	26.3	5.54	21	7
	J시설	27	10.0	25.0	16.9	4.37	19	8
	K시설	30	18.0	44.0	23.4	6.15	18	12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기간은 평균 49.8개월(SD=49.22)이며 시설별 편차가 큼

〈표 3-43〉 수원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기간 현황(2016.6)

(단위 : 명, 세)

세부 유형	시설명	현원	이용기간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C시설	10	15.5	93.9	64.0	23.40	49.8(49.22)
	D시설	18	1.3	81.5	21.4	18.56	
	E시설	9	2.7	6.2	4.9	1.45	
	F시설	15	54.8	150.1	120.1	35.74	
	G시설	70	1.0	31.5	26.7	8.55	
	H시설	29	0.6	201.0	104.8	56.79	
	I시설	28	7.1	45.6	31.8	13.40	
	J시설	27	2.4	199.6	100.3	57.61	
	K시설	30	2.4	16.0	12.4	3.82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236명 중 지적장애가 158명(66.9%)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자폐장애 52명, 뇌병변 18명, 청각장애 4명, 지체·언어·시각·기타는 각각 1명으로 나타남

〈표 3-44〉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2016.6)

(단위 : 명)

세부 유형	시설명	장애유형									
		계	지적	자폐	정신	뇌병변	지체	언어	청각	시각	기타
계		236	158	52	0	18	1	1	4	1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C시설	10	8	-	-	-	-	1	1	-	-
	D시설	18	13	5	-	-	-	-	-	-	-
	E시설	9	4	4	-	1	-	-	-	-	-
	F시설	15	10	4	-	0	-	-	1	-	-
	G시설	70	49	17	-	4	-	-	-	-	-
	H시설	29	20	4	-	5	-	-	-	-	-
	I시설	28	18	7	-	1	-	-	-	1	1
	J시설	27	16	3	-	7	-	-	1	-	-
	K시설	30	20	8	-	-	1	-	1	-	-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발달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158명(75.2%), 자폐장애인 52명(24.8%)으로 총 210명 임
-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이 3배 이상 많으며, 성별은 남성이 142명(67.6%), 여성이 68명(32.4%)으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 장애등급은 1급이 170명(81.0%), 2급이 39명(18.6%), 3급이 1명(0.5%)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은 평균 23.6세(SD=6.07), 이용기간은 48.3개월로 나타남

〈표 3-45〉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 이용 현황(2016.6)

(단위 : 명, 세, 개월)

구분	시설명	계	장애 유형		성별		장애등급			연령			이용기간
			지적	자폐	남성	여성	1급	2급	3급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계		210	158	52	142	68	170	39	1	10.0	44.0	23.6(6.07)	48.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C시설	8	8	0	5	3	6	2	0	23	39	30.8(5.0)	68.4
	D시설	18	13	5	12	6	15	2	1	19	44	24.0(7.3)	21.4
	E시설	8	4	4	5	3	6	2	0	19	30	21.8(3.5)	4.8
	F시설	14	10	4	8	6	13	1	0	24	34	29.9(3.0)	118.0
	G시설	66	49	17	49	17	50	16	0	20	42	24.4(4.9)	26.6
	H시설	24	20	4	12	12	21	3	0	12	26	18.7(4.4)	104.9
	I시설	25	18	7	20	5	16	9	0	20	38	26.8(5.7)	32.6
	J시설	19	16	3	13	6	17	2	0	10	25	17.4(4.4)	110.4
	K시설	28	20	8	18	10	26	2	0	18	41	22.7(4.9)	12.2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에서는 〈표 3-46〉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표 3-4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종배치 기준

직종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3명	이용 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 D시설, G시설, H시설, I시설의 경우 사회재활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표 3-47〉 참조)

〈표 3-47〉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현황(2016.6)

(단위 : 명)

세부 유형	시설명	이용 장애인	성별			유형				
			계	남	여	계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기타
계		236	67	22	45	67	7	50	5	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C시설	10	3	1	2	3	1	2	-	-
	D시설	18	4	1	3	4	1	3	-	-
	E시설	9	3	1	2	3	1	2	-	-
	F시설	15	4	2	2	4	1	3	-	-
	G시설	70	22	6	16	22	1	15	3	3
	H시설	29	8	2	6	8	1	6	1	-
	I시설	28	6	2	4	6	-	6	-	-
	J시설	27	9	4	5	9	1	6	1	1
	K시설	30	8	3	5	8	-	7		1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3) 인권시설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 12조(장애인 인권센터)에 의거하여 2013년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16년 12월 21일 의정부에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센터가 개소하여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3-48〉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현황

시설명	운영일	소재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2013.9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130
경기북부장래인인권센터	2016.12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자료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제4절 수원시 장애인복지정책 이용자 현황

-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중 생애단계와 관련이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이용자를 분석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1~3급 중 출산경험이 있는 산모 1인을 기준으로 출산당 1회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함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임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수원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1인당 1,000천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바우처는 데이터 분류값이 정확하지 않아 제외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정책의 경우 지체장애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인 2명, 시각장애인 1명, 장루·요루장애인 1명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의 경우 지적장애인만 이용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4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인 191명, 뇌병변장애인 161명, 지체장애인 146명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의 경우 지체장애인 41명(77.4%), 시각장애인 8명(15.1%), 청각장애인 2명(3.8%)의 순임

〈표 3-49〉 생애단계 관련 장애유형별 수원시 복지정책 대상자(2016.6)

(단위 : 명, %)

정책명	계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정신	신장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4 (100.0)	10 (71.4)	1 (7.1)	0 (0.0)	0 (0.0)	2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6 (100.0)	0 (0.0)	0 (0.0)	0 (0.0)	0 (0.0)	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156 (100.0)	146 (12.6)	125 (10.8)	7 (0.6)	2 (0.2)	489 (42.3)	191 (16.5)	161 (13.9)	14 (1.2)	13 (1.1)	5 (0.4)	0 (0.0)	3 (0.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53 (100.0)	41 (77.4)	8 (15.1)	2 (3.8)	0 (0.0)	0 (0.0)	0 (0.0)	1 (1.9)	0 (0.0)	1 (1.9)	0 (0.0)	0 (0.0)	0 (0.0)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장애유형 중 심장, 간, 안면 장애는 4개 정책 대상자 중 이용자가 없어 〈표 3-49〉에서 제외함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수원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2명이며, 장애등급은 3급, 평균 연령은 32.5세(SD=2.1)로 나타남
- 성년후견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은 6명이며, 지적장애 1급 1명, 2급 3명, 3급 2명으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46.2세, 남성 3명, 여성 3명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은 680명이며, 지적장애 1급 278명, 2급 159명, 3급 52명, 자폐성장애 1급 109명, 2급 79명, 3급 3명, 평균연령은 18.4세, 남성 444명, 여성 236명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은 없음

〈표 3-50〉 수원시 생애단계 복지정책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 현황(2016.6)

(단위 : 명, %)

정책명	계	지적			자폐			연령			성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남	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 (100.0)	-	-	2 (100.0)	-	-	-	31	34	32.5 (2.1)	0 (0.0)	2 (100.0)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6 (100.0)	1 (16.7)	3 (50.0)	2 (33.3)	-	-	-	33	61	46.2 (11.0)	3 (50.0)	3 (50.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80 (100.0)	278 (40.8)	159 (23.3)	52 (7.6)	109 (16.0)	79 (11.6)	3 (0.4)	5	55	18.4 (9.6)	444 (65.3)	236 (34.7)

주 :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제5절 소결

- 첫째,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 장애유형별(지적, 자폐), 행정지역별, 성별, 생애단계별 격차가 심함
 -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6년 증감률은 27.6%로 전국(19.7%)과 경기도(24.6%)보다 빠름. 또한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2010년 2,594명(등록장애인의 6.7%)에서 2016년 6월 3,371명(등록장애인의 8.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자폐성장애는 2010년 311명(12.0%), 2016년 497명(14.7%)으로 인구와 비중이 모두 증가함
 - 장애등급은 전체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는 3급이 많은데 반해 자폐성장애는 1급이 가장 많으며, 발달장애인은 권선구 29.5%, 장안구 27.3%, 영통구 23.3%, 팔달구 19.8%로 행정구별로 격차가 많이 나며, 특히 동일한 행정구 내에서도 격차가 큼
 - 성인기는 권선구가 584명으로 가장 많은데 그 중 서둔동 117명, 입북동 13명으로 동일한 행정구 내에서도 격차가 심 함
 - 생애단계별로는 성인기(1,976명, 58.6%), 학령기(938명, 27.8%), 노년기(380명, 11.3%), 영·유아기 77명(2.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모두 여성(35.1%)에 비해 남성(64.9%)이 많으며, 남성의 경우 지적장애는 80.5%, 자폐장애는 19.5%이고, 여성의 경우 지적장애는 94.1%, 자폐장애는 5.9%로 나타남
- 둘째, 성인기 이후에 서비스 단절현상이 나타남
 - <표 3-51>과 같이 학령기 938명 중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751명으로 80.1%의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기는 26.0%, 노년기 4.2%로 성인기 이후 서비스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3-51〉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세 ~17세)		성인기 (만 18세~49세)		노년기 (만 50세 이후)		
	대상	이용자	대상	이용자	대상	이용자	대상	이용자	대상	이용자	
장애 유형	계	3,371	1,339(39.7)	77	59(76.6)	938	751(80.1)	1,976	513(26.0)	380	16(4.2)
	지적	2,874	1,055(36.7)	51	42(82.4)	688	564(81.7)	1,757	433(24.6)	378	16(4.2)
	자폐	497	273(54.9)	26	17(65.4)	250	176(71.2)	219	80(36.5)	2	0(0.0)
	기타	-	11	-	-	-	11	-	-	-	-
성별	계	3,371	1,339(39.7)	77	59(76.6)	938	751(80.1)	1,976	513(26.0)	380	16(4.2)
	남	2,189	911(41.6)	54	42(77.8)	647	519(80.2)	1,285	337(26.2)	203	13(6.4)
	여	1,182	428(36.2)	23	17(73.9)	291	232(79.7)	691	176(25.5)	177	3(1.7)
장애 등급	계	3,371	1,339(39.7)	77	59(76.6)	938	751(80.1)	1,976	513(26.0)	380	16(4.2)
	1급	910	501(55.1)	13	10(76.9)	270	231(85.6)	571	256(44.8)	56	4(7.1)
	2급	1,192	524(44.0)	43	29(67.4)	373	299(80.2)	678	191(28.2)	98	5(5.1)
	3급	1,269	314(24.7)	21	20(95.2)	295	221(74.9)	727	66(9.1)	226	7(3.1)

주 1 : 2016년 6월 말 기준

2 : 장애 유형의 기타는 중복장애 및 발달장애라고 표기되어 있는 항목들임

3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자는 제외된 수치임

4 : 수원시 내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을 생애단계별로 계산한 수치임

5 : 비중은 대상자 대비 이용자의 비율임

6 : 기존 생애단계별 이용자들을 연령별로 재구분한 수치로 앞의 이용자와 상이함
(예/어린이집의 경우 만 5세가 넘었지만 유예인 경우 등)

자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수원교육지원청 내부자료

□ 셋째,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시설이 부족함

- 수원시의 전체 어린이집 대비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비율은 1.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이며 경기도 평균(2.3%)보다 낮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는 경기도에 총 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원에는 미설치되어 있음

□ 넷째, 서비스 이용자 중 장애유형별, 성별 격차가 나타남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경우는 지적장애가 87.4%, 자폐장애가 12.6%로 지적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성별은 남성 69.1%, 여성 30.9%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음
-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지적장애가 93.4%, 자폐장애가 6.6%로 지적장애가 월등히 많으며, 성별은 남성이 61.0%, 여성이 39.0%로 남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가 75.2%, 자폐장애가 24.8%로 지적장애인이 자폐장애인의 3배이고, 성별은 남성이 67.6%, 여성이 32.4%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직원현황에 비해 인력이 부족함
 -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대비 사무국장과 영양사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시설당 1명씩 존재해야 하는 사무원이 없는 경우도 40%나 됨
 - 근로사업장에 필요한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가 아예 없는 시설도 있었고, 나머지 시설들도 1명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촉탁의가 있는 시설이 전무하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이 있는 시설이 전무함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사회재활교사가 부족한 시설도 4곳이나 됨

제4장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제1절 양적연구 개요

- 본 설문조사는 수원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이며, 주 돌봄자(발달장애인의 생활전반을 지지하며 돌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참여함
- 1차 조사대상은 수원시 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로,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의 협조를 받아 설문에 동의한 응답자의 가정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1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함
 -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소외되어 재가(在家)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에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의 협조를 받아 2016년 6월 말 수원시 등록 발달장애인 중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를 추출한 후 그 중 설문에 동의한 자를 1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발달장애인을 생애단계(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할당하였으나, 만 50세 이상의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 돌봄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함
 - 기존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조사에서는 노년기를 생애단계에 포함하여도 사례를 찾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조사에서는 제외하고 있음(박주홍 외, 2012 ; 양희택 외, 2012)
- 2차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시설의 협조를 받아 설문지를 직접 배포·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전체설문 응답자의 약 5% 수준)

〈표 4-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		
표본크기	생애단계	모집단	표본집단
	영·유아기(0~5세)	77	23(7.0)
	학령기	938	131(39.8)
	성인기	1,976	150(45.6)
	노년기	380	25(7.6)
	계	3,371	329(100.0)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미이용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 조사(가정방문) ▪ 복지시설 이용 :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관 내 협조를 통한 설문지 배포 및 수거 		
조사기간	2016년 11월 1일 ~ 11월 30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 +4.4%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제2절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는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기(만 5세 이하)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 77명이며, 2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함

2) 조사내용

- 본 조사에 사용한 영·유아용 설문지의 조사영역은 일반적 특성,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치료)서비스, 보육 및 교육, 돌봄 및 가족, 결혼 및 출산, 인권, 장래계획, 보호자의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문문항은 영·유아용 별도질문과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의 공통질문으로 구성됨

〈표 4-2〉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설문문항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기타
피보호자의 특성 (발달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장애 여부 및 유형 ▪ 보호자와의 현재 동거여부 	공통
조기진단 및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장애의심 및 최초 장애진단 시기, 의심시기와 진단시기의 차이 ▪ 장애진단 시 어려움 및 주 도움처 ▪ 재활(치료) 서비스 및 조기개입 시기, 필요 지원 	학령기와 공통
재활(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활(치료) 서비스 여부, 치료 종류, 1주 횟수, 자부담 비용, 치료 기관, 재활치료 미이용 이유, 추가 희망 서비스 	공통
보육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어린이집(혹은 유치원) 이용 여부, 형태, 주된 어려움, 어린이집(혹은 유치원) 알게된 경로, 미이용 이유, 희망 학교유형 ▪ 어린이집(혹은 유치원)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별도
돌봄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돌봄자, 연령, 하루 평균 돌봄 시간, 건강상태 ▪ 가족의 어려움, 경제적·신체적·심리사회적 부담 정도, 필요 지원 	공통
결혼 및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 원하지 않는 이유 	공통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여부 및 분야,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공통
장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노후 준비 여부 및 경제적 준비 형태 ▪ 주 돌봄자 사후 거주 형태, 희망 시설 형태 ▪ 노후대비 관련 필요한 지원 	공통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장애인과의 관계, 가구의 월평균 소득, ▪ 수급 형태, 주 경제활동자, 거주 행정구 및 거주기간 	공통

2.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인 영·유아의 주 돌봄자 2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영·유아의 성별은 남아 16명(69.6%), 여아 7명(30.4%)이며, 평균연령은 4.26세(SD=.964)임
- 세부 장애유형은 지적 14명(60.9%), 자폐 9명(39.1%)이며, 장애등급은 1급과 2급이 동일하게 각각 9명(39.1%)으로 나타났으며, 7명(30.4%)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음
- 모든 응답자는 현재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발달장애 영·유아의 특성

(단위 : 명, %, 세)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16(69.6)	-
	여성	7(30.4)	-
	계	23(100.0)	-
연령	만2세 이하	2(8.7)	4.26(.964)
	만3세	2(8.7)	
	만4세	7(30.4)	
	만5세	12(52.2)	
	계	23(100.0)	
장애유형	지적	14(60.9)	-
	자폐	9(39.1)	-
	계	23(100.0)	-
장애등급	1급	9(39.1)	-
	2급	9(39.1)	-
	3급	5(21.7)	-
	계	23(100.0)	-
중복장애 여부	예	7(30.4)	-
	아니오	16(69.6)	-
	계	23(100.0)	-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예	23(100.0)	-
	아니오	0(0.0)	-
	계	23(100.0)	-

- 조사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21명(91.3%)이며 평균연령은 37.6세(SD=4.29)임
- 조사응답자는 모두 발달장애인의 부모이며,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는 영통구 12명(52.2%), 권선구 6명(26.1%), 장안구 3명(13.0%), 팔달구 2명(8.7%) 의 순 임

〈표 4-4〉 발달장애 영·유아 설문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 세)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2(8.7)	-
	여성	21(91.3)	-
	계	23(100.0)	-
연령대	20대	1(4.3)	37.6(4.29)
	30대	14(60.9)	
	40대	8(34.8)	
	계	23(100.0)	
피보호자와의 관계	부모	23(100.0)	-
	계	23(100.0)	-
거주지역	장안구	3(13.0)	-
	권선구	6(26.1)	-
	팔달구	2(8.7)	-
	영통구	12(52.2)	-
	계	23(100.0)	-

2) 조기진단 및 개입부문

- 자녀의 장애를 최초로 의심한 시기는 평균 23.8개월(SD=16.76)이며, 만 0세 미만과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이 동일하게 6명(26.1%)으로 가장 많음

〈표 4-5〉 최초 장애의심 시기_영·유아기

(단위 : 명, %, 개월)

구분	사례수(비율)	평균(표준편차)
만 0세 미만	6(26.1)	23.8(16.76)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	5(21.7)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	6(26.1)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	5(21.7)	
만 4세 이상~만 5세 미만	0(0.0)	
만 5세 이상	1(4.3)	
계	23(100.0)	

- 최초로 장애를 진단받은 시기는 평균 36.9개월(SD=20.14)이며,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과 만 4세 이상~만 5세 미만이 동일하게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6〉 최초 장애진단 시기_영·유아기

(단위 : 명, %, 개월)

구분	사례수(비율)	평균(표준편차)
만 0세 미만	3(13.0)	36.9(20.14)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	2(8.7)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	6(26.1)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	4(17.4)	
만 4세 이상~만 5세 미만	6(26.1)	
만 5세 이상	2(8.7)	
계	23(100.0)	

- 자녀의 장애의심 시기와 진단시기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발달상태가 변하여 확진을 위한 판단에 시일이 걸려서 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사람들이 성장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해서(26.1%), 병원오진 및 병원결과가 오래 걸려서(2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7〉 장애의심 및 진단시기의 차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비율)
차이 없음	3(13.0)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2(8.7)
주변사람들이 성장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해서	6(26.1)
발달상태가 변하여 확진을 위한 판단에 시일이 걸려서	7(30.4)
병원오진 및 병원결과가 오래 걸려서	5(21.7)
기타	5(21.7)
계	2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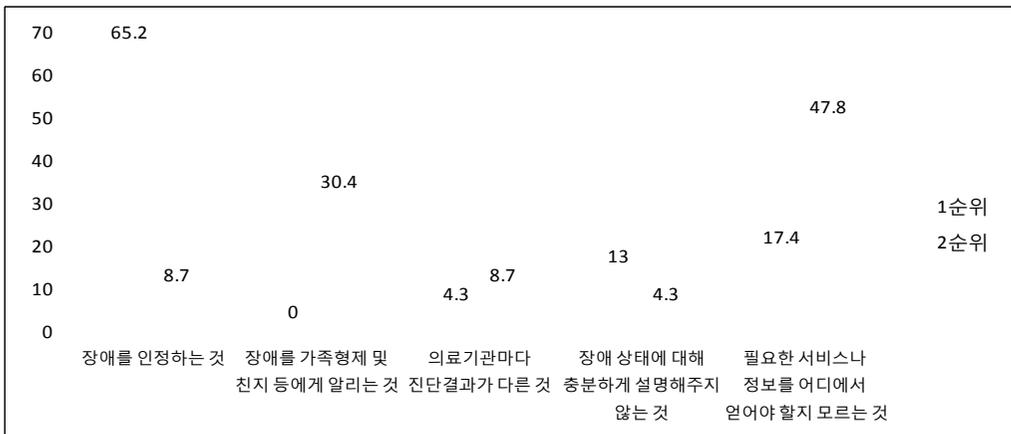
- 장애진단 이후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65.2%로 압도적이었으며, 2순위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8〉 장애진단 이후 주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장애를 인정하는 것	15(65.2)	2(8.7)
장애를 가족(형제 및 친지 등)에게 알리는 것	0(0.0)	7(30.4)
의료기관마다 진단결과가 다른 것	1(4.3)	2(8.7)
장애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 것	3(13.0)	1(4.3)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모르는 것	4(17.4)	11(47.8)
계	23(100.0)	23(100.0)

(단위 : %)



〈그림 4-1〉 장애진단 이후의 주된 어려움_영·유아기

□ 장애진단 이후 도움을 준 주체로는 장애아동 부모들과의 교류 47.8%, 병원 혹은 담당의사 26.1%, 복지관 또는 치료실 17.4%, 없음 8.7%로 나타남

〈표 4-9〉 장애진단 이후 도움을 준 기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비율)
없음	2(8.7)
장애아동 부모들과의 교류	11(47.8)
복지관 또는 치료실	4(17.4)
병원 혹은 담당의사	6(26.1)
계	23(100.0)

3) 재활(치료)서비스 부문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23명의 응답자들은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 중 언어치료가 19명(82.6%)으로 가장 많고 미술치료가 1명(4.3%)으로 가장 적음

〈표 4-10〉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
물리치료	5(21.7)	18(78.3)	23(100.0)
작업치료	8(34.8)	15(65.2)	23(100.0)
언어치료	19(82.6)	4(17.4)	23(100.0)
인지·행동치료	12(52.2)	11(47.8)	23(100.0)
놀이치료	7(30.4)	16(69.6)	23(100.0)
미술치료	1(4.3)	22(95.7)	23(100.0)
음악치료	6(26.1)	17(73.9)	23(100.0)
심리운동치료	1(4.3)	22(95.7)	23(100.0)
감각통합치료	11(47.8)	12(52.2)	23(100.0)
운동재활	5(21.7)	18(78.3)	23(100.0)

- 응답자들은 1주일동안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까지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1회 평균 자부담 비용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90,000원으로 나타남

〈표 4-11〉 재활(치료) 서비스의 1주일 이용 횟수 및 자부담 비용

(단위 : 명, 회, 원)

구분	사례 수	1주일 이용 횟수			자부담 비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물리치료	5	1	5	2.20	15,000	90,000	38,480
작업치료	8	1	4	1.50	10,000	65,000	25,351
언어치료	19	1	4	2.16	5,000	77,800	37,147
인지·행동치료	12	1	6	2.00	10,000	80,000	37,542
놀이치료	7	1	1	1.00	10,000	70,000	32,857
미술치료	1	1	1	1.00	55,000	55,000	55,000
음악치료	6	1	2	1.83	10,000	12,000	11,200
심리운동치료	1	1	1	1.00	45,000	45,000	45,000
감각통합치료	11	1	4	1.82	7,000	50,000	24,125
운동재활	5	1	1	1.00	5,000	65,000	21,980

□ 재활(치료)별로 살펴보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운동재활치료는 병원,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는 주로 사설치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기관

(단위 : 명, %)

구분	이용 기관				
	계	장애인종합복지관	병원	사설치료센터	기타
물리치료	5(100.0)	2(40.0)	3(60.0)	-	
작업치료	8(100.0)	2(25.0)	5(62.5)	1(12.5)	-
언어치료	19(100.0)	9(47.4)		10(52.6)	
인지·행동치료	12(100.0)	7(58.3)	-	4(33.3)	1(8.3)
놀이치료	7(100.0)	3(42.9)		3(42.9)	1(14.3)
미술치료	1(100.0)	-	-	1(100.0)	-
음악치료	6(100.0)	5(83.3)	-	1(16.7)	-
심리운동치료	1(100.0)	-	-	1(100.0)	-
감각통합치료	11(100.0)	5(45.5)	-	7(54.5)	-
운동재활	5(100.0)	1(20.0)	3(60.0)	1(20.0)	-

4) 보육 및 교육

□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7.0%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25.0%, 유치원은 특수학급이 30%로 가장 많음

〈표 4-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비율)
이용 여부	아니오	3(13.0)
	예	20(87.0)
	계	23(100.0)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형태	일반 어린이집	2(10.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10.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5(25.0)
	유치원 일반학급 내 일반학생	1(5.0)
	유치원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 대상자	1(5.0)
	유치원 특수학급	6(30.0)
	특수학교 유치부	2(10.0)
	특수교육지원센터	1(5.0)
	계	20(100.0)

- 현재 재원 중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30.4%), 다른 장애아동 부모의 권유 및 추천(26.1%), 공공기관(주민센터 및 구청 등)의 추천(17.4%), 가족 및 이웃의 추천(13.0%)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4〉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알게 된 경로_영·유아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비율)
가족 및 이웃의 추천	3(13.0)
다른 장애아동 부모의 권유, 추천	6(26.1)
공공기관(주민센터 및 구청 등)	4(17.4)
인터넷 검색	7(30.4)
계	20(100.0)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 적합한 어린이집(혹은 유치원)이 없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생님의 이해부족과 편견(15.0%), 시설 내 장애관련 편의시설 부족·과잉행동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수업내용의 이해는 동일하게 10.0% 순으로 나타남

〈표 4-15〉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면서 겪은 어려움_영·유아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비율)
시설 내 장애관련 편의시설 부족	2(10.0)
친구들의 이해부족과 편견	1(5.0)
선생님의 이해부족과 편견	3(15.0)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에 적합한 어린이집(혹은 유치원)이 없음	9(45.0)
과잉행동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2(10.0)
수업내용의 이해	2(10.0)
기타	1(5.0)
계	20(100.0)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도래하였을 때 보내고 싶은 학교 유형으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30.4%), 특수학교(26.1%), 일반학교 일반학급(특수교육 대상자 선정)(17.4%), 일반학교 일반학급(특수교육 대상자 미선정)(13.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예(13.0%)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6〉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보내고 싶은 학교 유형_영·유아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비율)
특수학교	6(26.1)
일반학교 특수학급	7(30.4)
일반학교 일반학급(특수교육 대상자 미선정)	3(13.0)
일반학교 일반학급(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4(17.4)
유예(어린이집 및 유치원)	3(13.0)
계	23(100.0)

- 어린이집(혹은 유치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26.1%, 어린이집(혹은 유치원) 생활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17.4%, 일반교사 및 교직원의 장애인식 개선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는 1순위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일하게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와 어린이집(혹은 유치원) 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가 동일하게 17.4%로 나타남

〈표 4-17〉 어린이집(혹은 유치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_영·유아기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어린이집(유치원) 내 편의시설 확대	1(4.3)	1(4.3)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6(26.1)	4(17.4)
일반교사 및 교직원의 장애인식 개선	3(13.0)	1(4.3)
비장애아동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	0(0.0)	2(8.7)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8(34.8)	8(34.8)
등·하교 지원 도우미 파견	1(4.3)	2(8.7)
어린이집(유치원)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4(17.4)	4(17.4)
기타	0(0.0)	1(4.3)
계	23(100.0)	23(100.0)

제3절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는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이며, 13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함

2) 조사내용

- 본 조사에 사용한 학령기용 설문지의 조사영역과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치료)서비스, 신체적 건강, 돌봄 및 가족, 교육, 문화 및 여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문문항은 학령기의 별도질문과 공통질문(영·유아기, 성인기, 노년기)으로 구성됨

〈표 4-18〉 학령기 대상 설문문항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기타
피보호자의 특성 (발달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장애 여부 및 유형 ▪ 보호자와의 현재 동거여부 	공통
조기진단 및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장애의심 및 최초 장애진단 시기, 의심시기와 진단시기의 차이 ▪ 장애진단 시 어려움 및 주 도움처 ▪ 재활(치료) 서비스 및 조기개입 시기, 필요 지원 	영유아기와 공통
재활(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활(치료) 서비스 여부, 치료 종류, 1주 횟수, 자부담 비용, 치료 기관, 재활치료 미이용 이유, 추가 희망 서비스 	
신체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 상태, 정기적 운동여부 및 종목, 장소, 정기적 운동 미이용 이유, 필요 서비스 ▪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건강문제, 심각성 정도, 치료 여부, 이용 기관,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 	성인기와 공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교 재학 여부, 학교 형태, 학교생활의 주된 어려움, 학교 알게된 경우, 학교 선택 이유, 학교 미이용 이유 ▪ 학교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별도
문화 및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여가활동 및 향후 희망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어려움 ▪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돌봄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돌봄자, 연령, 하루 평균 돌봄 시간, 건강상태 ▪ 가족의 어려움, 경제적·신체적·심리사회적 부담 정도, 필요 지원 	
결혼 및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 원하지 않는 이유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여부 및 분야,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공통
장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노후 준비 여부 및 경제적 준비 형태 ▪ 주 돌봄자 사후 거주 형태, 희망 시설 형태, 노후대비 필요 지원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장애인과의 관계, 가구의 월평균 소득, ▪ 수급 형태, 주 경제활동자, 거주 행정구 및 거주기간 	

2.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학령기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90명(68.7%), 여성 41명(31.3%)으로 나타남
- 연령은 평균 11.98세(SD=3.86)이며, 만 6세 이상~만 11세 이하가 60명(45.8%)이며 만 12세 이상~만 17세 이하는 71명(54.2%)으로 나타남
- 세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87명(66.4%), 자폐장애 44명(33.6%)이며, 장애등급은 2급이 41.2%로 가장 많으며, 중복장애는 13.7%로 나타남
- 응답자의 98.5%(129명)는 주 돌봄자와 현재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9〉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특성

(단위 : 명, %, 세)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90(68.7)	-
	여성	41(31.3)	-
	계	131(100.0)	-
연령	만6세~11세	60(45.8)	11.98(3.86)
	12세~19세	71(54.2)	
	계	131(100.0)	
장애유형	지적	87(66.4)	-
	자폐	44(33.6)	-
	계	131(100.0)	-
장애등급	1급	38(29.0)	-
	2급	54(41.2)	-
	3급	39(29.8)	-
	계	131(100.0)	-
중복장애 여부	예	18(13.7)	-
	아니오	113(86.3)	-
	계	131(100.0)	-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예	129(98.5)	-
	아니오	2(1.5)	-
	계	131(100.0)	-

- 조사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23명(93.9%)으로 압도적이며, 평균 연령은 43.4세(SD=5.74)임
- 조사응답자의 96.2%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이며, 거주 지역은 영통구 30.5%, 권선구 27.5%, 장안구 22.9%, 팔달구 19.1% 순으로 나타남

〈표 4-20〉 학령기 발달장애인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 세)

구분		사례 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8(6.1)	-
	여성	123(93.9)	-
	계	131(100.0)	-
연령	30대	28(21.4)	43.4(5.74)
	40대	86(65.6)	
	50대	14(10.7)	
	60대	3(2.3)	
	계	131(100.0)	
피보호자와의 관계	부모	126(96.2)	-
	조부모	4(3.1)	-
	친인척	1(0.8)	-
	계	131(100.0)	-
거주지역	장안구	30(22.9)	-
	권선구	36(27.5)	-
	팔달구	25(19.1)	-
	영통구	34(30.5)	-
	계	131(100.0)	-

2) 조기진단 및 개입부문

- 장애를 최초로 의심한 시기는 평균 264.2개월이며, 영유아와 동일하게 0세 미만이 2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과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이 동일하게 17.6%로 나타남

〈표 4-21〉 최초 장애 의심시기_학령기

(단위 : 명, %, 개월)

구분	최초 장애 의심 시기	평균(표준편차)
만 0세 미만	28(21.4)	264.2(1496.4)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	23(17.6)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	23(17.6)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	19(14.5)	
만 4세 이상~만 5세 미만	20(15.3)	
만 5세 이상	18(13.7)	
계	131(100.0)	

- 최초 장애진단 시기는 평균 365.8개월이며, 만 5세 이상(46.6%), 만 4세 이상~만 5세 미만(14.5%),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13.0%),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2> 최초 장애진단 시기_학령기

(단위 : 명, %, 개월)

구분	최초 장애진단 시기	평균(표준편차)
만 0세 미만	11(8.4)	365.8(1716.68)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	10(7.6)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	17(13.0)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	13(9.9)	
만 4세 이상~만 5세 미만	19(14.5)	
만 5세 이상	61(46.6)	
계	13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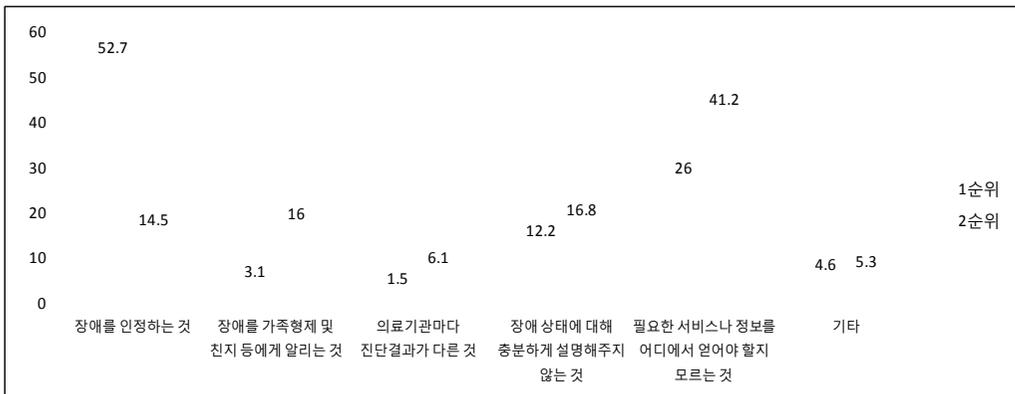
- 장애 진단 시 어려움 1순위는 영·유아와 동일하게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모르는 것 26.0%, 장애상태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 12.2% 등의 순임
- 2순위도 영·유아와 동일하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54명(41.2%), 장애상태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16.8%), 장애를 가족(형제 및 친지 등)에게 알리는 것(16.8%)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3> 장애진단 이후의 주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장애를 인정하는 것	69(52.7)	19(14.5)
장애를 가족(형제 및 친지 등)에게 알리는 것	4(3.1)	21(16.0)
의료기관마다 진단결과가 다른 것	2(1.5)	8(6.1)
장애 상태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	16(12.2)	22(16.8)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모르는 것	34(26.0)	54(41.2)
기타	6(4.6)	7(5.3)
계	131(100.0)	131(100.0)

(단위 : %)



<그림 4-2> 장애진단 이후의 주된 어려움_학령기

- 장애진단 이후 도움을 준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부모들과의 교류와 복지관 또는 치료실이 30명(22.9%)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 혹은 담당의사 28명(21.4%), 없음 19명(14.5%), 기타 11명(8.4%) 등의 순임

〈표 4-24〉 장애진단 이후 도움을 준 기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19(14.5)
장애아동 부모들과의 교류	30(22.9)
인터넷 카페	9(6.9)
복지관 또는 치료실	30(22.9)
병원 혹은 담당의사	28(21.4)
종교기관	4(3.1)
기타	11(8.4)
계	131(100.0)

3) 재활(치료)서비스 부문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영·유아 동일하게 언어치료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지·행동치료 42.0%, 미술치료 2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5〉 이용하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
물리치료	6(4.6)	125(95.4)	131(100.0)
작업치료	17(13.0)	114(87.0)	131(100.0)
언어치료	74(56.5)	57(43.5)	131(100.0)
인지·행동치료	55(42.0)	76(58.0)	131(100.0)
놀이치료	18(13.7)	113(86.3)	131(100.0)
미술치료	36(27.5)	95(72.5)	131(100.0)
음악치료	23(17.6)	108(82.4)	131(100.0)
심리운동치료	12(9.2)	119(90.8)	131(100.0)
감각통합치료	30(22.9)	101(77.1)	131(100.0)
운동재활	35(26.7)	96(73.3)	131(100.0)

- 1주일 동안 이용하는 재활(치료)서비스는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로 나타났으며, 자부담 비용은 최소 0원부터 16만원까지 나타남

〈표 4-26〉 재활(치료) 서비스의 1주일 이용 횟수 및 자부담 비용

(단위 : 명, 회, 원)

구분	사례 수	1주일 이용 횟수			자부담 비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물리치료	6	1	2	1.67	0	40,000	15,000
작업치료	17	1	2	1.24	0	60,000	24,024
언어치료	74	1	5	1.74	0	160,000	35,665
인지·행동치료	55	1	4	1.49	0	130,000	39,164
놀이치료	18	1	2	1.44	0	50,000	26,944
미술치료	36	1	5	1.33	0	90,000	20,625
음악치료	23	1	2	1.48	0	50,000	19,283
심리운동치료	12	1	3	2.08	0	75,000	33,250
감각통합치료	30	1	4	1.90	0	64,000	30,817
운동재활	35	1	5	2.00	0	80,000	29,436

-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기관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가장 많았으며, 언어치료,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 운동재활치료는 사설치료센터가 가장 많음
- 영·유아와 비교하였을 때 사설치료센터 이용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27〉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기관

(단위 : 명, %)

구분	이용 기관				
	계	장애인종합복지관	병원	사설치료센터	기타
물리치료	6(100.0)	4(66.7)	1(16.7)	-	1(16.7)
작업치료	17(100.0)	8(47.1)	3(17.6)	5(29.4)	1(5.9)
언어치료	74(100.0)	14(18.9)	2(2.7)	57(77.0)	1(1.4)
인지·행동치료	55(100.0)	10(18.2)	-	45(81.8)	-
놀이치료	18(100.0)	7(38.9)	-	10(55.6)	1(5.6)
미술치료	36(100.0)	16(44.4)	-	17(47.2)	3(8.4)
음악치료	23(100.0)	10(43.5)	-	10(43.5)	3(13.0)
심리운동치료	12(100.0)	1(8.3)	-	10(83.3)	1(8.4)
감각통합치료	30(100.0)	6(20.0)	-	22(73.3)	2(6.7)
운동재활	35(100.0)	10(28.6)	-	25(71.4)	-

4) 교육 부문

- 응답자 131명 중 89.3%(117명)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응답자의 학교형태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62명(53.0%)으로 가장 많음

〈표 4-28〉 취학 여부 및 학교 형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취학 여부	아니오	14(10.7)
	예	117(89.3)
	계	131(100.0)
학교 형태	일반학교 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 미선정)	16(13.7)
	일반학교 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 선정)	62(53.0)
	특수학교	39(33.3)
	계	117(100.0)

- 현재 재원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가까워서(48.7%), 갈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어서(21.4%), 주변의 추천(17.9%), 시설이 좋아서(6.0%)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9〉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변의 추천으로	21(17.9)
집에서 가까워서	57(48.7)
시설이 좋아서	7(6.0)
갈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어서	25(21.4)
기타	7(6.0)
계	11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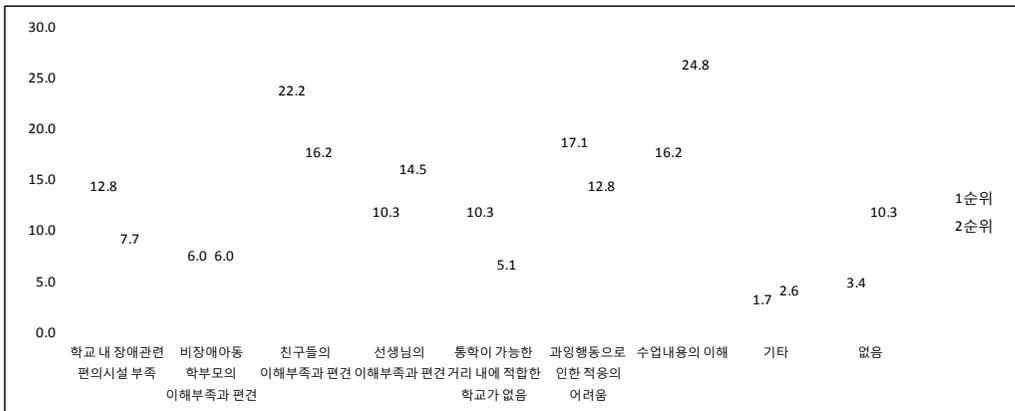
-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주된 어려움 1순위는 친구들의 이해부족과 편견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잉행동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17.1%, 수업내용의 이해 16.2%, 학교 내 장애관련 편의시설 부족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는 수업내용의 이해(24.8%), 친구들의 이해부족과 편견(16.2%), 선생님의 이해부족과 편견(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0〉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학교 내 장애관련 편의시설 부족	15(12.8)	9(7.7)
비장애아동 학부모의 이해부족과 편견	7(6.0)	7(6.0)
친구들의 이해부족과 편견	26(22.2)	19(16.2)
선생님의 이해부족과 편견	12(10.3)	17(14.5)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에 적합한 학교가 없음	12(10.3)	6(5.1)
과잉행동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20(17.1)	15(12.8)
수업내용의 이해	19(16.2)	29(24.8)
기타	2(1.7)	3(2.6)
없음	4(3.4)	12(10.3)
계	117(100.0)	117(100.0)

(단위 : %)



〈그림 4-3〉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주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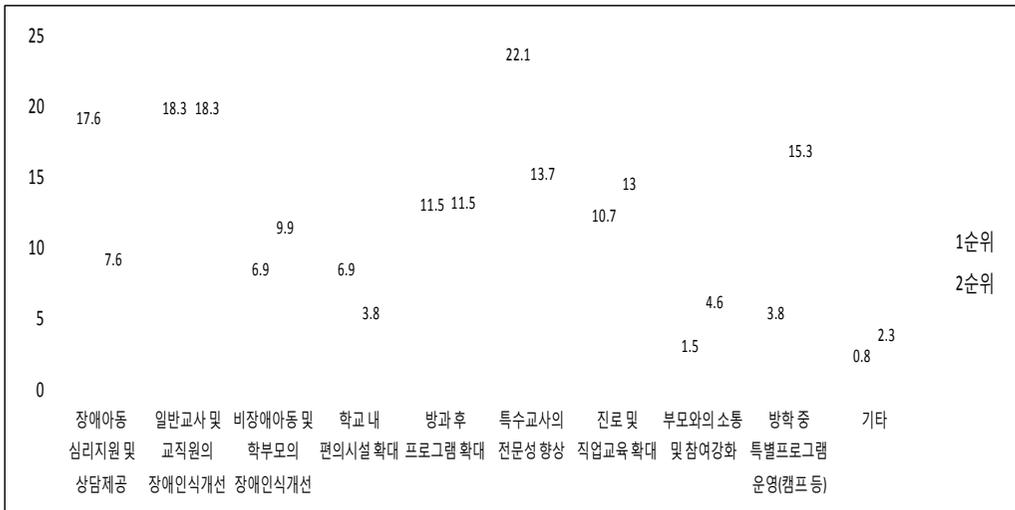
-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교사 및 교직원의 장애인식 개선 18.3%, 장애아동 심리 지원 및 상담제공 17.6%,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는 일반교사 및 교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이 1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캠프 등) 15.3%,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 13.7%, 진로 및 직업교육 확대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 조퇴가 어려워 치료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31〉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장애아동 심리지원 및 상담제공	23(17.6)	10(7.6)
일반교사 및 교직원의 장애인식개선	24(18.3)	24(18.3)
비장애아동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	9(6.9)	13(9.9)
학교 내 편의시설 확대	9(6.9)	5(3.8)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15(11.5)	15(11.5)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	29(22.1)	18(13.7)
진로 및 직업교육 확대	14(10.7)	17(13.0)
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강화	2(1.5)	6(4.6)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캠프 등)	5(3.8)	20(15.3)
기타	1(0.8)	3(2.3)
계	131(100.0)	131(100.0)

(단위 : %)



〈그림 4-4〉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제4절 성인기 및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자는 2016년 6월 말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이며, 성인기 150부, 노년기 2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함

2) 조사내용

- 본 조사에 사용한 성인기와 노년기의 조사영역과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건강, 재활(치료) 서비스, 교육, 직업 및 소득, 문화 및 여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문문항은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의 공통질문과 별도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32〉 성인기 및 노년기 설문문항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기타
피보호자의 특성 (발달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장애 여부 및 유형 ▪ 보호자와의 현재 동거여부 	공통
신체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상태, 지난 1년동안 정기적 운동 유무 및 종목, 장소 ▪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건강유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건강문제, 심각성, 치료유무, 치료기관 등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공통질문
재활(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활(치료) 서비스 여부, 치료 종류, 1주 횟수, 자부담 비용, 치료 기관, 재활치료 미이용 이유, 추가 희망 서비스 	공통질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 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어려움 및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유무, 이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이용의향 	성인기, 노년기 공통질문
지역사회 재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사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유무, 이용기간, 애로사항,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지원 	
직업 및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사이 직업 유무, 고용형태, 직종, 근무기간, 1달 평균 급여, 취업 경로, 애로사항, 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공통질문
문화 및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주된 여가활동,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의 어려움, 필요한 지원 	
돌봄 및 가족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도움정도, 주 돌봄자의 연령, 하루 평균 돌봄시간, 건강상태 ▪ 주 돌봄자의 어려움, 경제적·신체적·심리사회적 부담 정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공통
결혼 및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 원하지 않는 이유, 결혼 유무, 결혼연령, 자녀 유무, 출산 희망 유무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여부 및 분야,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장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노후 준비 여부 및 경제적 준비 형태 ▪ 주 돌봄자 사후 거주 형태, 희망 시설 형태, 노후대비 지원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장애인과의 관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급 형태, 주 경제활동자, 거주 행정구 및 거주기간 	

2.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은 성인기는 남성이 62.7%로 남성이 월등히 높고, 노년기는 남성이 48.0%, 여성이 52.0%로 비슷한 성비로 나타남
- 평균연령은 성인기는 27.2세(SD=6.86), 노년기는 56.7세(SD=8.00)로 나타남
- 장애유형은 성인기는 지적장애 81.3%, 자폐성장애 18.7%로 나타났고, 노년기는 지적장애가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은 성인기의 경우 2급(43.3%), 1급(32.7%), 3급(24.0%) 순으로 나타났고, 노년기의 경우 3급(56.0%), 2급(24.0%), 1급(20.0%) 순임
- 중복장애 여부는 성인기의 20.0%가 노년기의 32.0%가 그렇다고 대답함
- 보호자와의 동거여부는 성인기의 96.7%와 노년기의 96.0%가 각각 그렇다고 대답하여 연령대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대부분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3〉 성인기·노년기 발달장애인의 특성

(단위 : 명, %)

구분		성인기	노년기
성별	남성	94(62.7)	12(48.0)
	여성	56(37.3)	13(52.0)
	계	150(100.0)	25(100.0)
연령	평균(표준편차)	27.2(6.86)	56.7(8.00)
장애유형	지적	122(81.3)	25(100.0)
	자폐	28(18.7)	-
	계	150(100.0)	25(100.0)
장애등급	1급	49(32.7)	5(20.0)
	2급	65(43.3)	6(24.0)
	3급	36(24.0)	14(56.0)
	계	150(100.0)	25(100.0)
중복장애 여부	예	30(20.0)	8(32.0)
	아니오	120(80.0)	17(68.0)
	계	150(100.0)	25(100.0)
현재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예	145(96.7)	24(96.0)
	아니오	5(3.3)	1(4.0)
	계	150(100.0)	25(100.0)

- 응답자의 성별은 성인기는 남성이 22.7%, 여성이 77.3%이고, 노년기는 남성이 52.0%, 여성이 48.0%로 각각 나타남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성인기 53.3세(SD=9.46), 노년기는 58.6세(SD=10.25) 임
- 피보호자와의 관계는 성인기의 경우 부모가 86.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형제자매/기타(5.3%), 친인척(2.7%)순으로 나타났음. 노년기의 경우는 형제자매가 60.0%로 가장 많고 친인척/기타(16.0%), 부모(8.0%)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은 성인기는 권선구(28.0%), 장안구(26.7%), 영통구(23.3%), 팔달구(22.0%)순으로 나타났고, 노년기는 장안구(36.0%), 권선구(28.0%), 팔달구(24.0), 영통구(12.0%) 순으로 나타남

〈표 4-34〉 성인기·노년기 대상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

구분		성인기	노년기
성별	남성	34(22.7)	13(52.0)
	여성	116(77.3)	12(48.0)
	계	150(100.0)	25(100.0)
연령	평균(표준편차)	53.3(9.46)	58.6(10.25)
피보호자와의 관계	부모	130(86.7)	2(8.0)
	형제자매	8(5.3)	15(60.0)
	친인척	4(2.7)	4(16.0)
	기타	8(5.3)	4(16.0)
	계	150(100.0)	25(100.0)
거주 지역	장안구	40(26.7)	9(36.0)
	권선구	42(28.0)	7(28.0)
	팔달구	33(22.0)	6(24.0)
	영통구	35(23.3)	3(12.0)
	계	150(100.0)	25(100.0)

2) 교육 부문

-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성인기의 23.3%와 노년기의 12.0%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은 집단이 이용률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5〉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 명, %)

구분	성인기	노년기
예	35(23.3)	3(12.0)
아니오	115(76.7)	22(88.0)
계	150(100.0)	25(100.0)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인기의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몰라서가 34.8%로 가장 높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3.0%,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13.0%, 비용이 부담되어서가 9.6%. 과잉행동이 심해서가 5.2%, 기타가 4.3% 순으로 나타남
- 노년기의 경우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50.0%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몰라서(36.4%),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9.1%), 과잉행동이 심해서(4.5%) 순으로 나타남

〈표 4-36〉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성인기	노년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몰라서	40(34.8)	8(36.4)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5(13.0)	2(9.1)
비용이 부담되서	11(9.6)	-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	38(33.0)	11(50.0)
과잉행동이 심해서	6(5.2)	1(4.5)
기타	5(4.3)	-
계	115(100.0)	22(100.0)

- 평생프로그램 향후 이용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성인기는 60.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노년기의 12.0%만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7〉 평생프로그램 향후 이용의사

(단위 : 명, %)

구분	성인기	노년기
향후 이용의사	예	3(12.0)
	아니오	22(88.0)
	계	25(100.0)

-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성인기의 경우는 어떤 주제든 상관없다는 응답이(39.3%), 일상생활 프로그램(16.0%), 사회적응 프로그램(15.3%), 직업준비 프로그램(14.0%), 건강관리 프로그램(9.3%), 문화·예술 프로그램(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도 어떤 주제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응답(66.7%), 문화·예술 프로그램(33.3%) 순으로 나타남

〈표 4-38〉 평생프로그램 향후 희망 프로그램

(단위 : 명, %)

구분		성인기	노년기
희망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9(6.0)	1(33.3)
	일상생활 프로그램	24(16.0)	-
	직업준비 프로그램	21(14.0)	-
	사회적응 프로그램	23(15.3)	-
	건강관리 프로그램	14(9.3)	-
	어떤 주제든 상관없음	59(39.3)	2(66.7)
계		150(100.0)	3(100.0)

제5절 공통 질문

1. 돌봄 및 가족 부문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은 학령기와 성인기는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0.5%, 26.7%로 가장 높았으며, 만 50대 이상의 노년기에서는 거의 모든 일상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높음

〈표 4-39〉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단위 : 명, %)

구분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모든 일상의 타인의 도움 필요	28(21.4)	34(22.7)	13(52.0)
대부분 도움 필요	38(29.0)	26(17.3)	3(12.0)
일부 도움 필요	40(30.5)	40(26.7)	4(16.0)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음	18(13.7)	16(10.7)	2(8.0)
모든 일상을 혼자 할 수 있음	7(5.3)	34(22.7)	3(12.0)
계	131(100.0)	150(100.0)	25(100.0)

- 생애단계별 주 돌봄자를 살펴보면, 영·유아기 및 학령기, 성인기는 모두 어머니가 각각 91.3%, 84.0%, 73.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는 비 장애 형제·자매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40〉 주 돌봄자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어머니	21(91.3)	110(84.0)	110(73.3)	3(12.0)
아버지	-	4(3.1)	10(6.7)	2(8.0)
할머니	1(4.3)	-	2(1.3)	1(4.0)
할아버지	-	-	1(0.7)	1(4.0)
비장애 형제·자매	-	2(1.5)	6(4.0)	12(48.0)
친척	-	-	2(1.3)	2(8.0)
활동보조인	-	5(3.8)	3(2.0)	2(8.0)
시설종사자	-	1(.8)	6(4.0)	2(8.0)
기타	1(4.3)	-	10(6.7)	-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 발달장애인 양육 및 보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두 동일하게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와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이 각각 82.6%, 83.9%, 70.0%, 8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모든 연령층에서 모두 발달장애인 양육과 보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41〉 가족의 경제적 부담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경제적 부담	매우 부담된다	10(43.5)	59(45.0)	56(37.3)	12(48.0)
	조금 부담된다	9(39.1)	51(38.9)	49(32.7)	8(32.0)
	보통이다	3(13.0)	18(13.7)	33(22.0)	5(20.0)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1(4.3)	3(2.3)	7(4.7)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	5(3.3)	-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 영·유아기의 73.9%, 학령기의 74.8%, 성인기의 66.0%, 노년기의 76.0%는 신체적 부담을 느끼는 것(매우 부담된다와 조금 부담된다)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로 갈수록 신체적으로 매우 부담된다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표 4-42〉 참조)
- 심리사회적 부담은 영·유아기의 86.9%, 학령기의 91.6%, 성인기의 80.0%, 노년기의 88.0%는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매우 부담된다와 조금 부담된다), 특히 심리·사회적 부담정도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 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남(〈표 4-42〉 참조)

〈표 4-42〉 가족의 신체적·심리사회적 부담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신체적 부담	매우 부담된다	5(21.7)	41(31.3)	58(38.7)	11(44.0)
	조금 부담된다	12(52.2)	57(43.5)	41(27.3)	8(32.0)
	보통이다	5(21.7)	22(16.8)	36(24.0)	6(24.0)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1(4.3)	10(7.6)	8(5.3)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1(0.8)	7(4.7)	-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심리사회적 부담	매우 부담된다	11(47.8)	70(53.4)	64(42.7)	15(60.0)
	조금 부담된다	9(39.1)	50(38.2)	56(37.3)	7(28.0)
	보통이다	3(13.0)	9(6.9)	24(16.0)	3(12.0)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	2(1.5)	4(2.7)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	2(1.3)	-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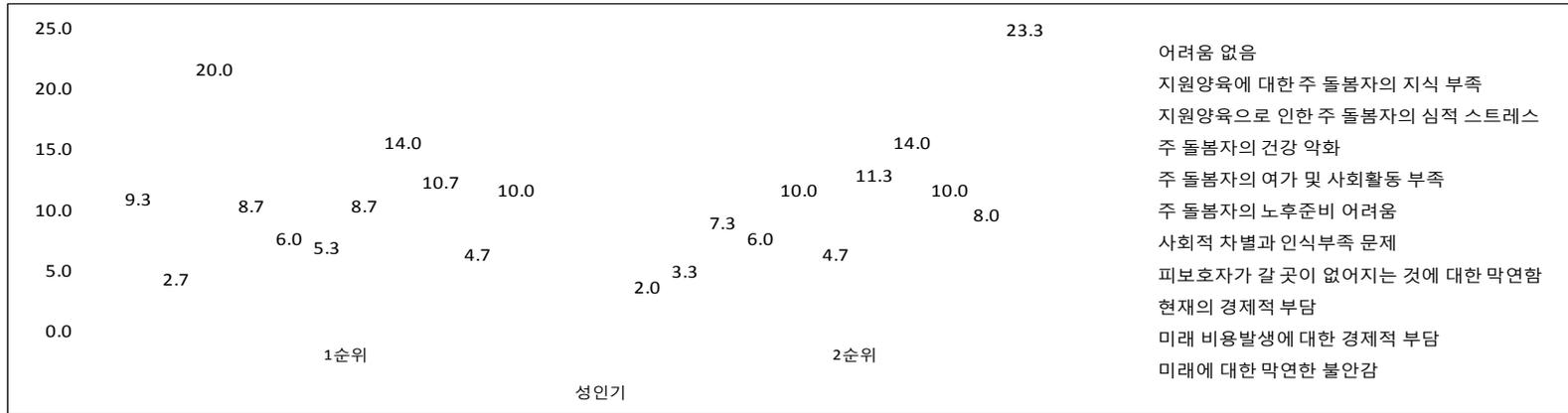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1순위는 현재의 경제적 부담이 2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돌봄자의 심적 스트레스/자녀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미래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동일하게 17.4%이며, 2순위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미래 비용발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동일하게 2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주 돌봄자의 지식부족 1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43〉 참조)
-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1순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 26.0%, 현재의 경제적 부담 19.1%, 피보호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 14.5%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피보호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 16.0%,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16.0%, 현재의 경제적 부담 14.5%로 나타남(〈표 4-43〉 참조)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1순위는 주 돌봄자의 심적 스트레스 20.0%, 피보호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 14.0%, 현재의 경제적 부담 10.7%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23.3%, 피보호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 14.0%,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문제 11.3% 임(〈표 4-43〉 참조)
-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1순위는 주 어려움 없음 24%, 돌봄자의 심적 스트레스 20%, 주 돌봄자의 건강악화 16%,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문제 16% 등이며, 2순위는 주 돌봄자의 심적 스트레스 16%, 미래 비용발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43〉 참조)

〈표 4-43〉 생애단계별 가족이 겪는 주된 어려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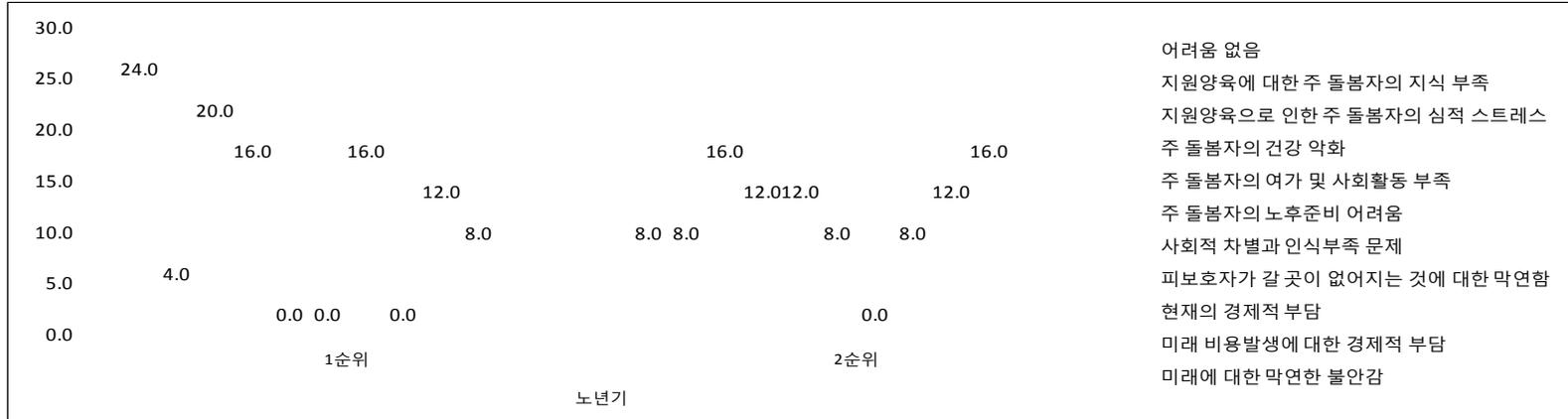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지원(양육)에 대한 주 돌봄자의 지식 부족	1(4.3)	3(13.0)	7(5.3)	5(3.8)	4(2.7)	5(3.3)	1(4.0)	2(8.0)
지원(양육)으로 인한 주 돌봄자의 심적 스트레스	4(17.4)	2(8.7)	34(26.0)	14(10.7)	30(20.0)	11(7.3)	5(20.0)	4(16.0)
주 돌봄자의 건강 악화	1(4.3)	0(0.0)	7(5.3)	9(6.9)	13(8.7)	9(6.0)	4(16.0)	3(12.0)
주 돌봄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	1(4.3)	1(4.3)	10(7.6)	8(6.1)	9(6.0)	15(10.0)	-	3(12.0)
주 돌봄자의 노후준비 어려움	1(4.3)	2(8.7)	2(1.5)	8(6.1)	8(5.3)	7(4.7)	-	2(8.0)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 문제	0(0.0)	2(8.7)	11(8.4)	6(4.6)	13(8.7)	17(11.3)	4(16.0)	-
피보호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	4(17.4)	1(4.3)	19(14.5)	21(16.0)	21(14.0)	21(14.0)	-	2(8.0)
현재의 경제적 부담	6(26.1)	0(0.0)	25(19.1)	19(14.5)	16(10.7)	15(10.0)	3(12.0)	3(12.0)
미래 비용발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	1(4.3)	5(21.7)	8(6.1)	17(13.0)	7(4.7)	12(8.0)	2(8.0)	4(16.0)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4(17.4)	5(21.7)	5(3.8)	21(16.0)	15(10.0)	35(23.3)	-	-
기타	0(0.0)	1(4.3)	0(0.0)	1(0.8)	-	-	-	-
어려움 없음	0(0.0)	1(4.3)	3(2.3)	2(1.5)	14(9.3)	3(2.0)	6(24.0)	2(8.0)
계	23(100.0)	23(100.0)	131(100.0)	131(100.0)	150(100.0)	150(100.0)	25(100.0)	25(100.0)

(단위 : %)



〈그림 4-7〉 가족이 겪는 어려움_성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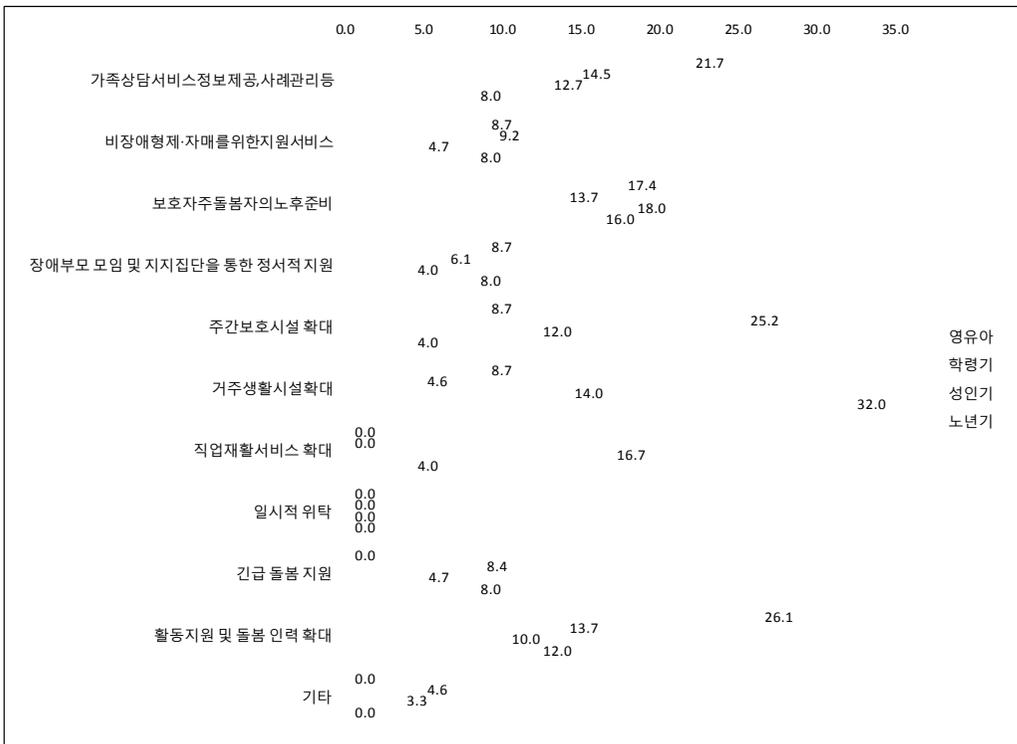
(단위 : %)



〈그림 4-8〉 가족이 겪는 어려움_노년기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순위는 활동지원 및 돌봄 인력확대 26.1%, 가족 상담서비스 21.7%, 보호자(주 돌봄자)의 노후준비 17.4%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지원서비스 30.4%, 활동지원 및 돌봄인력 확대 21.7%로 나타남
-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25.2%, 가족 상담서비스(정보제공, 사례관리 등) 14.5%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거주(생활)시설 확대 17.6%, 활동지원 및 돌봄 인력 확대 15.3%, 보호자(주 돌봄자)의 노후 준비 15.3%로 나타남
- 성인기 1순위는 보호자(주 돌봄자)의 노후준비 18%,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16.7%, 거주(생활)시설 확대 14%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보호자(주 돌봄자)의 노후준비 16.7%,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15.3%로 나타남
- 노년기 1순위는 거주(생활)시설 확대 32%, 보호자(주 돌봄자)의 노후준비 16%, 활동지원 및 돌봄 인력 확대 12%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긴급 돌봄 지원 28%, 주간보호시설과 거주(생활)시설 확대가 동일하게 16%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9〉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표 4-44〉 생애단계별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가족 상담서비스(정보제공, 사례관리 등)	5(21.7)	1(4.3)	19(14.5)	6(4.6)	19(12.7)	10(6.7)	2(8.0)	3(12.0)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지원서비스	2(8.7)	7(30.4)	12(9.2)	12(9.2)	7(4.7)	9(6.0)	2(8.0)	-
보호재(주 돌봄자)의 노후준비	4(17.4)	2(8.7)	18(13.7)	20(15.3)	27(18.0)	25(16.7)	4(16.0)	1(4.0)
장애부모 모임 및 지지집단을 통한 정서적 지원	2(8.7)	2(8.7)	8(6.1)	14(10.7)	6(4.0)	13(8.7)	2(8.0)	1(4.0)
주간보호시설 확대	2(8.7)	2(8.7)	33(25.2)	17(13.0)	18(12.0)	9(6.0)	1(4.0)	4(16.0)
거주(생활)시설 확대	2(8.7)	2(8.7)	6(4.6)	23(17.6)	21(14.0)	22(14.7)	8(32.0)	4(16.0)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	-	-	-	25(16.7)	23(15.3)	1(4.0)	3(12.0)
일시적 위탁	0(0.0)	0(0.0)	0(0.0)	0(0.0)	-	-	-	-
긴급 돌봄 지원	0(0.0)	0(0.0)	11(8.4)	10(7.6)	7(4.7)	15(10.0)	2(8.0)	7(28.0)
활동지원 및 돌봄 인력 확대	6(26.1)	5(21.7)	18(13.7)	20(15.3)	15(10.0)	22(14.7)	3(12.0)	2(8.0)
기타	-	-	6(4.6)	9(6.9)	5(3.3)	2(1.3)	-	-
계	23(100.0)	23(100.0)	131(100.0)	131(100.0)	150(100.0)	150(100.0)	25(100.0)	25(100.0)

2. 건강 부문

-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학령기는 좋음이 49.6%, 성인기와 노령기는 보통이 각각 38.7%, 48.0%로 가장 많았으나, 학령기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나쁘다(매우 나쁨과 나쁨)는 응답도 7.6%에서 40.0%로 높아지고 있음

〈표 4-45〉 신체적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신체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2(1.5)	3(2.0)	2(8.0)
	나쁨	8(6.1)	18(12.0)	8(32.0)
	보통	45(34.4)	58(38.7)	12(48.0)
	좋음	65(49.6)	50(33.3)	3(12.0)
	매우 좋음	11(8.4)	21(14.0)	-
계		131(100.0)	150(100.0)	25(100.0)

-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62.6%는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운동 종목으로는 기타(런닝머신, 태권도, 승마, 특수체육 등) 응답이 3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책 및 조깅 29.3%, 수영 26.8%로 나타났으며, 운동장소는 상업적 시설 31.7%, 복지관 체육시설 2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46〉 정기적 운동참여 여부 및 종목, 운동장소

(단위 : 명, %)

구분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정기적 운동여부	예	82(62.6)	78(52.0)	9(36.0)
	아니오	49(37.4)	72(48.0)	16(64.0)
	계	131(100.0)	150(100.0)	25(100.0)
운동 종목	수영	22(26.8)	11(14.1)	-
	농구	2(2.4)	5(6.4)	-
	산책 및 조깅	24(29.3)	46(59.0)	8(88.9)
	배드민턴	3(3.7)	1(1.3)	1(11.1)
	기타	34(37.8)	15(19.2)	-
	계	82(100.0)	78(100.0)	9(100.0)
운동장소	집안	1(1.2)	2(2.6)	-
	학교 운동장	15(18.3)	7(9.0)	-
	복지관 체육시설	22(26.8)	17(21.8)	-
	상업적 시설	26(31.7)	22(28.2)	2(22.2)

- 성인기 발달장애인 중 52.0%는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산책 및 조깅이 59.0%로 가장 많으며 운동장소는 기타(동네, 공원 등)가 38.5%로 가장 많음
- 노년기의 36.0%(9명)는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운동종목은 산책 및 조깅이 88.9%가 가장 많으며, 운동장소는 기타(동네, 공원, 학교운동장 등)가 77.8%로 나타남
-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는 경제적 지원 51.9%, 지역 내 체육시설(상업시설 포함)이용 활성화 29.8%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지역 내 체육시설(상업시설 포함)이용 활성화 42%,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정보제공 25.2%의 순으로 나타남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와 2순위 모두 경제적 지원 44.7%, 지역 내 체육시설(상업시설 포함)이용 활성화 28.7%로 나타남
-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는 경제적 지원 64%, 장애인복지관 내 전문 의료상담 및 연계 서비스 24%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지역 내 체육시설(상업 시설 포함) 이용 활성화 52%, 장애인복지관 내 전문 의료상담 및 연계 서비스 28% 순으로 나타남

〈표 4-47〉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경제적 지원	68(51.9)	20(15.3)	67(44.7)	67(44.7)	16(64.0)	3(12.0)
지역 내 체육시설(상업시설 포함) 이용 활성화	39(29.8)	55(42.0)	43(28.7)	43(28.7)	3(12.0)	13(52.0)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정보 제공	9(6.9)	33(25.2)	18(12.0)	18(12.0)	-	2(8.0)
장애인복지관 내 전문 의료상담 및 연계 서비스	15(11.5)	23(17.6)	19(12.7)	19(12.7)	6(24.0)	7(28.0)
기타	-	-	-	3(2.0)	-	-
계	131(100.0)	131(100.0)	150(100.0)	150(100.0)	25(100.0)	25(100.0)

3. 문화 및 여가 부문

-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현재 여가활동 1순위는 TV 및 DVD(비디오)시청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및 인터넷 검색(26.7%), 2순위도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및 인터넷 검색(22.9%), 휴식(수면, 사우나 등)(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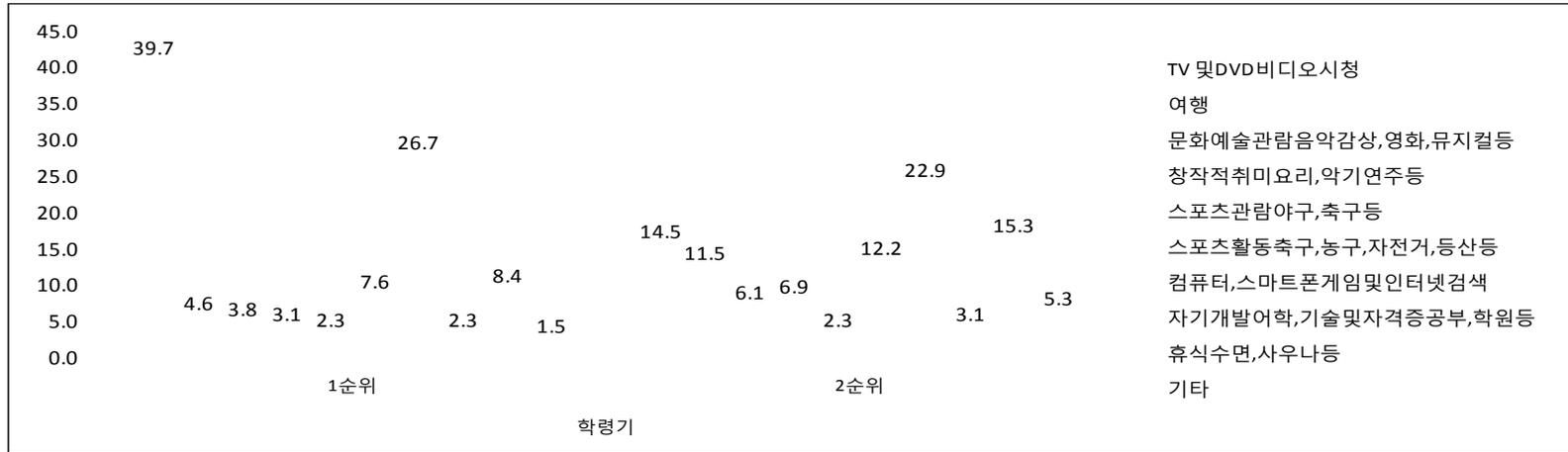
- 성인지 발달장애인의 현재 여가활동 1순위는 TV 및 DVD(비디오)시청 49.3%,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14.7%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28.7%, TV 및 DVD(비디오)시청 19.3%로 나타남
-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현재 여가활동 1순위는 TV 및 DVD(비디오)시청 84.0%, 휴식(수면, 사우나 등) 12%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휴식(수면, 사우나 등) 60%로 나타남
-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향후 희망 여가활동 1순위는 스포츠 활동(축구, 농구, 자전거, 등산 등) 27.5%, 자기개발(어학, 기술 및 자격증 공부, 학원 등) 18.3%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창작적 취미(요리, 악기연주 등) 29.8%, 스포츠 활동(축구, 농구, 자전거, 등산 등) 17.6%로 나타남
- 성인지 발달장애인의 향후 희망 여가활동 1순위는 스포츠 활동(축구, 농구, 자전거, 등산 등) 22%, 여행 18.7%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창작적 취미(요리, 악기연주 등) 21.3%, 문화예술 관람(음악감상, 영화, 뮤지컬 등) 20%로 나타남
-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향후 희망 여가활동 1순위는 TV 및 DVD(비디오)시청 44.0%, 여행 24%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문화예술 관람(음악감상, 영화, 뮤지컬 등) 48%, 휴식(수면, 사우나 등) 24%로 나타남

〈표 4-48〉 현재 여가활동 및 향후 희망 여가활동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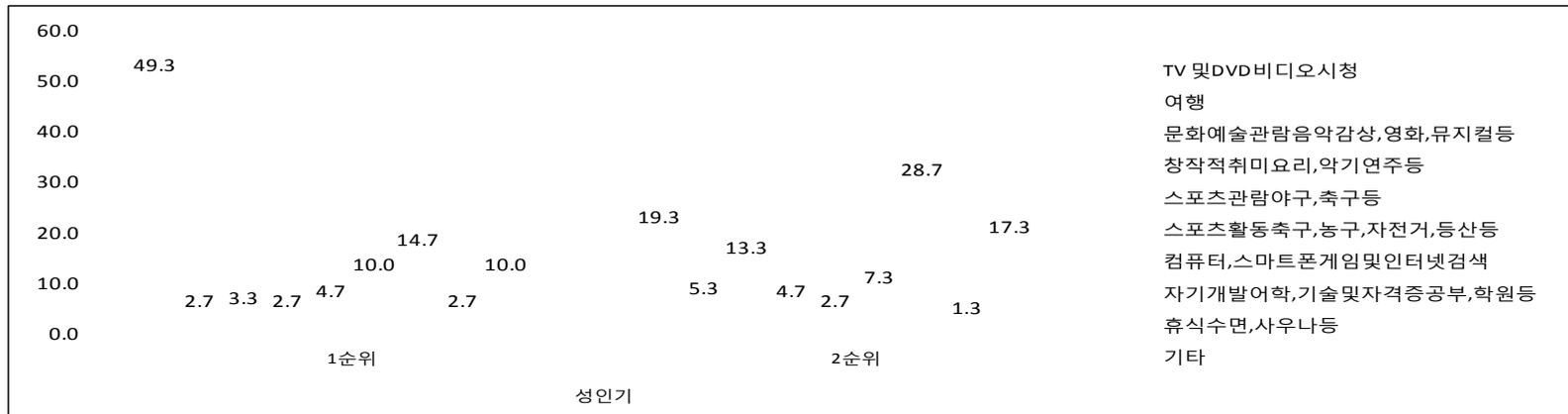
구분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현재 여가활동	TV 및 DVD(비디오) 시청	52(39.7)	19(14.5)	74(49.3)	29(19.3)	21(84.0)	3(12.0)
	여행	6(4.6)	15(11.5)	4(2.7)	8(5.3)	-	1(4.0)
	문화예술 관람(음악감상, 영화, 뮤지컬 등)	5(3.8)	8(6.1)	5(3.3)	20(13.3)	-	1(4.0)
	창작적 취미(요리, 악기연주 등)	4(3.1)	9(6.9)	4(2.7)	7(4.7)	-	1(4.0)
	스포츠 관람(야구, 축구 등)	3(2.3)	3(2.3)	7(4.7)	4(2.7)	-	1(4.0)
	스포츠 활동(축구, 농구, 자전거, 등산 등)	10(7.6)	16(12.2)	15(10.0)	1(7.3)	1(4.0)	3(12.0)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35(26.7)	30(22.9)	22(14.7)	43(28.7)	-	-
	자기개발(어학, 기술 및 자격증 공부, 학원 등)	3(2.3)	4(3.1)	4(2.7)	2(1.3)	-	-
	휴식(수면, 사우나 등)	11(8.4)	20(15.3)	15(10.0)	26(17.3)	3(12.0)	15(60.0)
	기타	2(1.5)	7(5.3)	-	-	-	-
계	131(100.0)	131(100.0)	150(100.0)	150(100.0)	25(100.0)	25(100.0)	
향후 희망 여가활동	TV 및 DVD(비디오) 시청	7(5.3)	3(2.3)	16(10.7)	6(4.0)	11(44.0)	2(8.0)
	여행	19(14.5)	11(8.4)	28(18.7)	18(12.0)	6(24.0)	3(12.0)
	문화예술 관람(음악감상, 영화, 뮤지컬 등)	15(11.5)	19(14.5)	15(10.0)	30(20.0)	2(8.0)	12(48.0)
	창작적 취미(요리, 악기연주 등)	20(15.3)	39(29.8)	20(13.3)	32(21.3)	-	-
	스포츠 관람(야구, 축구 등)	4(3.1)	5(3.8)	3(2.0)	3(2.0)	-	-
	스포츠 활동(축구, 농구, 자전거, 등산 등)	36(27.5)	23(17.6)	33(22.0)	24(16.0)	1(4.0)	1(4.0)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4(3.1)	4(3.1)	3(2.0)	6(4.0)	-	-
	자기개발(어학, 기술 및 자격증 공부, 학원 등)	24(18.3)	13(9.9)	27(18.0)	18(12.0)	4(16.0)	1(4.0)
	휴식(수면, 사우나 등)	2(1.5)	14(10.7)	5(3.3)	13(8.7)	1(4.0)	6(24.0)
계	131(100.0)	131(100.0)	150(100.0)	150(100.0)	25(100.0)	25(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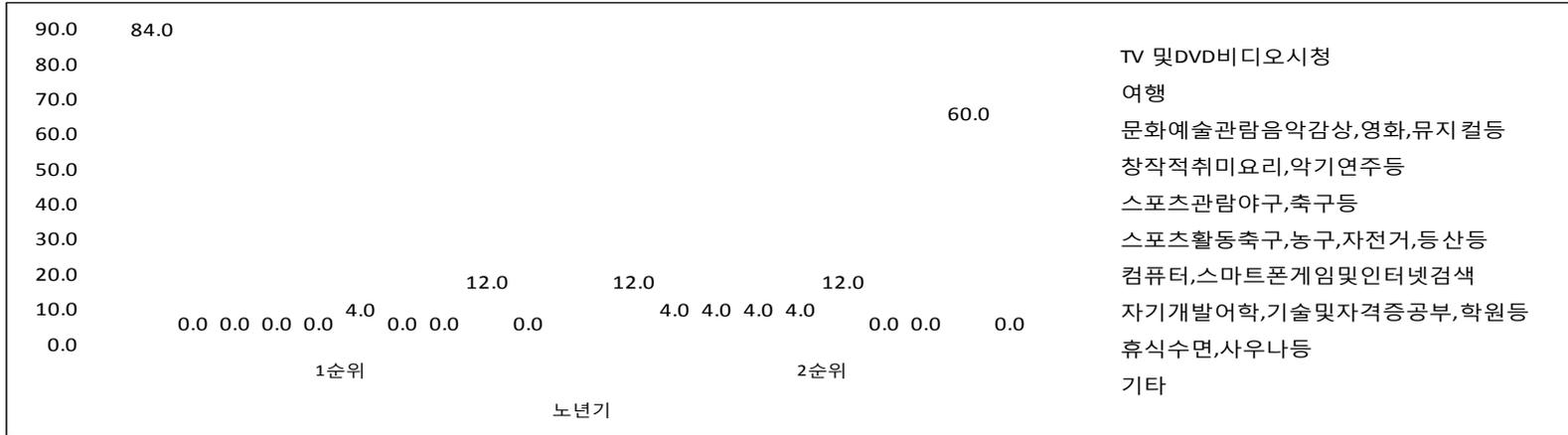
〈그림 4-10〉 현재 여가활동_학령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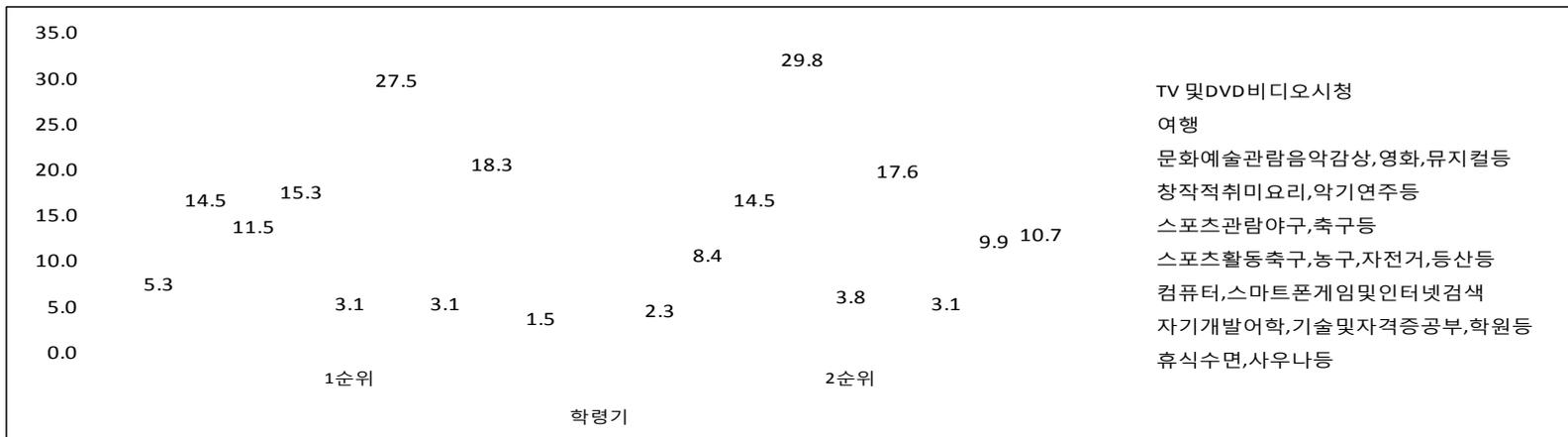
〈그림 4-11〉 현재 여가활동_성인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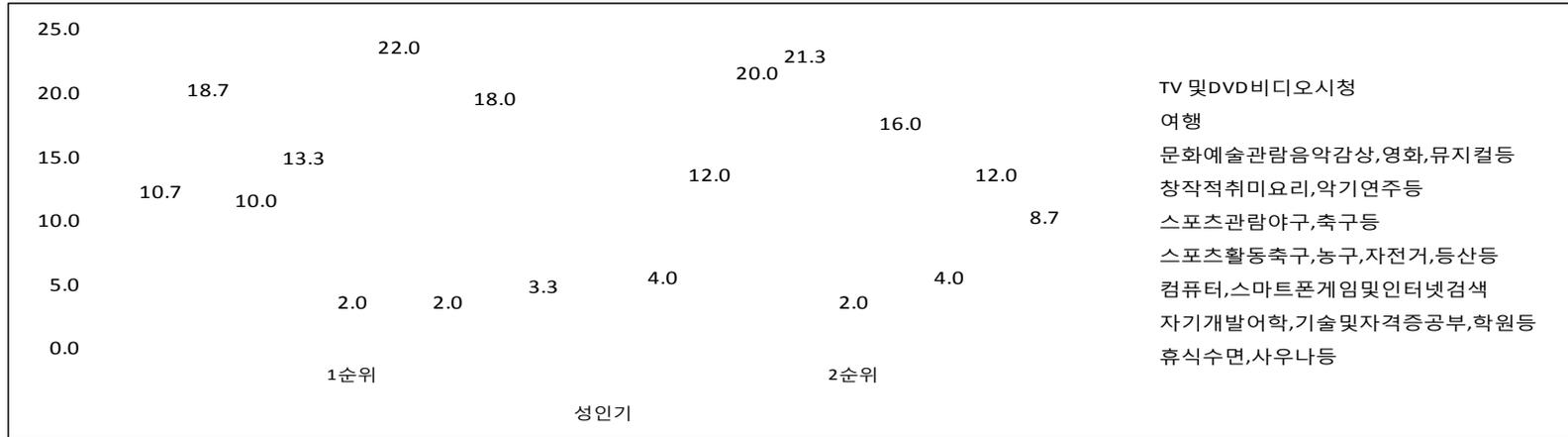
〈그림 4-12〉 현재 여가활동_노년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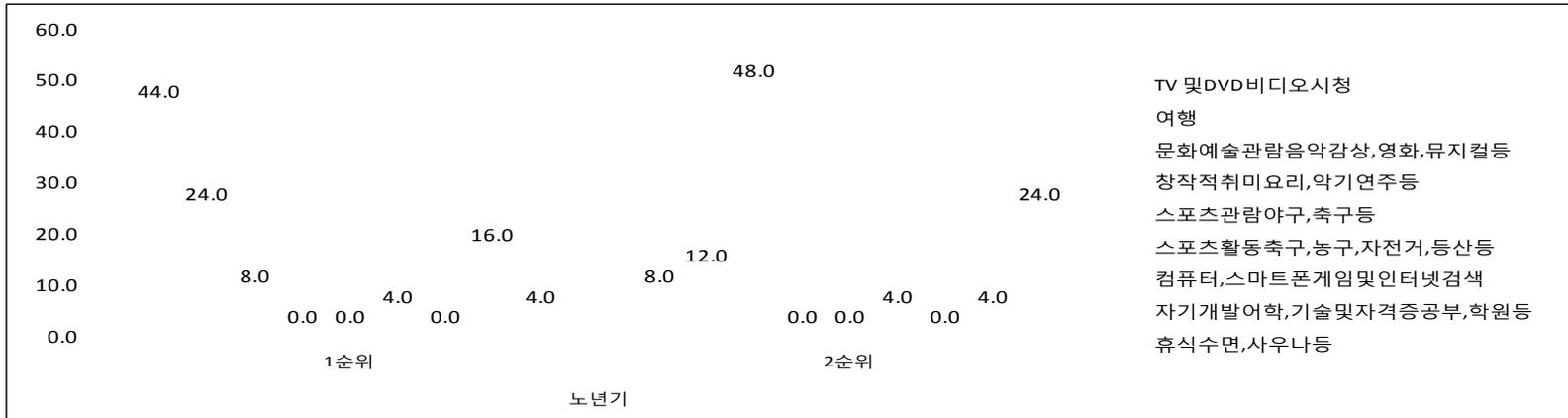
〈그림 4-13〉 향후 희망 여가활동_학령기

(단위 : %)



〈그림 4-14〉 향후 희망 여가활동_성인기

(단위 : %)



〈그림 4-15〉 향후 희망 여가활동_노년기

4. 결혼 및 출산 부문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돌봄자가 자녀의 결혼에 찬성하는 경우는 56.5%, 학령기의 경우는 41.2%, 성인기의 경우는 33.3%, 노년기의 경우는 68%로 나타남

〈표 4-49〉 발달장애인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찬성	13(56.5)	54(41.2)	50(33.3)	17(68.0)
반대	10(43.5)	77(58.8)	100(66.7)	8(32.0)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 발달장애인 돌봄자가 자녀의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생활능력 부족으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영·유아기 60%, 학령기 72.7%, 성인기 69%, 노년기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50〉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생활능력 부족으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기 힘들 것 같아서	6(60.0)	56(72.7)	69(69.0)	7(87.5)
성격(특정 행동, 성향)적인 문제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기 힘들어서	2(20.0)	13(16.9)	18(18.0)	1(12.5)
자녀를 낳으면 현재의 장애가 유전될까봐 걱정되어서	2(20.0)	5(6.5)	6(6.0)	-
같은 장애인과 결혼할 것 같아서	-	3(3.9)	6(6.0)	-
기타	-	-	1(1.0)	-
계	10(100.0)	77(100.0)	100(100.0)	8(100.0)

5. 인권 부문

- 발달장애인의 차별경험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의 65.2%, 학령기 68.7%, 성인기 71.3%, 노년기 48%는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1〉 인권차별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차별경험 유무	예	15(65.2)	90(68.7)	107(71.3)	12(48.0)
	아니오	8(34.8)	41(31.3)	43(28.7)	13(52.0)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 차별받은 부문으로는 영·유아기와 학령기는 교육기관(입학/재학)이 각각 73.3%,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기와 노년기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 19.6%,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인기는 2순위로 행정 및 사법기관 이용(관공서 및 범죄발생 시 신고묵살 등)과 친구 또는 동교관계, 고용 관련 조건(부당한 처우, 급여조건 등)에서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2> 인권차별 부문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여가 및 문화생활	2(13.3)	5(33.3)	17(18.9)	15(16.7)	21(19.6)	14(13.1)	3(25.0)	2(16.7)
교육기관 이용(입학/재학)	11(73.3)	2(13.3)	34(37.8)	16(17.8)	18(16.8)	9(8.4)	1(8.3)	-
의료기관 이용	1(6.7)	-	11(12.2)	11(12.2)	11(10.3)	8(7.5)	1(8.3)	1(8.3)
복지기관 이용	-	2(13.3)	1(1.1)	6(6.7)	7(6.5)	8(7.5)	1(8.3)	1(8.3)
가족 및 친척 간의 관계	-	1(6.7)	2(2.2)	7(7.8)	6(5.6)	9(8.4)	1(8.3)	2(16.7)
행정 및 사법기관 이용	-	-	4(4.4)	12(13.3)	8(7.5)	20(18.7)	2(16.7)	2(16.7)
고용 관련 조건	-	-	20(22.2)	22(24.4)	19(17.8)	19(17.8)	1(8.3)	2(16.7)
친구 또는 동료 관계	1(6.7)	5(33.3)	1(1.1)	1(1.1)	17(15.9)	20(18.7)	2(16.7)	2(16.7)
계	15(100.0)	15(100.0)	90(100.0)	90(100.0)	107(100.0)	107(100.0)	12(100.0)	12(100.0)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 34.8%,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30.4%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 21.7%, 법률지원 17.4%로 나타남
-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 27.5%,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실시 24.4%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실시 21.4%,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 20.6%로 나타남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 35.3%, 법률지원 28%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 26.7%,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실시 20%로 나타남
-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 52%, 법률지원 32%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피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28%, 피보호자의 의사소통지원 24%로 나타남

〈표 4-53〉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법률지원	3(13.0)	4(17.4)	29(22.1)	18(13.7)	42(28.0)	14(9.3)	8(32.0)	4(16.0)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	8(34.8)	5(21.7)	36(27.5)	27(20.6)	53(35.3)	40(26.7)	13(52.0)	5(20.0)
피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3(13.0)	0(0.0)	15(11.5)	12(9.2)	7(4.7)	12(8.0)	1(4.0)	7(28.0)
피보호자의 자조모임 지원	-	-	1(0.8)	14(10.7)	9(6.0)	12(8.0)	-	1(4.0)
일반시민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7(30.4)	0(0.0)	32(24.4)	28(21.4)	20(13.3)	30(20.0)	3(12.0)	1(4.0)
피보호자의 의사소통지원	2(8.7)	2(8.7)	8(6.1)	19(14.5)	15(10.0)	25(16.7)		6(24.0)
피보호자가 읽기 쉬운 설명	-	-	6(4.6)	7(5.3)	4(2.7)	15(10.0)	-	-
기타	-	2(8.7)	4(3.1)	6(4.6)	-	2(1.3)		1(4.0)
계	23(100.0)	23(100.0)	131(100.0)	131(100.0)	150(100.0)	150(100.0)	25(100.0)	25(100.0)

6. 장래계획 부문

- 생애단계별로 발달장애인의 노후준비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기의 17.4%, 학령기의 23.7%, 성인기의 29.3%, 노년기의 12%로 나타남

〈표 4-54〉 발달장애인의 노후준비 여부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예	4(17.4)	31(23.7)	44(29.3)	3(12.0)
아니오	19(82.6)	100(76.3)	106(70.7)	22(88.0)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모두 일상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피보호자의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 보호자를 염두해 두고 있다 순임

〈표 4-55〉 노후대비 미래준비 사항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일상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50.0)	16(51.6)	16(36.4)	1(33.3)
미래 보호자를 염두해 두고 있다	-	2(6.5)	13(29.5)	1(33.3)
피보호자의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보험 등)	2(50.0)	13(41.9)	15(34.1)	1(33.3)
계	4(100.0)	31(100.0)	44(100.0)	3(100.0)

-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경우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에서 아무런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56〉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아무런 준비를 못 하고 있다	12(52.2)	85(64.9)	93(62.0)	21(84.0)
보험, 적금을 들고 있다	10(43.5)	44(33.6)	49(32.7)	4(16.0)
부동산을 사두었다	1(4.3)	2(1.5)	7(4.7)	-
기타	-	-	1(0.7)	-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 주 돌봄자의 부재 및 사후에 발달장애인이 살아가길 원하는 형태는, 영·유아기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게 하고 싶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은데 반해,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는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다는 의견이 각각 49.6%, 54.0%, 60.0%로 가장 많으며 노년기로 갈수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표 4-57〉 발달장애인의 향후 희망 거주형태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혼자 살게 하고 싶다	6(26.1)	29(22.1)	20(13.3)	6(24.0)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게 하고 싶다	8(34.8)	15(11.5)	26(17.3)	3(12.0)
친지들과 함께 살게 하고 싶다	-	6(4.6)	5(3.3)	1(4.0)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살게 하고 싶다	-	2(1.5)	6(4.0)	-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다	4(17.4)	12(9.2)	11(7.3)	-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다	5(21.7)	65(49.6)	81(54.0)	15(60.0)
기타	-	2(1.5)	1(0.7)	-
계	23(100.0)	131(100.0)	150(100.0)	25(100.0)

- 향후 시설을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설 형태를 질문한 결과,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모두 생활지도교사가 상주한 그룹 홈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58〉 희망 거주시설 유형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
그룹 홈(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거주시설 등)-생활지도교사 상주	5(100.0)	37(56.9)	51(63.0)	8(53.3)
장애인 자립지원 '차립형 그룹홈'-생활지도교사 비상주	-	13(20.0)	15(18.5)	3(20.0)
대규모 생활(거주)시설	-	15(23.1)	15(18.5)	4(26.7)
계	5(100.0)	65(100.0)	81(100.0)	15(100.0)

제6절 생애단계별 욕구에 대한 질적조사

1. 조사 목적과 내용

- 본 조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통해 수원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됨
- 생애단계별로 주요 관심사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비스 욕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생애단계별로 구분하여 진행함
- 주요 내용은 장애발견과 등록과정, 수원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 생애단계에 따른 준비와 계획,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으로 모든 생애단계별로 공통적으로 질문한 반면, 생애단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추가 질문함

2. 조사 대상과 방법

-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대상자는 수원시청 협조를 통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의 부모나 배우자 중 본 인터뷰에 동의하는 대상자 명단을 입수,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함
- 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의 연령을 생애단계별로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하였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표 4-59>와 같이 생애단계별로 각기 3~6명 정도로 구성함
-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생애단계별로 2시간 정도 진행됨

〈표 4-59〉 포커스그룹 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	관계
영·유아기	A-1	자폐	2급	남	7	보호자
	A-2	지적	2급	남	6	보호자
	A-3	자폐/청각	1급	남	7	보호자
	A-4	자폐	2급	남	6	보호자
	A-5	지적	3급	남	6	보호자
학령기	B-1	지적	2급	여	16	보호자
	B-2	지적	3급	남	15	보호자
	B-3	자폐	1급	남	16	보호자
	B-4	자폐	1급	남	15	보호자
	B-5	자폐	1급	남	17	보호자
성인기	C-1	지적	1급	여	20	보호자
	C-2	지적	2급	여	23	보호자
	C-3	지적	3급	남	23	보호자
	C-4	발달	2급	남	32	보호자
	C-5	지적	2급	남	47	보호자
	C-6	발달	1급	남	25	보호자
노년기	D-1	지적	1급	여	67	배우자
	D-2	지적	1급	남	63	보호자
	D-3	지적	3급	남	54	배우자

3. 조사 결과

1) 장애발견과 등록

(1) 장애발견 시기

- 장애인 복지에서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라 할 수 있음
 -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2차적 장애의 예방과 장애의 중증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임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자녀의 이상을 공적기관이나 병원을 통해 발견하기 보다는 ‘다른 자녀를 키워본 경험’ 이나 ‘주위 사람들의 평가’ 를 통해 알게 되거나 ‘어린이 집의 권유’ 로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임
- 반면, 다운증후군과 같이 외관상으로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는 병원에서부터 장애를 발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A-1) 우리아이는 병아리 삐약삐약 같이 조금씩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이 늘지 않아서 30개월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어요. 의사선생님도 당시에는 단순히 지연되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A-4) 큰 아이도 말이 늦었기 때문에 애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방심을 한거죠. 29개월부터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를 받아서 병원갔더니 지연되었다고 하는거죠

(B-1) 큰 아이하고 다르게 애는 그냥 표현이 우는 거였어요. 누가 꼬집은 것처럼 울고 잠도 잘 안자고... 책보면 아이들이 20시간씩 잔다고 하는데 애는 잠도 잘 안자고 아무튼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소아과 갔는데 애기가 유난히 힘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참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아서 8개월 정도 됐을 때 다른 병원에 가서 알게 됐어요.

(B-3) 돌이 지났을 때 시누이가 아이가 땅만 쳐다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른데 쳐다보고... 그때도 느끼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이상해서 중심상가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소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린이집에 보내봤는데 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도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청각에 문제가 있나? 왜 대답을 안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과자 소리를 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청각검사를 하러 아주대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해봤더니 자폐 같더라고요...

(A-2) 저희 아이는 다운이니깐요. 그러니까 바로 알았어요.

(2) 장애진단과 등록 시기

- 장애등록에 있어서는 모든 부모가 ‘혹시나 나아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장애진단과 등록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등록과 시기는 발달장애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애가 중증이거나 학령기에 있는 경우는 자녀의 이상을 발견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바로 장애등록을 하는 반면, 장애가 경한 경우는 ‘나아질 것’ 이라는 생각에 장애등록을 미루다 뒤늦게 등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등록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병원 의료진들의 태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음

(A-1) 등록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문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일산에 있는.... 이런저런 상태인데 등록을 하는게 맞는 건지... 물어봤어요.

(A-4) 저도 등록을 늦게 5살 초에 했으니까요. 고민이 많았어요. 특수교육청을 주변에서 얻어 들어서, 다 얻어들이고, 거기 가서 검사하고 교육적으로 지원받으러 갔지요.

(B-4) 원래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는데, 약간의 멍칫 하는 행동은 있었어요. 눈을 깜짝할 때 마다 그때마다 잠이 와서 그런지 알고... 나중에 간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대구에서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서울 상계백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위해서 2년을 있었어요.

(A-3) 일산병원에 가서 의사 4명을 만나고 각각이 원하는 검사를 하고 했음에도 무슨 무슨 치료 받으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없는 것 같아요.

(A-1) 의사는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한마디만 할 거예요. 이 아이는 의사소통으로 한마디만 할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C-3)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장애등록을 했어요.

(C-2) 학습부진으로 알게 됐고 6학년 때 장애 등록을 했지요.

(C-4) 7~8개월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도 숫자에 너무 뛰어나니까 머리가 있다는 생각에 등록을 미루게 되다 중학교 때 하게 되었어요.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

(1)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구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부모나 배우자 등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어디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 함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 인터넷이나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거나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참여해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 임
- 오히려 주위 선배 장애인 부모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부모들이 모인 장소에서 오가는 정보를 듣고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다니는 형태에 있었음

○ 포커스그룹 과정에서도 부모들 간에 유익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모습까지 보임

(D-3) 활동보조나 이런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A-1) 장애진단 받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너무 두려웠어요. 인터넷에서 극한 상황이 많이 나와서 겁이 났어요. 다행히 다른 엄마들을 만나니 위로, 그 정도는 아니구나 조금 안심이 되었죠.

(C-2) 시나 지자체에서는 뭔가 해 주는거는?? 그런 건 전혀 못받았어요. 엄마들이 직접조사를 해서 특수학급 있는 데를 찾아서 발굴을 했죠

(C-4) 실제적인 것은 얘기해주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학교가 괜찮고 부모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주는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통틀어서 부모교육을 해주지만 정확한 길은 없는거죠. 물론 정답은 없지만 아이들마다 A, B, C 이런 방향 제시가 전혀 없다는거죠.

(B-2) 치료실에 가면 만나기도 하고 선배들 얘기 공식적인 창구없이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판단해요.

(A-3) 사실 수원시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셔서 상담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얘기해주는 것과 다른 디테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나 막막해요.

(B-3) 특수교육센터에서 하는 방과 후 교육이라는게 있어요? 오늘 여기서 처음 듣네요.

(A-1) 저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치료사님들이나 기관이나 센터지만 정보를 모른다고 해요. 의사선생님께 여쭙봐도 거기까지예요. 어디에 무엇이 있어요가 아니라 그런데 있으니 가보세요 이려고, 그 다음부터는 다 발로 뛰어야 해요.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고, 교육청에서 특수반 부모를 초청, 그거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리에 지원하세요, 심한아이 특수학 교에 보내세요, 이게 뭐니까, 진짜 답답하고 7세를 둔 학부모로서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2) 복지서비스 이용

□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생애단계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학령기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 하면 학령기는 사설치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성인기는 오히려 이용할 서비스가 없어 망설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영·유아기 단계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혹

시나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치료에 대한 효과도 알지 못한 채 한 달에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도 경험하고 있었음

(A-2) 저희는 복지관만 이용하거든요. 사설 언어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저희는 복지관에서 다해요. 복지관은 싸니까, 그래도 한 달에 20만원 넘어요.

(A-3) 불안한테 정보는 없고, 한 달에 백 만원 이백만원씩 장사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별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야 하니까, 자폐와 청각이어서 와우도 최근에 하자고 해서 한 달에 백만원 정도 들고 있어요. 전체 생활비의 1/3은 들고요.

(A-1) 저는 먹는 것도 해봤어요. 우리 아기들은 뇌에 먹는 것도 저기라고 해서, 다단계에서 음식을 먹으면 나아진다고 해서 두드러기가 나서 한바탕 난리치고, 설사하고, 그래도.... 아동기 때 유아기 때 안하면 소용없다고 하니까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면 다 밀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해진거죠. 언어, 인지, 사회성심리 일주일에 타이트하게 하고 있죠. 한 달에 80만원 정도 들어가요.

(A-4) 한 달에 60만원 안쪽

(A-5) 바우처 받고 10만원

- 한편, 학령기 부모들은 영·유아기 부모들에게 조급해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지나친 치료나 학습을 주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조언함

-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나친 치료보다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주위와 교류를 확대하라고 제언함

(B-3) 언어랑 인지는 어느 정도 커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릴 때, 4~5살 때 온갖 거를 쏟아 부었거든요. 자폐판정 받고 애를 뭔가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 한 치료가 없잖아요. 그때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몇 개씩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언어치료나 이런 걸 무리하게 하는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본이죠. 인지, 감각통합, 그리고 체육, 수영 안 해본게 없는데 그게 필요한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아이는 전혀, 오히려 거부반응이, 공부하는거에 대한 거부반응이 너무 너무~ 와서 하는 치료를 하시거든요. 특수체육을~ 기관을 못 가요. 복지관도 안 갈려고 하고, 가면 치료했던 기억이 있나봐요. 그래서 치료

실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 집에 와서 하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하고 애착관계를 더, 언어나 인지 수업보다는~ 생활 속에서 수 개념을 안다는 것은 어릴 때 저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애가 장애가 들키지 않았으면 해서 엄마가 다 해줬던 거 같은데 어릴 때부터 되든 안 되든 과자 사서 하나 더 하기를 생활 속에서 하는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되는 아이들을 얹혀놓고 언어수업을 하는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언어랑 인지는 가장 아니었던 것 같아요.

(B-5) 이게 진짜 학습적으로 주입시키는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놀이치료를 통해서, 저희 아이도 지금도 말을 잘 못하지만 음악치료에서 음을 따라하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심리적인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이가 싫어하는 반응이 있을 때는 조금 늦춰다가 하는게, 연령이 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때는 다시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거죠.

- 학령기 단계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 방과 후나 발달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인지, 언어, 음악, 특수치료 등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적게는 1회씩 많게는 매일 치료프로그램을 다니고 있었음

(B-3) 특수치료랑 인지수업을 예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특수치료만. 받아요. 수업이 무의미하더라고요.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사춘기가 오면서 아무데도 안가고 집에만 있을려고 해서 치료는 거의 안 하고 특수치료만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B-4) 수영했거든요. 언어 4년째 하고 있어요. 1주일에 한 번, 5시면 와요

(B-5) 저는 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언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하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그것도 체육... 사춘기이다 보니까 성(性)적인 거는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B-2) 일주일에 한번이나 요일이 다 달라서, 매일이죠

- 성인기 단계의 발달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전공과, 직업재활센터, 취업 등을 통해 성인기 과정을 보내고 있음
- 낮 시간에는 전공과나 직업재활센터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특별히 보낼 곳이 없어 사설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 또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C-6) 자혜학교 전공과 졸업 후 직업재활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도로변까지 같이 데려가 센터 버스를 타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C-3) 지금은 라마다 호텔에 취업이 되어 하루 4시간씩 근무중이에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개를 받아 취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장애등록을 했고 졸업 후 직장생활을 여기 저기 많이 했는데,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장기근속을 하지 못했어요. 길어야 2~3개월 정도... 라마다 객실부에서 6시 30분까지 출근해야하는데, 직무에 잘 맞아 현재 잘 근무하고 있어요.

(C-2) 교육청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사설 운동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인 헬스장 이런 데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사설 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한 세션에 4~5만원, 그룹일 경우 2~3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C-1)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공과 다니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성인 언어를 시키고 싶긴한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는 멈춘 상태....

- 노년기의 발달장애인 가족을 둔 배우자의 경우 요양보험제도나 장애연금 등 각종 연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나이에 불구 하고 배우자들이 일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고 있음

(D-3)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요양비만 매일 61만원(자부담) 들어가고, 정부에서 요양보호로 14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D-1) 장애연금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연금도 나옵니다. 산재연금을 120만원, 장애연금 20만원이 나옵니다. 그 외 가끔 식당일해서 50만원 정도 받고 있으나 가계 생계유지비(약제비 10만원, 공과금, 간식비, 음식비 등)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생애단계별 준비와 계획

- 생애단계별 준비와 계획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준비나 계획에 대한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이 주로 현실에 착목하고 있음

- 특히 발달장애인 자녀의 조기치료에 집중하고 비장애인 형제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미안함에 시달리고 있음

(A-3) 저희는 셋이에요. 큰 애들이 대학생이에요~ 예뻐는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없잖아요. 형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생긴거야. 다운으로 낳아서 치료받고 데리고 다니면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안와요. 어려워 하더라고요. 같이 자라면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갑자기 동생이 생겼는데 장애가 되니까 형제들에게 삶의 무게인거예요~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되나? 애한테(큰아들)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지...

(A-1) 우리 아이들도 같이 심리치료를 받아요.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이 위애가 여자아이인데,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소리는 안하더라고요. 위에 애가 10살인데 장애에 관한 책을 본인이 읽더라고요. 장애아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누나가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동생한테도 저기 안하고, 엄마 내가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 친구가 동생 몇 살인데 말을 못해 물어보니까 조금 많이 늦는다고 말해서 거짓말해서 속상했다. 니 잘못은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니 마음 다치게 하지 말라고, 큰애한테 너무 미안해요. 작은 애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아이도 다칠까봐 큰 아이는 따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 희망학교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힘든 부모도 많더라고요. 내 동생 아니더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아이는 그렇게 까지는 아닌데...

- 반면 학령기 자녀를 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학교 졸업 후에 대해 영·유아기 부모들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음
-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또 취업은 아니더라도 보낼 수 있는 곳은 있는지를 고민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
- 반면 자녀의 독립에 있어서는 독립보다는 부모가 데리고 사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B-3)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미래를 벌써 걱정하더라고요. 특수학급에서 취업 나가는 인턴도 가고 자기는 대학에 가고 싶는데 취업에 나간다는 거예요. 대학에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리스타를 해도 엄마가 차려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일명 복지에서 하는 빵집을 가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알더라고요

(B-1) 저희 아이는 집중력이 1초예요. 똥 쌀 때 숫자 세면 1~3초 하는데 이런 애를 더 크면 뭐해먹고 사나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가리키게 되요. 제빵, 바리스타 공부를 몇 년을 해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부모는 애들이 40~50대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되요. 내가 충분히 데리고 살 수 있을지.. 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B-3) 요즘 전공과도 기능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요. 착석이 안 되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힘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만드는 거 보면 재봉틀을 해서 뭘 하거든요. 재봉틀로 얼마나, 그만큼 기능이 있는 아이들만 뽑는 거예요. 순하고 공격행동 없는 암전한 아이들만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수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2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보내봤는데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이라도 저희가 고민이 많죠.

- 성인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 그리고 부모 사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특히 결혼과 관련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음
- 또한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데리고 같이 살지만 부모사후에는 형제들이 돌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에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C-6) 장애 상태가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라 생각해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혼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막연한..

(C-1) 데리고 있을 동안은 최대한 데리고 있을 예정이에요. 결혼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봤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잘못되더라도 형제들이 좋은 시설 찾아서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C-6)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가정을 꾸리는 건 싫어요. 사실 결혼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결혼은 아닌 거 같아요. 오히려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립생활훈련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C-3) 결혼시켜 독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C-5) 50살 될 때까지 목욕을 시켜주고 있어요. 제가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돌보고 나중에는 시설로 보내야죠. 형제가 있다고 돌봐주겠어요? 안타깝지만 내가 죽으면 시설로 가야죠.

4)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생애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차이가 있었음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조기발견과 치료에 관심이 있는 만큼 조기에 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애등록을 한 후에는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나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A-2)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바우처를 주셔서 집에 와서도 하고 있는데, 놀이, 작업도 하는데 제가 담당한게, 도대체 아이에게 맞는 치료가 있는건지... 나라에서 체계적인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좀 훈련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지관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가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재정도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A-3) 치료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아이를 위한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우리가 발로 뛰어야 해요. 그런 것은 하나로 만들어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나가는 돈들을 규모 있게 다 합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시스템이 너무 부재한 거예요.

(A-1) 그런 것을 빨리 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기에 맞게

(A-3) 초기 발달 지연이라고 판명되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지연이다 기다려봐라, 알아봐라가 끝이에요. 공식적인 통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상하니까 뭘 해봐야겠다는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금을 왜 내는지, 그런 거 해주시라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 반면, 학령기에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성인이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이나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B-3) 저희 아이는 집중력이 1초예요. 똥 쌀 때 숫자 세면 1~3초 하는데 이런 애를 더 크면 뭐해먹고 사나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가리키게 되요. 제빵, 바리스타 공부를 몇 년을 해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부모는 애들이 40~50대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되요. 나는 충분히 데리고 살 수 있지는 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 성인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인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마련’, ‘기초수급자 이외의 가정을 위해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창구 마련’ 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성인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라도 자녀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함
-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마련’ 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도우미를 8시간 근무제가 아닌 4시간 근무제로 변형, 발달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은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정 상황을 고려,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지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나 고민하게 될 때 이들을 지원해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체계 마련도 제안함

(C-5)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 후 아무데나 들어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원 내 복지관은 딱 차있고, 시설들도 딱 차있어요. 애들이 집에는 안 있으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는게 느껴져요. 오전에는 근무나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해요.

(C-4) 우리 아이들을 위해 취미, 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레포츠, 클라이밍, 탁구, 운동, 타지방 소그룹 여행(등산, 여행), 난타, 댄스, 도예, 그림 등)을 위주로 구성하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C-3) 프로그램이 생기면 무조건 보낼 거예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엄마들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니깐요.

(C-3) 우리 아이들이 편안히 얘기하고 의지하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은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C-1) 적절한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해요.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의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근무시간, 조건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기 힘든 상황이라 오전, 오후로 나눠 청소

보조를 하던가 하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발달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C-2)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요. 도시에 살다보니 생활비가 많이 들고 힘들어요. 기초수급자의 경우 시설이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능해서 시설이용이 쉽지 않아요.

- 반면,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중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능한 발달장애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증장애를 둔 부모들은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고 있었음

(C-2) 전 고민 안할 거 같아요. 운동시설에서는 따로 분리를 하는게 좋아요. 영화관이나 기타 시설 이용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운동시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같이 이용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비장애인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건 좋지만, 지체장애인들과 같이 이용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화장실이 막히면 무조건 우리 애들이 그런거라면서 이러는 등의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요. 그래서 수원시에 발달장애인 전용 체육관 설립을 요구 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C-3) 장애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거 같은데요. 우리아이의 경우 사회시설, 문화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을 둔 배우자는 요양시설의 확대와 관리,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음
 - 특히 상대적으로 입소비가 저렴한 수원시립요양원의 경우 대기 인원이 많아 입소가 어려운 점을 감안, 시립 요양원 확대 설치와 요양시설 내 확대금지를 위한 불시순찰과 같은 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 한편, 남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음

(C-3) 수원시립요양원이 파장동에 있는데,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대기를 했는데 아직 연락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연락을 해봐도 순서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명한 대기자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요양보호 시설도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사설요양원은 아무래도 좁고, 답장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가격은 사설보다 시립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 서류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므로(학대염려) 암행어사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C-1)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합니다. 보호자도 쓸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해요. 보호자가 혼자 버는 돈으로 전체적인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세금, 보험 등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 쪼개서 쓰고 있어요. 어떨 때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있으면 좋지요. 찾아다니며 상담할 여건이 되지 않지만, 정보 자체를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몰랐어요. 친척이 알아서 다 해줬지, 저는 병원에만 있었어요.

4. 결론

-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통해 수원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와 욕구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한 결과, 생애단계와 장애정도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욕구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뉘어 4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과, 장애발견과 등록과정에서 모든 생애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현재도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오고 있었음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의 이상을 개인의 경험과 주위의 평가를 통해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임
 - 특히 3세 이전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비로소 이상을 발견, 대다수가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였으며, 또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그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들의 태도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음
- 발달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기에 있는 장애아동의 상태에 대해 상담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공적인 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모든 생애단계에 동일하게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문제임
 - 병원, 학교,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음
 -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주위의 장애인 부모나 관계자들을 만나 정보를 얻고 이런 과정에서 수차례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임. 따라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방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준비나 계획에 대한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이 주로 현실에 착목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학교 졸업 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음
- 반면, 자녀의 독립에 있어서는 독립보다는 부모가 데리고 사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음. 따라서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미래 설계를 위해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이나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인기에 있어서는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 그리고 부모(주 돌봄자)의 사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데리고 같이 살지만 부모사후에는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결혼과 관련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음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생애단계별 요약

- 본 연구는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를 영·유아기(만 5세 이하), 학령기(만 6세~만 17세), 성인기(만 18세~만 49세), 노년기(만 50세 이후)로 구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각 생애단계별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와 FGI를 수행하였음
- 생애단계와 장애정도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욕구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영·유아 시기에는 장애를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재활(치료)서비스에 집중되어 자녀의 평생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함
 - 3세 이전의 조기발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째를 키워본 개인의 경험과 주위의 평가를 통해서 장애를 의심하게 됨
 - 영·유아 시기는 치료를 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해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특히 강한 시기이며, 이 때문에 자녀의 평생설계나 부모와 장애자녀와의 애착형성보다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발생함
 - 장애진단 이후에도 발달장애 자녀 상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장애진단 이후 47.8%가 발달장애인 부모들과의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질적연구에서도 부모들 간의 교류 자리에서 많은 정보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남. 단,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지출, 검증되지 않은 치료방법에 의한 부작용 발생, 주 양육자의 불안감을 과증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둘째, 학령기는 가족 이외에도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의 인식부족과 편견, 수업내용의 이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 친구들과 및 선생님의 이해부족과 편견이

3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도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일반교사 및 교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셋째, 성인기와 노년기는 서비스 중단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과 소득보장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음

○ 학령기의 서비스 이용률은 80.1%, 성인기 26.0%, 노년기 4.2%로 성인기 이후 서비스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성인기의 23.3%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이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현재의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향후 평생교육 의사를 묻는 질문에 성인기의 60.7%가 향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 성인기의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재활센터나 전공과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사설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음

○ 노년기의 발달장애인 가족 든 배우자의 경우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생활비 보태고 있음

□ 넷째, 모든 생애단계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난 문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교육-의료-복지서비스의 분절된 체계임

○ 주 돌봄자는 병원, 학교,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정보 제공처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원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학교와 병원, 복지서비스가 각자 해당기관의 서비스만 분절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각 서비스 간의 연계가 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정보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지 못 해 결국 주 돌봄자가 모든 것을 찾아보고 지원해야 하는 체계로 이어지고 있음

2. 부문별 요약

1) 교육 및 보육 부문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통학 가능한 거리에 적합한 어린이집(혹은 유치원)이 없다는 응답이 45.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

육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어린이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1순위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가 34.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더욱 뒷받침 해줌

2) 가족 및 돌봄 부문

□ 발달장애인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거의 모든 일상에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50%가 넘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심리사회적 부담·신체적 부담·경제적 부담이 모두 높게 나타남

- 영·유아기(91.3%), 학령기(84.0%), 성인기(73.3%)의 주 돌봄자는 어머니(母)이며, 노년기부터는 비장애 형제·자매(48.8%)로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한 사람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지원에 대한 부담이 집중되어 있음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26.1%), 학령기와 성인기는 심적 스트레스가 각각 26.0%, 20.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도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비용발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게 나타남
- 생애단계별로 가족이 필요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인력확대,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3) 건강 부문

- 발달장애인 중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학령기는 62.6%, 성인기는 52.0%, 노년기는 36.0%로 나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동의 필요성은 높아지나 실제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모든 연령대가 경제적 지원으로 응답함

4) 문화 및 여가 부문

- 발달장애인의 현재 즐기고 있는 여가 활동으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다 TV 및 DVD 시청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희망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학령기와 성인기의 경우 스포츠 활동을 1순위로 응답하여 실제와 원하는 것 간의 간극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결혼 및 출산 부문

- 발달장애인 돌봄자가 자녀의 결혼에 찬성하는 경우는 영·유아기는 56.5%, 학령기는 41.2%, 성인기의 경우는 33.3%, 노년기의 경우는 68%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생활 능력 부족으로 독립적인 가정 꾸리기 힘들 것 같다는 이유를 모두 1순위로 응답하였음. 즉, 발달장애인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됨

6) 인권 부문

- 발달장애인의 차별경험을 묻는 질문에 영·유아기의 65.2%, 학령기의 68.7%, 성인기의 71.3%, 노년기의 48.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차별받은 부문으로는 영·유아기와 학령기는 교육기관을, 성인기와 노년기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장애인권 옹호 기관 설치로 응답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됨

7) 장래 계획 부문

- 발달장애인의 노후준비에 관한 응답은 영·유아기의 17.4%, 학령기의 23.7%, 성인기의 29.3%, 노년기의 1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들의 노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나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 돌봄자의 부재 및 사후에 발달장애인이 살아가길 원하는 형태는 영·유아기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의 경우는 적합한 시설이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적정 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함
 - 공통적으로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이나 독립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 사후에는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인식함
-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미래계획도 생애단계별 차이가 있음
 - 영·유아 시기는 미래준비나 계획보다는 현실에 착목하고 있으며 조기장애 발견 시스템과 복지 및 교육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원했으며, 학령기는 자녀의 학교 졸업 후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음. 성인기는 성인기

프로그램, 일자리, 경제적 지원, 상담 창구를 원하였으며, 노년기는 요양시설 확대와 관리, 경제적 지원을 원함

- 장애정도에 따른 차이도 보여서, 성인기 중증 자녀의 부모 같은 경우는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했고, 성인기 경증 자녀의 부모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2절 정책 제언²⁾

- 본 절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첫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기발견 체계구축과 장애진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시함
 - 그러나 FGI 결과 장애발견을 하는 계기는 다운증후군과 같이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진단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평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의심되어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한 발달상태의 지연인지 발달장애인지에 구별하지 못 하여 조기진단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장애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 4만원의 진단비와 최대 1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실제로 추가적 검사비용으로 장애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식적인 통로구축이 필요함
 -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애단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문제점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임.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재활(치료)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2) 부문별 정책적 제언은 2017년 수원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시 당사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임

있어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또한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단순히 치료서비스를 통해 장애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왜곡된 기대와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가 과도한 치료쇼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제공이 아닌 서비스 입장에서 생애 단계별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기관 등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 및 가족의 지원확대와 주 돌봄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모(母), 노년기에는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집중되고 있으나 특히 모(母)의 편중현상은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돌봄자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매우 높은 상황임
 - 설문조사 결과 보호자의 신체적 부담 또한 연령대에 상관없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로 갈수록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이 높아짐
 - 질적조사 결과에서도, 영·유아기를 겪은 학령기 부모들은 영·유아기 부모들에게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나친 재활(치료) 서비스보다는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것과 같이 가족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주 돌봄자의 부재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인식, 상담 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다른 장애인부모들의 스트레스와 고충을 동료로 다가가 치유해주는 ‘장애인부모 동료 상담가’의 확대, 발달장애 자녀의 행동수정을 위한 부모교육 바우처 개발(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과잉행동, 자해·공격 행동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건립, 가족을 위한 단일화된 상담창구 등의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로 가족들의 역할과 지원도 상이해져야 함. 특히 학령기는 발달장애 자녀의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지

원, 성인기는 고령화되는 부모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자녀의 독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되어야 함. 노년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와의 연계 등이 마련되어야 함(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

□ 넷째, 생애단계별 복지시설 및 인프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함

- 수원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관련 어린이집(장애아전문·통합)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며, 생애단계별로 서비스 중단현상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생애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의 확대 및 건강지원 바우처의 도입이 시급하며, 비 장애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생애단계별 인프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예산적인 부분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해보면 기존의 기관(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특히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7년 2월 센터 내 발달장애인 지원팀을 신설하고 평생교육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조기발견, 부모상담 등을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건강 및 여가문화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별도의 장애인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 주민여가시설을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복지시설의 인력은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제로 수원시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인력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 다섯째,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지원서비스 및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원시의 경우 FGI에서도 도출된 것과 같이 영·유아기부터 의료, 교육, 복지, 고용 등이 분절적으로 각자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를 넘어 성인기로 전환될 때 서비스 중단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되어 있는 체계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수원시에서 생애단계별로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는 어린이집, 학교, 의료(보건) 서비스, 고용,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지원내용과 정보, 그리고 대상자에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수원시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함
- 여섯째, 장애인정책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접근과 인식개선의 거점기관 지정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제10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인권차별경험을 묻는 질문에 영·유아기의 65.2%, 학령기의 68.7%, 성인기의 71.3%, 노년기의 48.0%가 차별 경험이 있음
 - 영·유아기와 학령기는 교육기관, 성인기와 노년기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시설 등에서 인권적 관점이 인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 인식개선 사업은 각 복지기관에서 산발적이며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성이 낮음
 - 설문조사 결과,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주된 어려움은 친구들의 이해부족과 편견이 가장 많고,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으로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일반교사 및 교직원의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함이 지적됨
 -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로 응답함. 그러나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인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기관, 학교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 인식개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또한 수원시는 2015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하였으며, 2017년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원시청 및 구청 등의 공공기관부터 먼저 이지리딩(Easy reading)과 장애인 이동권 및 이용과 관련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와 관련된 관점의 도입이 필요함

| 참고 문헌 |

- 강창욱, 이준우(2006). 청각장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 연구, 15(2), pp.75-91.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www.장애인인권.com/>
- 권요한 외(2015), 특수교육학개론, 학지사.
- 권재숙, 김성진 (2012).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16(2), pp.23-45.
- 김미옥 외(2004),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미옥(2003),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 김삼섭 외(2016), 발달장애의 이해, 학지사.
- 김성원, 문진영(2011).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와 근로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11, 167-194.
- 김용득 외(2000), 노틀담복지관개관 13주년기념세미나-생애주기별서비스모델적용과전망.
- 김정희 외(2009),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_____ (2011), 발달장애인의서비스요구와시장분석;발달장애영유아를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진우 외(2014), 발달장애인복지론, EM커뮤니티.
- 노승현(2012).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pp.51-82.
- 박수경(2006), 자립생활패러다임에따른장애인의사회통합에관한연구:생애주기를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58권1호), pp.237-264.
- 박주홍 외(201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부산복지개발원.
- 박현숙, 양희택(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3), pp.153-174.
- 박혜전(2011). 고령장애인의 고용현황과 고용유지 예측요인 연구,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011.11, 279-314.
- 법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_____, 장애인복지법

- _____,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변용찬 외(2006),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복지욕구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은령, 노승현(2010). 노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차별경험 및 차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13, pp.1-21.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 _____(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서울시복지재단(2014), 발달장애인가족가이드북.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6), 2016 수원시 장애인정책포럼 ‘수원시 장애인 평생설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신현석(2013),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 안태희 외(2002),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의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 양희택 외(2012), 경기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 욕구 연구, 경기복지재단.
- 오혜경 외(2007), 지적장애인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윤민석(2013),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윤소영 외(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국주(2008), 장애인 근로생애주기별 직업능력 개발훈련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영미(2013).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2, pp.35-58.
- 이원남(2013), 성인 발달장애자녀를 위한 부모의 평생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삼식 외(2010),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행태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우(2009),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이소현(2003), 유아 특수교육, 학지사.
- 이승희(2009), 자폐스펙트럼의 이해, 학지사.
- 이준상(2012). 시각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각장애연구. 28(2), pp.211-228.
- 이효성, 김근아, 김태연, 오정은(2007). 고령 장애인의 일(WORK) 경험과 욕구에 관한 연구,

- 장애와 고용. 17(2), pp.55-79
- 전미리, 안선영(2011). 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정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5(2), pp.99-128.
- 정무성, 노승현(2007). 중·노령 지체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21, pp.21-50
- 조수철 외(2011), 자폐장애, 학지사.
- 조흥식 외(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차성희 외(2010), 내 아이는 무엇이 다른걸까: 발달장애 및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생각나눔.
- 최복천 외(2014),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황주희 외(2014), 장애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0). Intellectual Disability: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s.
- Anderson, L. H., & Chen(1992). "Social Integration of Olde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in residential facilities" ,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6(5).
- Foreman, P.(1998). "Aging and Disability : Double Jeopardy?" ,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3, 1-2.
- Gargiulo, R. M., & Kilgo, J. L. (2005).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NY: Thomson Delmar Learning.
- O'Shea, D. J., O'Shea, L. J., Algozzine, R. & Hammitte, D. J(2001). Families and teacher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ollaborative orientations and responsive practices. MA: Allyn and Bacon.
- Turnbull, A., and Turnbull, H.(2001).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Collaborating for empowerment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ICD-10: Severity of Retardation and Problem

| 저자 약력 |

한연주

사회복지학 전공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모델 연구」 (2013,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복지지표 검증 연구」 (2014, 수원시정연구원)

「제1차 수원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6,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행정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slee@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2016~2020)」 (201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18)」 (2015, 수원시정연구원)

방대혁

사회복지학 전공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비상근 위촉연구원(현)

E-mail : tsunami215@naver.com